

연구보고 2016-05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 마련 연구

양미선 유해미 최윤경



## 머 리 말

정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 7월부터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 정부도 연계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선정되면 3년간 유효하나, 공공형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3년 후 재공인을 받지 못하면 공공형에서 탈락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어린이집은 정부지원 중단으로 당장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모들은 추가 보육료 발생으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어 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선정 확정된 후에서 지속적으로 질을 관리하고, 선정취소 사유 발생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운영관리 기준(안)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는 공공형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시도 및 시군구청,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보육진흥원 등을 지원하며,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한국보육진흥원 품질관리팀과 시도 및 시군구 공공형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6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 차 례

요약 .....	1
I. 서론 .....	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
2. 연구내용 .....	6
3. 연구방법 .....	6
4. 선행연구 .....	8
II.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 .....	10
1.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 .....	10
2. 유사 지표 및 지자체 민간어린이집 지원사업 .....	27
III.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및 운영 현황 .....	34
1.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점수 .....	34
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현황 .....	52
3. 소결 .....	59
IV.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 개발 .....	60
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개요 .....	60
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	70
3. 소결 .....	102
V. 정책 제언 .....	104
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안) 및 운영체계 .....	104
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현장적용 및 활용 방안 .....	112
3. 맺는말 .....	113
참고문헌 .....	115
부 록 .....	119
부록 1. 부록 표 .....	121
부록 2. 조사표 .....	122

## 표 차례

〈표 I-3- 1〉 응답자 특성 .....	8
〈표 II-1- 1〉 참여 기본요건: 2012~2016 .....	11
〈표 II-1- 2〉 제외대상 어린이집 .....	12
〈표 II-1- 3〉 평가인증 점수 .....	13
〈표 II-1- 4〉 건물 소유 이용 형태 .....	14
〈표 II-1- 5〉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	16
〈표 II-1- 6〉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표 .....	20
〈표 II-1- 7〉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신) .....	23
〈표 II-1- 8〉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구) .....	23
〈표 II-1- 9〉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사유 .....	24
〈표 II-2- 1〉 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구성 .....	28
〈표 II-2- 2〉 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구성 .....	28
〈표 II-2- 3〉 부모모니터링 지표 구성: 2013~2016 .....	28
〈표 II-2- 4〉 시도·점검 영역별 세부기준: 2014 .....	29
〈표 II-2- 5〉 서울형어린이집 평가 구성: 2014~2016 .....	30
〈표 II-2- 6〉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지표: 2014~2016 .....	32
〈표 II-2- 7〉 지자체 민간어린이집 지원사업 .....	33
〈표 III-1- 1〉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 항목별 점수 개요 .....	35
〈표 III-1- 2〉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총점 .....	37
〈표 III-1- 3〉 평가인증 점수(35점) .....	39
〈표 III-1- 4〉 건물 소유·이용 형태(20점) .....	40
〈표 III-1- 5〉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감점 8점) .....	41
〈표 III-1- 6〉 1급 보육교사 비율(30점) .....	42
〈표 III-1- 7〉 원장 재직경력(5점) .....	43
〈표 III-1- 8〉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 교사 30% 이상(3점) .....	44
〈표 III-1- 9〉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소지 보육교사 60% 이상(1점) .....	44
〈표 III-1-10〉 원장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 및 경력 3년 이상(2점) ..	45
〈표 III-1-11〉 현 어린이집 10년 이상 근속: 원장(2점) .....	46

〈표 III-1-12〉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6점)	47
〈표 III-1-13〉	맞벌이자녀 재원율(3점)	48
〈표 III-1-14〉	지자체 특성화 지표(4점)	49
〈표 III-1-15〉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감점 3점)	50
〈표 III-1-16〉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5점)	51
〈표 III-1-17〉	담임교사 급여 지급기준(5점)	51
〈표 III-2- 1〉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규모	53
〈표 III-2- 2〉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2016	54
〈표 III-2- 3〉	정원충족률	55
〈표 III-2- 4〉	공공형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 2014~2015 선정점수	56
〈표 III-2- 5〉	1급 보육교사 비율: 2016년	56
〈표 III-2- 6〉	대표자와 원장 동일 비율	57
〈표 III-2- 7〉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현황	58
〈표 III-2- 8〉	누리과정 보조교사 수	59
〈표 IV-1- 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개요	63
〈표 IV-1- 2〉	기본항목	64
〈표 IV-1- 3〉	재정관리	65
〈표 IV-1- 4〉	보육교직원 관리	66
〈표 IV-1- 5〉	맞춤보육	67
〈표 IV-1- 6〉	건강·위생관리	68
〈표 IV-1- 7〉	안전관리 구성	69
〈표 IV-1- 8〉	열린 운영	69
〈표 IV-2- 1〉	기본 항목 개요	70
〈표 IV-2- 2〉	정원충족률	71
〈표 IV-2- 3〉	평가인증	71
〈표 IV-2- 4〉	정원충족률 및 평가인증 배점기준	72
〈표 IV-2- 5〉	재정관리 개요	73
〈표 IV-2- 6〉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비율	73
〈표 IV-2- 7〉	기타운영비 비율	74
〈표 IV-2- 8〉	보육료 추가 수납 여부	74
〈표 IV-2- 9〉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수준	75

〈표 IV-2-10〉	담임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준수 여부	75
〈표 IV-2-11〉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비 수납 여부	76
〈표 IV-2-12〉	재무회계 컨설팅 또는 소그룹 참여 여부	76
〈표 IV-2-13〉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비율 배점기준	77
〈표 IV-2-14〉	기타 운영비 비율 배점기준	77
〈표 IV-2-15〉	보육료 추가 수납 및 담임보육교사 급여 지급 배점기준	78
〈표 IV-2-16〉	아동 1인당 급식비 배점기준	78
〈표 IV-2-17〉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비, 재무회계 컨설팅 또는 소그룹 참여 배점기준	79
〈표 IV-2-18〉	보육교직원 관리 개요	80
〈표 IV-2-19〉	1급 보육교사 비율	80
〈표 IV-2-20〉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 교사 비율	80
〈표 IV-2-21〉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준수 여부	81
〈표 IV-2-22〉	최근 3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발생	81
〈표 IV-2-23〉	대표자 변경 여부	82
〈표 IV-2-24〉	원장 변경 여부	82
〈표 IV-2-25〉	공공형 사후품질관리 교육 참여 여부	83
〈표 IV-2-26〉	공모전 참여 및 수상 여부	83
〈표 IV-2-27〉	1급 보육교사 비율 배점기준	84
〈표 IV-2-28〉	3년 이상 근속 교사 비율 및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배점기준	84
〈표 IV-2-29〉	대표자 및 원장 변경 배점기준	85
〈표 IV-2-30〉	공공형 사후품질 관리 교육 참여 관련 배점기준	85
〈표 IV-2-31〉	공모전 참여 및 수상 관련 배점기준	86
〈표 IV-2-32〉	맞춤 보육 개요	86
〈표 IV-2-33〉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87
〈표 IV-2-34〉	맞벌이 자녀 비율	87
〈표 IV-2-35〉	맞춤형보육 운영시간 준수	88
〈표 IV-2-36〉	부모만족도 조사 정기실시	88
〈표 IV-2-37〉	맞춤형보육 관련 민원발생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	89
〈표 IV-2-38〉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및 부모만족도 조사 배점기준	89
〈표 IV-2-39〉	맞벌이가구 자녀 재원을 관련 배점기준	90
〈표 IV-2-40〉	맞춤형보육 운영시간 준수 배점기준	90

〈표 IV-2-41〉 안전교육 개요 .....	91
〈표 IV-2-42〉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	91
〈표 IV-2-43〉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준수 .....	92
〈표 IV-2-4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	92
〈표 IV-2-45〉 아동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	93
〈표 IV-2-46〉 통학차량 정기점검 실시 .....	93
〈표 IV-2-47〉 차량기사 안전교육 실시 .....	94
〈표 IV-2-48〉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정기실시 .....	94
〈표 IV-2-49〉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안전공제회 배점기준 .....	95
〈표 IV-2-50〉 안전교육 및 소방대비훈련 관련 배점기준 .....	95
〈표 IV-2-51〉 통학차량 정기점검 및 차량기사 안전교육 배점기준 .....	96
〈표 IV-2-52〉 건강·위생관리 개요 .....	96
〈표 IV-2-53〉 석면조사 .....	97
〈표 IV-2-54〉 실내공기질 유지 .....	97
〈표 IV-2-55〉 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	98
〈표 IV-2-56〉 석면조사 배점기준 .....	98
〈표 IV-2-57〉 실내공기질 배점기준 .....	99
〈표 IV-2-58〉 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배점기준 .....	99
〈표 IV-2-59〉 열린 운영 개요 .....	100
〈표 IV-2-60〉 부모모니터링 참여 여부 .....	100
〈표 IV-2-61〉 열린어린이집 선정 .....	101
〈표 IV-2-6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기준 준수 .....	101
〈표 IV-2-63〉 부모모니터링, 열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배점기준 .....	102
〈표 V-1- 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안) 구성 .....	105
〈표 V-1- 2〉 기본항목 .....	105
〈표 V-1- 3〉 재정관리 .....	106
〈표 V-1- 4〉 보육교직원 관리 .....	106
〈표 V-1- 5〉 맞춤보육 .....	107
〈표 V-1- 6〉 건강·위생관리 .....	108
〈표 V-1- 7〉 안전관리 구성 .....	108
〈표 V-1- 8〉 열린 운영 .....	109

〈표 V-1- 9〉 준수여부 점검(2안) .....	109
〈표 V-1-10〉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배점 .....	111

## 그림 차례

[그림 III-1-1] 연도별 총점 .....	38
[그림 III-1-2] 연도 및 시설유형별 총점 .....	38
[그림 III-2-1] 연도·어린이집 유형별 선정 규모 .....	53
[그림 III-2-2]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규모: 2016년 .....	54
[그림 III-2-3] 공공형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 2013~2015 .....	55
[그림 III-2-4] 공공형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1급 보육교사 비율: 2013~2015 ..	57
[그림 IV-1-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개발 절차 .....	61
[그림 V-1-1] 운영체계 .....	111

## 부록 표 차례

〈부표 II-2-1〉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 현장실사 지표 구성 .....	121
---	-----

## 요약

### 1. 서론

#### 가.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관리 기준(안)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제시함.
-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및 배점, 운영기준, 사후관리(재무회계컨설팅 등), 지원기준 등 개정사항을 검토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시 항목별 점수와 운영 현황 분석함.
  - 유사 지표 검토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안)을 마련함.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안) 관련 의견 종합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운영체계 및 현장적용 방안 제시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법 및 제도, 선행연구 고찰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 개정사항 검토
  - 유사지표(평가인증, 부모모니터링, 지도점검, 서울형어린이집 선정기준 등)의 구성 및 개정사항 검토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자료와 운영자료 분석
  - 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안) 마련
  - 시도 및 시군구 보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관리기준, 점검주기, 점검방법의 적절성 조사를 실시함.

#### 2.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및 운영 현황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는 2013년 전체 평균 96.25점, 2014년 92.42점, 2015

년 평균 97.63점임.

- 기본항목 중 평가인증 점수는 2015년 기준 35점 만점에 평균 32.06점으로 최소 25.38점에서 최대 34.74점까지 분포함.
- 건물소유형태는 20점 만점에 2015년 평균 19.06점으로 2013년 15.43점, 2014년 17.54점으로 매년 상승함.
  - 보육료 수입 대비 월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의 합은 2015년 평균 1.62점, 2013년 감점 10점 중 평균 2.04점, 2014년은 감점 8점 중 평균 1.83점임.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중 1급 보육교사 비율은 30점 만점에 2015년 평균 29.61점, 2014년 28.92점, 2013년 26.98점임.
  -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은 5점 만점에 2015년 평균 2.86점으로 2013년 평균 2.46보다는 상승하였으나 2014년 평균 2.93점보다는 낮아짐.
  - 현 어린이집 3년이상 근속교사 30% 이상은 2015년 평균 2.03점이고, 2013년 평균 0.34점, 2014년 평균 1.65점보다 크게 상승함.
  - 2015년 신설된 가점 항목인 영유아 관련 전문학사 소지 보육교사 60%이상 항목은 가점 1점 만점에 평균 0.25점임.
  - 원장의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 및 보육경력 3년 이상은 2015년 가점 2점 만점에서 평균 0.59점, 2013년 평균 0.26점, 2014년 평균 0.27점과 비교하여 두배 이상 상승함.
  - 원장의 현 어린이집 10년 이상 근속은 가점 2점이 배점되어 있고, 2015년 평균 점수는 0.79점, 2013년 평균 0.25점에서 2014년 3배가 넘는 평균 0.77점까지 상승함.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항목은 2015년까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취약보육서비스 개수로 평가함. 2013년은 5점 만점에 평균 2.66점, 2014년은 8점 만점에 평균 2.27점, 2015년은 6점 만점에 평균 2.18점임.
- 2014년에 가점 항목으로 신설된 맞벌이 자녀 채용율은 3점 만점에 2015년 평균 1.61점, 2014년도 평균 점수가 1.61점으로 점수 변동이 없음.
- 지자체 특성화 지표는 2015년 만점 4점에서 평균이 2.19점이고, 2013년은 5점 만점에서 평균 3.35점, 2014년은 2점 만점에서 평균 1.60점임.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은 2013년 '최근 3년간 대표자와 원장 미변경'에서 평가 범위를 대표자로 축소한 항목으로 감점 3점이 배점되어 있고, 2015년 평균이 0.16점으로 2014년 평균 0.25점보다 낮아짐.
-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은 2014년까지 가점 3점이 배점되어 있었으나 2014년 5점으로 상향 조정함. 2015년 평균 4.64점으로, 가점 3점 만점인 2013년은 평균 2.53점, 2014년은 평균 2.59점임.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은 최대 5점 가점으로, 2013년에는 최대 10점이었으나 2014년 5점으로 하향 조정함. 2015년 평균 1.51점, 2014년 평균 1.65점, 2013년 평균 1.39점임.

### 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 개발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음.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 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하여 운영·관리기준에 포함함.
  - 선정 및 운영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가점, 선정 및 운영기준 이하 수준일 경우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배점함.
  - 유사 지표(평가인증, 부모모니터링, 지도점검 등)에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표를 추출하여 운영·관리기준에 포함함.
  - 건강·영양, 안전 영역 지표는 선정기준에는 없지만, 최근 관련 사건사고가 빈번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표에 포함시킴.
  -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보육의 조기안착을 위하여 관련 운영시간 준수 등을 운영관리기준에 포함함.
  -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열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 부모만족도 등 부모참여 관련 지를 포함시킴.
- 운영·관리기준(안)은 가·감점 부여 방식과 항목별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 2개 안을 제시함.
  - 2개(안) 모두 기본항목과 재정관리, 보육교직원 관리, 맞춤형보육, 안전관리, 건강위생관리, 열린 운영 등 7개 영역 2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음.

- 1안은 28개 세부기준, 기준점수 85점에 가점 15점과 감점 10점을 배점하였고, 2안은 22개 세부기준으로 구성하였고, 준수 여부 확인함.
- 기본 항목은 정원충족률과 평가인증 점수 2개 항목
- 재정관리는 월 임대료요금 상환액 비율, 담임보육교사 급여지급 준수, 급식비 아동 1인당 적정수준 3개 항목
- 보육교직원 관리는 1급 보육교사비율,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교사 비율,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3개 항목
- 맞춤형보육은 취약보육서비스, 맞춤형보육 운영시간 및 지침 준수여부 3개 항목
- 건강위생관리는 실내공기질 측정 및 유지, 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2개 항목
- 안전관리는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비상재해대비시설, 아동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통학차량 정기점검 4개 항목
- 열린운영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열린어린이집, 부모만족도 3개 항목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을 토대로 어린이집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시도 및 시군구와 한국보육진흥원이 현장점검 또는 시스템을 통해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함.

#### 4.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현장적용 및 활용 방안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대상의 운영관리기준 관련 교육을 정기 실시함.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에 따른 점검결과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운영관리 기준 교육을 연 2회 정기 실시함.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점검결과는 제공인 평가 시 일부 반영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예:100점 이상)를 획득한 공공형어린이집은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공
-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함.
- 중앙 차원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 7월부터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 정부도 연계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16b).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582개소를 시작으로 2013년 753개소로 늘어났고, 2016년에는 2,150개소까지 확대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11, 2013a, 2016a). 2015년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대한민국정부, 2015)에 따르면 공공성이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7년까지 공공형어린이집을 2,300개소까지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예산도 2012년 169억원에서 2016년 487억원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어서 사업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2a, 2016a).

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3년간 공인을 인정받으나, 평가인증 취소, 평가인증 재인증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 비용 및 보조금반환명령처분, 보육료 부정수급, 보육료 부정유용 등의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3년 후 재공인을 받지 못하면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에서 탈락된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은 당장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모들은 종전에 부담하지 않았던 추가 보육료 부담을 떠안게 되어 불만이 커진다. 추가 보육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형어린이집에 입소한 일부 부모들은 보육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다른 어린이집으로의 이동이 발생하고, 이는 곧 어린이집의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어서(대법원 2014년 6. 12 [2013두 24303] 판결) 앞으로 선정취소와 관련한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확정 후 지속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선정 취소로 인한 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에게 선정취소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합리적인 퇴출 구조 마련을 위한 운영관리 기준(안)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개발을 위한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및 배점, 운영기준, 사후관리(재무회계컨설팅 등), 지원기준 등 개정사항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서울형어린이집 선정기준 및 배점, 운영기준, 지원 등을 비교 검토한다.

둘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시 항목별 점수를 시설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별로 살펴보고,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국공립 및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과 비교 검토한다.

셋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 평가인증 2,3차 및 통합지표, 부모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지표, 어린이집 설치운영기준, 서울형어린이집 선정기준 등의 지표를 비교 검토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안)을 마련한다.

넷째, 시도 및 시군구 공공형어린이집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안)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수정(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안) 관련 의견 종합하여 최종(안)을 정리하고, 운영체계 및 현장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 3. 연구방법

### 가. 문헌 연구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법 및 제도,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과 유사지표(평가인증, 부모모니터링, 지도점검, 서울형어린이집 선정기준 등)의 구성 및 개정사항을 검토하였다.

#### 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및 운영자료 분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자료와 어린이집 통합정보시스템, DW에 탑재해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료를 제공받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는 선정기준별 점수를 시설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별로 분석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의 항목 및 세부기준을 추출하는데 활용하였다. 어린이집 운영자료는 정원충족률, 1급 보육교사 비율,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률 등을 생산하여 세부기준 선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 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안) 개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 평가인증 2,3차 및 통합지표, 부모모니터링, 지도점검,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지표 등을 검토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안) 개발 절차는 [그림 IV-1-1]에 제시하였다.

#### 라. 조사 연구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담당하는 시도 및 시군구 보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역별 운영관리기준 항목 및 세부기준(가·감점항목)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도 및 시군구 보육담당자 250여 명 중 총 141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35세 미만 24.8%, 35~40세 미만 22.0%, 40~45세 미만 24.8%, 45세 이상이 28.4%로 연령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4년제 대졸이 79.4%로 다수를 차지하고, 대학졸(3년제 이하) 9.2%, 대학원 졸 7.8%이었다. 직급은 7급 48.9%, 8급 21.3%로 7, 8급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1-3-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성별		학력	
여자	68.1( 96)	고졸	3.5( 5)
남자	31.9( 45)	대학졸(3년제 이하)	9.2( 13)
연령		4년제 대졸	79.4(112)
35세 미만	24.8( 35)	대학원 졸	7.8( 11)
35~40세 미만	22.0( 31)	직급	
40~45세 미만	24.8( 35)	9급	9.2( 13)
45~50세 미만	20.6( 29)	8급	21.3( 30)
50세 이상	7.8( 11)	7급	48.9( 69)
전체	100.0(141)	6급	20.6( 29)
		전체	100.0(141)

주: 전체 사례수는 무응답에 의해 일치하지 않음.

#### 마. 자문회의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운영하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한국보육진흥원 담당자, 학계·현장 전문가 등과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공공형/비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원장으로 구성된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관리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4. 선행연구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연구는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0년 서문희·최혜선(2010)의 연구부터 시작되었다. 서문희·최혜선(2010)은 부산형과 서울형 어린이집 등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인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후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서문희·양미선·도미향·송신영(2011)은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 평가평구를 진행하였다. 선정기준과 운영모형의 적절성, 보육서비스 수준, 부모 요구와 만족 정도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공공형어린이집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반영되었다.

공공형어린이집이 본 사업으로 추진된 2013년 이후 신청자격 조건,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이 매년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수행

되었다. 2013년(서문희·이혜민, 2013)에는 2011년 연구(서문희 외, 2011)와 동일하게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격 기준과 선정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특별활동과 기타 비용, 어린이집 정보 인지,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등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와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어린이집에 내는 기타 경비 금액이 유의하게 많고, 어린이집 만족도 13개 항목 중 비용과 급간식관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주변환경은 공공형어린이집이 높았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의 전국적 적정 분포에 대해 20% 이상이 높고, 민간어린이집 대비 적정 분포는 10~20%와 20~30% 순으로 높았다.

서문희·이원선·이혜민(2014)는 이전 연구들을 통해 개선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를 분석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대안이 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자는 지원 확대와 선정 및 운영기준, 사후 질 관리 강화를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선정 제외기준에 추가될 항목을 제안하였고, 가·감점 체계 조정과 평가인증 하한 점수 상향조정, 재선정 시 신규신청자와 동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운영비 지원 체계를 구간별 지원에서 교사 수나 반당 지원으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운영비 지원체계 개선안은 2015년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체계 개선에 반영되었다.

유해미·김아름·박기원(2015)는 선행연구(서문희 외, 2013년; 서문희 외, 2014)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 및 운영조건을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와 차이점이라면, 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 문항 중 일부 문항을 발췌하여 가정어린이집 비율이 높은 경기 소재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 민간·가정 이용 부모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비교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이 벤치마킹한 서울형어린이집의 선정기준 및 지원체계를 비교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정책 연구 외에도 학계에서도 공공형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공인제도에 대한 인식(김윤행, 2013; 임혜영·김현주, 2014; 이세봄, 2013; 정혜경, 2011), 공공형과 국공립 또는 비공공형어린이집 간의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김선옥, 2015; 김은영, 2015; 문성호·이현진, 2015; 박현주, 2013)들이 수행되었다. 특히, 이미정(2012)은 공공형어린이집이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 공공성 확보와 보육의 질적 수준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Ⅱ.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

제2장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 사후품질관리기준 등을 살펴보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1.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

공공형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한 어린이집 유형을 대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6a).

#### 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sup>1)</sup>

##### 1) 참여 기본요건

공공형어린이집 어린이집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자격을 부여받는데, <표 II-3-1>과 같이 3가지 조건이다.

먼저,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이고,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충족률(현원/정원×100)<sup>2)</sup>이 평균 80.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단, 농어촌 지역<sup>3)</sup>은 50.00% 이상을 유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6a).

정·현원은 종일반 아동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연장, 시간제, 방과후 아동을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등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6a).

참여 기본요건 기준의 개정과정을 보면, 공공형어린이집이 본 사업으로 추진된 2012년에는 정원충족률 기준 시점이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상반기

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보건복지부, 각 년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2) 정원충족률 산정기간은 각 시도별 보육환경을 감안하여 1년까지 확대하여 적용 가능함.

3) 농어촌 지역이란, 농어촌 지역 및 농어촌 특례 지역 모두 포함.

6개월간 또는 전년도 하반기 6개월간의 평균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간의 평균을 적용하고, 2012년에는 유아 현원이 어린이집 총 현원의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기본요건에 포함시켰고, 2013년에는 이를 가점 항목으로 변경하였다(보건복지부, 2012a, 2013a).

〈표 II-1-1〉 참여 기본요건: 2012~2016

2012	2013~2016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상반기 6개월간 또는 전년도 하반기 6개월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 평균 80.00% 이상 유지, 단 농어촌지역 50.00% 이상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 평균 80.00% 이상 유지, 단 농어촌지역 50.00% 이상 유지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 3개월간 보육 반 편성 연령상 유아 현원이 해당 어린이집 총 (영아+유아) 현원의 30%이상을 평균적으로 유지(민간,법인·단체 등 어린이집만 해당)	-2013년 가점 항목으로 이동, 2015년 삭제

자료: 보건복지부(2012a, 2013a, 2014a, 2015a, 2016a).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 2) 제외 대상 어린이집

제외 대상 어린이집 기준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며, 각 시도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제외 대상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외대상 어린이집 조건은 매년 추가되었다. 2012년에는 놀이터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조건만 제외 어린이집 및 결격 사유로 정하였으나, 2014년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인 어린이집과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포기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조건을 추가하였다. 2015년에는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으로 강화되었고,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후 포기 및 행정처분 받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기준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후 포기, 취소된 경우 선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행정처분 또는 처벌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2016년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

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을 추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2a, 2014a, 2015a, 2016a).

〈표 II-1-2〉 제외대상 어린이집

제외대상 조건
①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sup>4)</sup>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②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③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④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⑥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한다)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⑦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된 경우,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⑧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⑨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인 어린이집
⑩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공시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⑪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⑫ 그 밖에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자료: 보건복지부(2016a).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 3) 세부 선정 기준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나, 세부 선정기준에 의한 총합계 점수가 85.0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기준 점수는 2012년 85.00점에서 2013년 80.00점으로 낮아졌다가 2014년 다시 85.00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보건복지부, 2012a, 2013a, 2014a).

선정기준에 의한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우선 선정원칙을 적용한다. 1순위

- 4)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됨.

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공공형어린이집의 비율<sup>5)</sup>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시군구 단위로 산정, 행정구 포함)에 소재한 어린이집, 2순위는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3순위는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4순위는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보건복지부, 2016a).

가) 평가인증 점수

평가인증 점수는 유효기간 내의 점수만을 인정한다. 다만, 2016년도에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별 선정 공고 마감일 전에 인증결과 발표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이 가능하다. 평가인증 점수는 총점 산식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사용한다.

평가인증 점수는 2013년까지 총점을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평가인증 점수가 높아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 산식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적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a).

〈표 II-1-3〉 평가인증 점수

2012년	2013년	2014~2016년
-평가인증 총점 4개구간 구분 · 97.5점~100점 : 35점 · 95점~97.49점 : 30점 · 92.5점~94.99점 : 28점 · 90점~92.49점 : 25점	-평가인증 총점 4개구간 구분 · 97.5점~100점 : 35점 · 95점~97.49점 : 32점 · 92.5점~94.99점 : 30점 · 90점~92.49점 : 28점	- 평가인증 총점 산식에 따라 환산 ※환산점수:(평가인증 총점-90)+25

자료: 보건복지부(2012a, 2013a, 2014a, 2015a, 2016a).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나) 건물 소유 이용 형태

건물 소유 이용형태를 판단하는 시점은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소유형태는 자기 소유시설인 경우(자가)와 자기 소유시설이 아닌 경우(임대)에만 인정한다. 이 외에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에도 자가로 인정한다.

소유형태의 경우, 2012년에는 임대료 납부 여부에 따라 자가와 임대를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2013년부터 자기 소유시설 여부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용형태는 단독 건물에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전용),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에만 인정하며, 아파트 관리동 내의 어린이집은 10점

5)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공공형어린이집 / 전체어린이집 수) × 100

을 부여한다. 이용형태에 관한 기준은 그간 변경사항이 많지 않다. 2014년부터 아파트 관리동 내의 어린이집 이용 형태를 기준에 포함시켰고, 2015년부터 이러한 경우 10점을 부여하였다(보건복지부, 2012a, 2013a, 2014a, 2015a).

〈표 II-1-4〉 건물 소유 이용 형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2016년
소유 여부	(자가)자기 소유의 시설로 임대료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	(자가)자기 소유시설인 경우 (임대)자기 소유시설이 아닌 경우	자기 소유시설인 경우(자가) 자기 소유 시설이 아닌 경우(임대)	자기 소유시설인 경우(자가) *부부공동 소유인 경우 자가로 인정 자기 소유 시설이 아닌 경우(임대)
이용 여부	(전용)단독 건물에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 주거시설을 겸하지 않는 가정어린이집 (복합)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	단독 건물에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단독)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 *아파트(공동주택) 내 가정 어린이집의 이용형태는 복합	단독 건물에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전용)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 *아파트(공동주택) 내 가정 어린이집의 이용형태는 복합 *아파트 관리동 내 어린이집의 이용형태는 전용	단독 건물에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전용)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이용형태는 전용으로 구분 *아파트 관리동 내 어린이집은 10점 부여

자료: 보건복지부(2012a, 2013a, 2014a, 2015a, 2016a).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산정 시점은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6개월 평균을 적용한다. 산출공식은 (월 임대료 및 용자 상환액)/(월 보육료 수입) x 100이다. 보육료 수입은 부모 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기타 필요경비 수입은 제외한다(보건복지부, 2016a).

다) 보육교직원 전문성

보육교직원 전문성은 1급 보육교사 비율과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 2개만 기

6) 용자금 상환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이자상환액(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원금상환은 불가)을 의미하며,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원장이 부담하는 경우 이를 모두 합한 액수로 산정(어린이집 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 외 설치·운영자, 원장이 부담하는 금액도 산정)

본 항목이고,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사항은 가점 항목이다.

1급 보육교사 비율과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은 2012년 이후 동일 기준을 적용하나,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기준은 변경사항이 있었다.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를 소지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기준은 2015년 신설되었고,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 3년 이상과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은 2013년 신설되었다. 최근 3년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당 1점 감점은 2014년 이후 가점 항목에서 제외되었다(보건복지부, 2012a, 2013a, 2014a, 2015a).

(1) 1급 보육교사 비율

1급 보육교사 비율은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공식은 (1급 보육교사 수)/(전체 보육교사 수) $\times$ 100으로, 담임교사만 적용하고,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유치원 정교사 및 특수교사도 1급 보육교사에 포함시킨다(보건복지부, 2016a).

(2) 원장 재직 경력

원장 재직 경력도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어린이집 원장 재직 경력 뿐 아니라, 종전 근무 어린이집의 원장 재직 경력도 포함한다. 단, 유치원 원장 경력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되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한다(보건복지부, 2016a).

(3) 보육교사 근속기간

보육교사 근속기간은 가점 항목이다.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산출공식은 (3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전체 보육교사)  $\times$  100이다. 3년 이상 근속교사 대상은 1급 보육교사 산정 대상과 동일하고, 대체교사로 근무하다 정교사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대체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근속 기간에 포함시킨다. 단, 퇴직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16a).

(4) 보육교사의 관련학과 전공

보육교사의 관련학과 전공은 가점 항목이다.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전문학사학위 이상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한다(보건복지부, 2016a).

(5) 원장의 관련학과 전공 및 보육교사 경력

원장의 관련학과 전공 및 보육교사 경력도 가점 항목이다. 영유아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자격만 인정하며,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는 보육교사의 관련 학과 학위 전공 인정 범위와 동일하다. 보육교사 경력은 보육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유치원 교사 경력의 경우,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 반영되는 경우만 인정한다(보건복지부, 2016a).

(6)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기준도 가점 항목이다. 시도별 공고형어린이집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현 어린이집에서 동일인이 원장-교사-원장으로 직위를 변경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최근 원장으로 직위를 재변경한 시점부터 원장 근속기간으로 산정한다(보건복지부, 2016a).

라) 맞춤형 보육지원

맞춤형 보육지원은 취약보육서비스 운영과 가점 항목인 맞벌이 자녀 재원율이 포함된다. 맞벌이 자녀 재원율은 2014년 신설되었다.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항목은 2015년까지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개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2016년부터 취약보육서비스 유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a, 2015a, 2016a).

(1)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는 장애아, 시간연장, 휴일보육을 기준으로 한다.

〈표 II-1-5〉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보육 2개 이상 10점 1개 7점 미실시 4점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보육 2개 이상 5점 1개 3점 미실시 1점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보육 4개 8점 3개 6점 2개 4점 1개 2점 미실시 0점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보육 3개 이상 6점 2개 4점 1개 2점 미실시 0점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보육 장애아보육 3점 시간연장보육 2점 휴일보육 1점

자료: 보건복지부(2012a, 2013a, 2014a, 2015a, 2016a).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포함하여 최근 1년동안 6개월 이상 운영하여야만 인정한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하고, 시간연장어린이집 등으로 지정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취약보육서비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16).

(2) 맞벌이 자녀 재원을

맞벌이 자녀 재원율은 가점 항목이다. 2014년 이후 변경사항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a, 2015a, 2016a).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50% 이상(농어촌 40%이상), 40% 이상 50% 미만(농어촌 35%이상), 30% 이상 40% 미만(농어촌 30%이상 35%미만)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배점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보건복지부, 2016a).

마) 기타

이 외에 지자체별 특성화지표와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여부,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이 중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과 누리과정 보육교사 채용 여부는 감점,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은 가점 항목이다. 2013년까지 어린이집 정보공개 여부 항목이 가점 항목으로 포함되었으나,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2014년부터 제외대상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기준은 2012년 기본 선정요건에서 가점 항목으로 변경되었다가 2015년에 삭제되었다. 또한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은 2013년 가점 항목에 배치되었으나, 2014년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으로 수정되고, 감점 항목으로 점수 부여 방식이 변경되었다(보건복지부, 2012a, 2013a, 2014a, 2015a, 2016a).

4) 선정기준 점수 산정

선정점수는 기본점수가 100점이고, 가점 16점, 감점 9점이 배점되어 있다. 기본점수는 변동이 없으나, 가점은 2012년 12점에서 2013년 28점으로 2배 이상 상향되었고, 2014년에는 다시 20점으로 떨어졌고, 2015년은 21점으로 변동이 크다. 감점 항목에는 2013년까지 15점이 배점되었으나, 2014년 11점, 2015년 8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2016년 다소 높아졌다(보건복지부, 2012a, 2013a, 2014a, 2015a, 2016a).

선정기준 점수 산정에는 평가인증 점수가 기본 35점으로 배점이 가장 크고,

이외에 건물 소유·이용 형태 기본 20점, 보육교직원 전문성 기본 30점, 맞춤형 보육지원 기본 6점, 지자체별 특성화지표 기본 4점,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기본 5점 등 5개 항목이 추가되어 점수로 환산, 적용된다.

이외에 일부 조건에 따라 가·감점이 주어진다. 가점은 보육교직원 전문성에서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를 소지한 보육교사가 60% 이상,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에 각각 3, 1, 2, 2점으로 총 8점이 가점된다. 다음으로 맞춤형 보육지원에서 맞벌이 재원을 50%이상(농어촌 40%이상), 40%이상 50%미만(농어촌 35%이상 40%미만), 30%이상 40%미만(농어촌 30%이상 35%미만)에 각각 3, 2, 1점으로 총 3점이 가점된다.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경우도 5점 가점으로 최대 16점을 부여한다.

감점 항목에는 건물 소유·이용형태에서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미만,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미만인 경우 각각 2, 5점으로 총 5점을 감점하고,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의 경우는 3점 감점,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여부에 따라 1점 감점으로 최대 9점까지 감점한다(보건복지부, 2016a).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항목별 배점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보육교직원 전문성의 점수 비중은 높아졌고, 취약보육서비스는 반대로 낮아졌다. 1급 보육교사 비율 최대 점수는 2012년 20점이었으나, 2013년 30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점수 구간도 세분화 되었다(보건복지부, 2012a, 2013a).

2015년에는 45% 미만도 점수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점수는 2013년 가점 2점, 감점 5점이 배점되었으나, 2014년에는 가점은 6점, 감점은 없어졌다. 이후 8점으로 상향되었다.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는 2012년 당시 10점이 배점되었으나, 2013년에는 절반인 5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2014년에는 8점, 2015년 6점으로 다시 조정되었다. 맞벌이 자녀 재원을 3점 가점은 2014년부터 적용하였다(보건복지부, 2012a, 2013a, 2014a, 2015a).

## 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 1) 운영기준

#### 가) 유효기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제2항

에 따른 보조금 교부 조건에 해당하며, 공공형어린이집의 유효기간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확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보건복지부, 2016a).

나)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점수가 90.00점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단, 공공형으로 운영 중에 3차지표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85점 이상 유지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 요청 시, 시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보육, 시간제 보육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셋째,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해야 한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되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인하하는 대신 필요경비를 인상하여 추가 수납해서는 안 된다.

넷째,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담임교사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월 급여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종전 급여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선정 후 월 급여를 낮추거나 근무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월 급여를 낮출 수 없다.

다섯째, 공공형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따라 평일 19시 30분까지 의무운영(아동이 하원한 경우에도 19시 30분까지는 당직교사 등을 배치하여 보육수요에 대비) 해야 하며, 지역 실정, 부모와의 협의를 이유로 단축 운영해서는 안 된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된다.

여섯째,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일곱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영유아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민간보험회사 등에 동일한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계약기간 종료 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조정은 가능하다. 그 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표 II-1-6〉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표

배점 항목	2012			2013			2014			2015			2016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 평가인증 점수	35			35			35			35			35		
○ 평가인증 점수 97.5점~100점	35			35											
○ 평가인증 점수 95점~97.49점	30			32											
○ 평가인증 점수 92.5점~94.99점	28			30											
○ 평가인증 점수 90점~92.49점	25			28											
○ 평가인증 점수 90점~100점 -평가인증 총점 산식에 따라 환산 *환산점수=(평가인증총점·90)+25)							25~ 35			25~ 35			25~ 35		
□ 놀이터 구비 (기본 신청자격)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본 신청자격)															
□ 건물 소유·이용형태	20	10		20	10		20	8		20	8		20	5	
○ 자가 전용 어린이집	20			20			20			20			20		
○ 자가 복합 어린이집	10			15			10			10			10		
○ 관리동 어린이집										10			10		
○ 임대 전용 어린이집	5			10			5			5			5		
○ 임대 복합 어린이집	0			5			0			0			0		
○ 월임료 및 용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3			2			2			2			2
○ 월임료 및 용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5			3			5			5			5
○ 월임료 및 용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7			7			8			8			
○ 월임료 및 용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10			10									
□ 보육교직원 전문성	30	2	5	35	5	5	35	6		35	8		35	8	
○ 1급 보육교사 비율	20			30			30			30			30		
- 70% 이상 *농어촌 50% 이상	20			30			30			30			30		
- 60% 이상 70% 미만 *농어촌 40% 이상 50% 미만	14			24			24			25			25		
- 50% 이상 60% 미만 *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8			13			13			15			15		
- 45% 이상 50% 미만 *농어촌 25% 이상 30% 미만				5			5			7			7		
- 45% 미만 *농어촌 25% 미만				0			0			3			3		
○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10			5			5			5			5		
- 15년 이상	10			5			5			5			5		
- 7년 이상 15년 미만	7			3			3			3			3		
- 7년 미만	5			1			1			1			1		
○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2	5		5	5		6			8			8		
- 최근 3년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 당 1점 감점			최대 5			최대 5									
-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2			3			3			3			3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를 소지한 보육 교사가 60% 이상										1			1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1			1			2			2		
-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1			2			2			2		

(표 II-1-6 계속)

배점 항목	2012			2013			2014			2015			2016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input type="checkbox"/>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10			5			8	3		6	3		6	3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장애아 통합 어린이 집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종일반 1개반 이상 운영), 다문화보육 중							8			6					
- 4개 실시							8								
- 3개 이상 실시										6					
- 3개 실시							6								
- 2개 실시							4			4					
- 2개 이상 실시	10			5											
- 1개 실시	7			3			2			2					
- 미실시	4			1			0			0					
○취약서비스 운영 여부															6
- 장애아보육 실시															3
- 시간연장보육 실시															2
- 휴일보육 실시															1
○맞벌이 자녀 재원을							3			3					3
- 50%이상(*농어촌 40% 이상)							3			3					3
- 40%이상 50%미만(*농어촌 35%이상 40%미만)							2			2					2
- 30%이상 40%미만(*농어촌 30%이상 35%미만)							1			1					1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정보 공개 여부(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포털에 연동 어린이집 운영 홈페이지 인정)		4			4										
- 모두 공개		4			4										
- 3~4개 공개		1			1										
- 3개 미만 공개					0										
<input type="checkbox"/> 지자체별 특성화지표	5			5			2			4					4
<input type="checkbox"/>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이상 충족							3			3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3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3					3
<input type="checkbox"/>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3			3					5
<input type="checkbox"/>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여부															1
<input type="checkbox"/>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최대 10			최대 5			최대 5		최대 5
계	100	12	15	100	28	15	100	20	11	100	21	8	100	16	9

자료: 보건복지부(2012a, 2013a, 2014a, 2015a, 2016a).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여덟째,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후품질관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홉째, 어린이집 정보공시를 현행화 해야 한다.

열 번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6a).

## 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산정 및 지급 기준은 2015년 하반기까지 어린이집 정원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어린이집의 교사 수, 반수, 아동 현원 등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 단, 운영비 산정지급 기준이 변경되기 이전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보건복지부, 2012a, 2013a, 2014a, 2015a, 2016a).

### 가) (신) 운영비 기준

어린이집의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산정 및 지급하는 방식은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3개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표 II-1-7 참조)(보건복지부, 2016a).

#### (1)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교사가 배정된 현원 1명 이상인 종일반 개소당 35만원을 지급한다. 종일반이 아닌 방과후, 시간연장, 시간제보육 등은 제외한다. 겸직 원장이 담임으로 있는 반, 장애아종일반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전담교사 인건비도 기존대로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6a).

#### (2) 유아반 운영비

유아 혼합반을 포함하여 만 3~5세반 개소당 60만원 또는 30만원을 지급한다. 만 3세반, 3-4세 혼합반의 경우 현원 8인 이상은 60만원, 현원 5-7인은 30만원을 지급한다. 단, 만2-3세 혼합반은 대상이 아니다. 만 4세반, 5세반, 4-5세 혼합반의 경우 현원 11인 이상은 60만원, 현원 5인~10인은 30만원을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6a).

#### (3) 교육환경개선비

재원아동(현원) 1인당 1.5만원(방과 후 아동은 제외)을 지급하며, 기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200명까지 인정)(보건복지부, 2016a).

〈표 II-1-7〉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신)

구분	단가	기준	세부사항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35만원	종일반 1개당	- 현원 1명당, 담임교사 배치된 반 기준 - 산정제외: 장애아방과후, 방과후, 시간연장, 새벽반, 휴일반, 일시보육반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세반 1개당	- 3세: 현원 8인 이상인 반(2~3세 혼합반 제외) - 4세이상: 현원 11인 이상인 반 ※ 단, 지급기준 인원을 채지 못한 경우라도 현원 5인 이상인 반에 대해서는 단가의 50% 지급
교육환경개선비	1.5만원	재원아동 1인당	- 현원기준(방과후 아동 제외) ※ 기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2016a).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나) (구) 운영비 기준

2013년에서 2014년에 선정된 어린이집 중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기존방식으로 운영비를 지급받기를 희망한 기관에 대해 적용하며, 운영비 지급일 직전 6개월 평균이 정원충족률 80%(농어촌 50%)를 충족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6).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각 구간별로 운영비 정액이 지급된다. 정원 구간별 지원금액은 <표 II-1-8>과 같다.

〈표 II-1-8〉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구)

정원	단위: 만원									
	20인 이하	21~ 35인	36~ 49인	50~ 62인	63~ 76인	77~ 86인	87~ 97인	98~ 111인	112~ 123인	124인 이상
월 지원액	116	253	268	445	460	565	580	829	844	875

자료: 보건복지부(2016a).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운영포기

1) 선정취소 사유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권자는 시군구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다.

〈표 II-1-9〉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사유

취소 사유
① 평가인증 취소 시
②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재인증을 받은 결과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③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④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1호부터 3호까지)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⑦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⑧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⑨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⑩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⑪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경우
⑫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제외 사유 및 기본요건 미준수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⑬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 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 하였으나 동 사항을 재차 위반한 경우
⑭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된 경우
⑮ 영유아보육법령, 지침 및 사후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소관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⑯ 선정 확정 이후, 건물 소유 및 이용여부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시도별 해당 어린이집 선정 시점의 커트라인 점수 미만일 경우
⑰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⑱ 지역사회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2016a).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 2) 선정취소 된 경우의 보조금 지급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 된 경우, 선정 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한 운영비를 환수 조치한다(보건복지부, 2016a).

## 3) 운영포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공공형어

린이집 운영 포기가 가능하다. 해당 어린이집은 선정 취하원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해당 시군구는 3일 이내에 시도에 선정 취하원을 제출, 시도는 취하원을 접수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선정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는 선정취소 결과를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에 서면보고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운영 포기를 희망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선정 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선정 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된다(보건복지부, 2016a).

## 라. 공공형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

공공형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분야 관련 원장 및 교사연수,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및 소그룹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 1) 보육교직원 전문성

보육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인식 함양을 통해, 어린이집의 자체 질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이 공보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16a).

#### 가) 원장연수

원장연수는 의무참여 사업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은 운영 연차에 따라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원장연수 교육과정 중 기본과정은 운영 1년차 및 신규 임용 원장이 참여 대상이다. 공공형 제도 안내, 공공형 원장의 역할(리더십), 영유아 권리, 어린이집 문서관리, 원내 교사교육, 정보공개 안내, 합리적인 재무회계 운영 관리의 교과목이 있으며 특강 및 워크숍 형태로 6개의 교과목을 1개월 주기로 총 2차시로 나누어 참여하여야 한다.

심화과정은 운영 2-3년차 원장이 참여 대상이며, 보육과정의 실제, 놀이 운영, 부적응행동 지도의 교과목을 특강 및 워크숍 형태로 과목별 7개 권역에서 실시

한다. 자율과정은 운영 4년차 이상 원장이 참여 대상이며, 효율적인 운영위원회 관리, 스트레스 관리의 교과목을 특강 및 워크숍 형태로 과목별 7개 권역에서 실시한다(보건복지부, 2016a).

#### 나) 교사연수

교사연수는 희망 참여사업으로 보육교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사연수 교육과정 중 기본과정은 근속기간 및 경력 2년 이하인 일반교사가 참여 대상이며, 영유아 발달, 보육교사의 정체성 및 아동의 권리, 일과 운영 및 일지 작성의 실제,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교과목을 특강 및 참여형 강의 형태로 진행한다.

심화과정은 근속기간 2년 이상, 경력 3년 이상인 일반 또는 주임교사가 참여 대상이며, 보육과정의 실제, 상호작용의 실제, 놀이 운영, 부적응행동 지도의 교과목을 과목별로 분리하여 개설하여 교사가 희망하는 과목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교육방법은 특강 및 실습 형태로, 과목별 약 30명 내외의 소그룹 4개를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a).

## 2) 운영의 투명성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및 소그룹 교육은 공공형어린이집의 건전하고 체계적인 재무회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16a).

#### 가)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재무회계 컨설팅은 재무회계 코디네이터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재무회계 운영상태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공공형 운영 1-3년차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공공형 운영 4년차 이상 어린이집은 희망하는 경우에만 참여한다.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 운용 지원을 컨설팅 내용으로 하여 예·결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증빙서류 관리 등에 대한 재무회계 운영 현황 점검 후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집별 상황을 고려한 예·결산 관련 실습 진행을 한다. 재무회계 코디네이터가 어린이집에 개별 방문하여 재무회계 운영상태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보건복지부, 2016a).

나) 재무회계 소그룹 교육

재무회계 소그룹 교육은 재무회계 실무 적용을 위한 실습 위주 방식의 교육이다. 소그룹 교육 참여 대상은 공공형 운영 4년차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공공형 운영 1-3년차 어린이집은 희망 어린이집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재무회계 교육은 3개 교과목을 교과목별로 분리하여 16개 권역에서 실시한다(보건복지부, 2016a).

## 2. 유사 지표 및 지자체 민간어린이집 지원사업

2절은 어린이집 질 관리제도로 대표되는 평가인증, 부모모니터링, 지도점검의 지표 구성을 살펴보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간어린이집 지원사업, 즉 서울형어린이집 등의 선정기준과 지원수준 등을 제시하였다.

### 가. 어린이집 질 관리

#### 1) 평가인증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차,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2차(서문희 외, 2011), 2013년에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안전 문항을 추가한 3차 지표를 개발하여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2차 지표는 어린이집 정원과 운영특성에 따라 39인 이하, 40인 이상, 장애아전문 3종으로 구분된다. 40인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은 6개 영역 70개 항목이고, 39인 이하 어린이집은 5개 영역 55항목,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6개 영역 7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방법은 기술 평정척도이고, 사용하며 3점 '우수한 수준', 2점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1점,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확인방법은 지표에 따라 관찰, 문서, 면담 등을 활용한다(서문희 외, 2015).

평가인증 3차 지표는 1,2차에서 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 전문 3종으로 구분된 지표를 공통지표로 통합하고, 문항 달성도 및 유사성이 높은 항목을 통합하였다(서문희 외, 2015). 영역 수는 1,2차 지표와 동일하지만, 지표는 50개로

구성요소는 308개로 세분화되었다. 평가방법은 'Y', 'N' 중 하나로 평가하고, 관찰, 문서, 면담 등으로 확인한다.

〈표 II-2-1〉 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구성

영역	영역 1. 보육환경	영역 2. 운영관리	영역 3. 보육과정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	영역 5. 건강과 영양	영역 6. 안전	전체
영역	3	4	3	3	3	2	18
항목	11	12	11	11	12	10	67

자료: 보건복지부(2015c).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3차 지표 시범사업용.  
서문희 외(2015).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계 개발. 한국보육진흥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I-2-2〉 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구성

영역	영역1. 보육환경	영역2. 건강	영역3. 안전	영역4. 보육과정 운영	영역5. 보육활동과 상호작용	영역6. 운영관리	전체
지표수	8	8	8	8	10	8	50
구성요소	45	57	50	49	57	50	308

자료: 보건복지부(2015c).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3차 지표 시범사업용.  
서문희 외(2015).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계 개발. 한국보육진흥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부모모니터링

부모모니터링 지표는 2013년 사업 시작된 이후 매년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표 II-2-3〉 부모모니터링 지표 구성: 2013~2016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점	26점	84점	100점	100점
지표별 점수	2점	2점	각 지표별 2점, 4점	각 지표별 2점, 4점
지표수	50개	42개	40개	39개
항목별 지표 수	1) 건강관리 (3항목 9개) 6점 2) 급식관리 (3항목 12개) 6점 3) 위생관리 (3항목 12개) 6점 4) 안전관리 (4항목 17개) 8점	1) 건강관리 (3항목 7개) 14점 2) 급식관리 (3항목 9개) 18점 3) 위생관리 (4항목12개) 24점 4) 안전관리 (4항목14개) 28점	1) 건강관리 (2항목 6개) 12점 2) 급식관리 (3항목 9개) 24점 3) 위생관리 (3항목11개) 30점 4) 안전관리 (4항목14개) 34점	1) 건강관리 (2항목 6개) 12점 2) 급식관리 (3항목 9개) 24점 3) 위생관리 (3항목11개) 30점 4) 안전관리 (4항목14개) 34점

자료: 자료: 보건복지부(2013b, 2014b, 2015b, 2016c).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양미선·이윤진(2015).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현황과 평가. 육아정책연구소. p. 72의 <표 III-1-2>에 2016년 자료 추가하여 작성함.

2013년 지표는 건강, 급식, 위생, 안전 4개 영역 13항목 5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확인/미확인으로 확인한다. 2014년 지표는 영역과 항목은 2013년과 동일하지만 지표수는 42개로 줄고, 확인방법은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평가하고 점수 산출방법도 변경되어 총점이 84점이다. 2015년 지표도 영역은 동일하지만, 지표수가 40개로 줄고 지표별 배점도 중요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총점은 10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6년 지표는 영역, 평가방법, 총점 모두 2015년과 동일하고 지표수만 39개로 줄었다(표 II-2-3 참조).

### 3) 지도점검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특별(기획)점검, 수시(긴급)점검으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 2014: 8).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규모별 상위 5%)과 선행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없는 우수 어린이집은 1년간 정기·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도점검 결과는 지적사항에 따라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또는 환수 조치, 행정처분, 과태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도점검 항목은 운영일반, 재무회계, 아동보육교직원관리, 건강·영양·안전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4: 67). 지도점검 항목은 2013년까지 4개 영역 48개 지표이었으나 2014년에는 4개 영역 49개 지표로 개정되었다. 영역별 세부 지도점검 항목은 <표 II-2-4>와 같다.

<표 II-2-4> 지도·점검 영역별 세부기준: 2014

구분	세부기준	
운영 일반	어린이집 인가증 등 게시 확인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현황 확인
	보육교사/보육아동 사진게시 확인	취약보육 운영 현황 확인
	반편성 현황 및 현원 확인	취약보육 실시확인
	출석부 확인	장부비치 여부 확인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등록아동 확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여부 확인
	어린이집 운영 기준시간 확인	어린이집 정보공시 확인(신설)
	총계정원장	비품대장
재무 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및 세입·세출 결산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적정 지급 여부 확인
	필요경비 사용한도	어린이집 명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
	현금출납부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 급·간식비 적정 집행
	수입·지출 결의서	

(표 II-2-4 계속)

구분	세부기준	
아동 보육 교직원 관리	보육아동 명단확인	원장 전임(상근) 근무
	보육교직원 명단별 구비서류 확인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시기 준수 및 관련 구비서류 비치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확인	보수교육 이수
	보육교직원 퇴직급여 적립 및 지급	이용 신청자서류 비치
건강 · 영양 · 안전	비상재해 대비시설 확인 및 적정성 여부	조리사, 영양사 면허증 확인
	비상 대피로 확인	식단표 확인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서류 확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여부 확인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확인	(임대차량의 경우) 계약서류 확인
	소화용 기구 비치 여부	안전용 보호장구 장착 및 작동 여부
	비상연락 체계구축 여부	영유아 건강 검진 실시여부
	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와 서류 확인	(삭제)
	정기소독 실시 여부	차량 운행관련 구비서류(신설)
	실내공기질 관리 여부	차량 안전관리 확인
	집단급식소 신고 서류 확인	보험가입
급식재료 관리상태 및 원산지 표시 여부		

자료: 보건복지부(2014c).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어린이집용).

나. 지자체 공인어린이집

1) 서울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지표는 필수항목 5개를 충족하고 85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고득점순으로 서울형 공인을 받는다. 총점은 100점으로 기본요건 10점, 현장실사 75점, 공인심의 15점이 배점되어 있고, 여기에 가·감점 사항이 추가된다. 필수항목은 2015년 신설되었고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준수 등 5개 항목이 해당된다.

〈표 II-2-5〉 서울형어린이집 평가 구성: 2014-2016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공인 통과	필수항목(4개)충족+85점이상 득점: 평가점수 고득점순 【상대평가】	필수항목(5개)충족+85점이상 득점: 평가점수 고득점순 【상대평가】 -100개소 이내 지정	좌동
총 배점	100점(기본요건20점+현장실사 66점+공인심의14점)±가·감점 사항	좌동	100점(기본요건10점+현장실사 75점+공인심의15점)±가·감점 사항

(표 II-2-5 계속)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필수 항목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준수 -어린이집 명의의 1계좌(클린카드통장)사용 -금융기관(아이행복카드, 계좌이체) 통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수납 -임대료및융자금 이자 10%이하 사용 -클린운영 지표 평가결과 70% 이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수항목 중 1개 지표라도 미이행시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대상에서 제외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어린이집 명의의 1계좌(클린카드통장)사용 및 해당통장은 목적외 지출없음 -금융기관(아이행복카드, 계좌이체) 통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수납 -임대료및융자금 이자 10%이하 사용 -클린운영 지표 평가결과 70%(25점)이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수항목 중 1개 지표라도 미충족시 평가 총점에 관계없이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대상에서 제외
기본 요건	○평가인증 점수:20점(3단계) -90점이상:2 0점 -90점미만~87점: 18점 -87점미만: 16점 ※2015년부터 90점 미만 신청제한:90점이상(19점), 95점이상(20점)	○정부평가인증 취득점수:20점(2단계) -95점이상: 20점 -90점~94점: 18점 ※2015년 신규공인시설 '16년부터 평가인증90점이상 유지	○정부 평가인증 취득점수 : -95점이상: 10점 -90점~94점: 9점 ※공인신청마감일기준 평가점수(최종발표전 90점이상 유지 확인) ※2015년부터 신규공인 어린이집은 정부평가인증90점이상 유지
현장 실사	○현장실사점수: 66점 -4개 분야 9개 지표(47개 항목)	○현장실사점수: 66점 -4개 분야 9개 지표(46개 항목)	○현장실사점수: 75점 -4개 분야 9개 지표(41개 항목)
공인 심의	○14점 -실사자 종합소견 4점 -심사위원회심의 10점[자치구 추천의견 반영(3점)]	○14점 -실사자 종합소견 4점 -자치구 추천의견 -3점 -심사위원회 심의 7점	○15점 -실사자 종합소견 4점 -자치구 추천의견 -3점 -심사위원회 심의 8점
감점 사항	○가점사항(+10점) ○감점사항(- 6점)	○가점사항(+10점) ○감점사항(- 6점)	○가점사항(+5점): 5개 지표 ○감점사항(- 6점): 3개 지표

자료: 서울시(2014, 2015, 2016).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지표.

<표 II-2-6>은 2014년~2016년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지표는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인력전문성 4개 분야, 맞춤보육, 시설안전, 급식위생, 회계투명성,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전문인력 6개 영역이다.

2016년 기준 지표를 살펴보면, 맞춤보육 4점, 안심보육 26점, 클린운영 35점, 인력전문성 10점 총 100점이다. 안심보육은 2014년 24점에서 2015년 23점으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26점으로 상향되었고, 클린운영은 2014년 30점에서 2015년 31점, 2016년 35점으로 매년 배점이 늘어났다. 인력전문성도 2015년까지 8점이

배점되어 있었으나 2016년 10점으로 조정되었다.

〈표 II-2-6〉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지표: 2014~2016

분야	2014년			2015년			2016년			
	배점	영역	평가문항	배점	배점	평가문항	배점	배점	평가문항	
맞춤보육	4	맞춤보육	맞춤보육 실시여부 등(3개항목)(4)*	4	4	맞춤보육 실시여부 등(2개항목)	4	4	좌동	
안심보육	24	시설안전	비상재해대피시설 설치 등 재해 대책 마련 (2개 항목)(5)* 영유아 안전관리 등 (5개 항목)(8)*	13	23	비상재해대피시설 설치 등 재해 대책 마련 (2개 항목) 영유아 안전관리 등(5개 항목)	13	26	비상재해대피시설 설치 등 재해 대책 마련 (3개 항목)	
		급식위생	급간식 위생 여부 등(6개 항목)(7)* 보육시설 청결 위생 등(1개 항목)(4)*	11		10			10	보육시설 청결,교구 위생 등 (2개 항목)
클린운영	30	회계투명성	1시설 1계좌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4개 항목)(16)* 보육료 등 경비수납의 클린성 등(4개 항목)(5)*	21	31	1시설 1계좌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4개 항목) 보육료 등 경비수납의 클린성 등(4개 항목)	22	35	1시설 1계좌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6개 항목)	
		시설운영의 투명성	외부에 시설정보 공개 등(6개 항목)(9)*	9		9			9	외부에 어린이집 정보 공개 등 (7개 항목)
인력전문성	8	전문인력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 자질 향상 노력 등 (5개 항목)(8)*	8	8	전문인력 확보 및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노력 등(5개 항목)	8	10	10	전문인력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등 (6개 항목)

주: \* (괄호) 안 숫자는 문항별 배점임.

자료: 서울시(2014, 2015, 2016).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지표.

영역별로는 맞춤보육 4점, 시설안전 16점, 급식위생 10점, 회계투명성 26점, 시설운영의 투명성 9점, 전문인력 10점이 배점되어 있다. 시설안전 영역은 13점에서 2016년 16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회계투명성도 22점에서 26점으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지표별 배점 변화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 현장실사 신규 및 재공인 지표의 연도별 평가문항과 항목수, 배점 등은 <부표 II-2-1>에 제시하였다.

## 2) 기타 지자체 어린이집 지원 사업

서울형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여러 지자체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2-7〉 지자체 민간어린이집 지원사업

구분	인건비	운영비	기타
서울, 서초 (2016)	- 교사 1인당 126,000원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386,000원 설정)	- 아동 1인당 1만원 - 영아반 3만원, 유아반 6만원(개설반 기준)	
인천 (2016)	- 영아반 담임교사 162만원		- 영아반 중 2개반 이상 교사 대 아동 비율: 0세반 1:2, 1세반 1:4 - 보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지원
과천	- 보육교사:412,000원 - 취사부 인건비		- 시립 어린이집과 보육료 동일
성남 (2015)	- 민간 만3~5세: 차액보육료 최대 36,000원 지원	- 교재·교구비 개소당 70만원	- 어린이집 1개소당 환경개선사업비 300~1000만원 지원 (※ 보육 과정과 내용 학부모에게 개방하는 국·공립, 민간·가정 어린이집)
수원 (2016)		- 어린이집 1개소당 교재교구비 100만원 지원	-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효·예절·인성 교육, 자연친화 활동 등)
전남 (2016)	- 보육교사 및 취사부 1인당 월 2만원	평가인증에 필요한 안전용품 및 교재·교구비 100만원 지원	- 품질관리: 교육(교재 제공),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자료: 서초구, 인천시, 과천시, 성남시, 수원시, 전라남도(각 년도). 내부자료.

서울시 서초구는 교사 1인당 월 126천원과 아동1인당 1만원 등을 지원하는 모범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도 영아반 담임교사 1인당 월 162만원을 지원하는 인천형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 과천, 성남, 수원, 전남 등 교사 인건비나 교재교구비, 부모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표 II-2-7 참조).

### Ⅲ.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및 운영 현황

제3장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선정 시 평가받은 세부 선정기준별 점수 분포를 살펴보고,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이후 선정기준들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1.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점수

##### 가. 개요

공공형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점수(90점 이상), 놀이터 구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등 기본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선정기준에 의한 합계 점수가 85점 이상이어야 선정된다.

2013년 752개소, 2014년 205개소, 2015년 266개소 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고, 이들이 선정 시 받은 항목별 점수는 <표 III-1-1>과 같다. 기본항목은 총점 100점, 가점항목은 총 16점, 감점항목은 총 9점이 배점되어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시 점수는 2013년 전체 평균 96.25점이고, 2014년은 92.42점으로 가점 항목이 많은 2013년과 비교하여 총점이 높아졌다. 2015년은 평균 97.63점으로 최소 85점에서 최대 113점까지 분포한다.

먼저 기본항목 점수를 살펴보면, 평가인증 점수는 2015년 기준 35점 만점에 평균 32.06점으로 최소 25.38점에서 최대 34.74점까지 분포한다. 2013년 평균 31.08점에서 2014년 30.52점으로 점수가 다소 낮아졌으나 2015년에는 높아졌다.

건물 소유이용 형태 중 소유형태는 기본점수 20점과 감점 5점이 배점되어 있다. 건물소유형태는 2015년 20점 만점에 평균 19.06점으로 최소 0점에서 최대 20점까지 선정 어린이집 간 점수 폭이 크다. 2013년 15.43점, 2014년 17.54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또한 5점 감점 항목인 보육료 수입 대비 월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의 합은 2015년 평균 1.62점으로 최대 -5점에서 0점까지 분포한다. 2013년 감점 10점 중 평균 2.04점, 2014년은 감점 8점 중 평균 1.83점으로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2015년 평균 3.14로 가장 감점 점수가 높다.

〈표 III-1-1〉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 항목별 점수 개요

단위: 점(개소)

구분	2013					2014					2015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수)
총점	96.25	7.83	80	119	(752)	92.42	5.19	85	108	(205)	97.63	5.24	85	113	(266)
평가인증점수	31.08	2.34	28.00	35.00	(752)	30.52	2.63	25.00	34.69	(205)	32.06	2.09	25.28	34.74	(266)
건물소유형태	15.43	4.87	5.00	20.00	(752)	17.54	4.61	5.00	20.00	(205)	19.06	3.14	0.00	20.00	(266)
건물이용형태(임대료 및상환액)(-)	2.04	1.88	0.00	10.00	(752)	-1.83	2.08	-8.00	0.00	(205)	-1.62	1.70	-5.00	0.00	(266)
보육교직원 전문성															
1급 보육교사 비율	26.98	5.13	0.00	30.00	(752)	28.92	2.31	24.00	30.00	(205)	29.61	1.55	15.00	30.00	(266)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2.46	1.31	1.00	5.00	(752)	2.93	1.47	1.00	5.00	(205)	2.86	1.29	1.00	5.00	(266)
현 어린이집 3년이상 근무교사 30% 이상	0.34	0.79	0.00	5.00	(752)	1.65	1.50	0.00	3.00	(205)	2.03	1.40	0.00	3.00	(266)
전문학사 소지 보육교사 60% 이상	-	-	-	-	-	-	-	-	-	-	0.25	0.43	0.00	1.00	(266)
원장 영유아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보육경력 3년 이상	0.26	0.44	0.00	1.00	(752)	0.27	0.45	0.00	1.00	(205)	0.59	0.92	0.00	2.00	(266)
현 어린이집 10년 이상 근무 원장	0.25	0.43	0.00	1.00	(752)	0.77	0.98	0.00	2.00	(205)	0.79	0.98	0.00	2.00	(266)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취약보육서비스	2.66	1.43	1.00	5.00	(752)	2.27	1.54	0.00	6.00	(205)	2.18	1.68	0.00	6.00	(266)
어린이집정보공개여부	2.28	1.68	0.00	4.00	(752)	-	-	-	-	-	-	-	-	-	-
맞벌이자녀재원율	-	-	-	-	(752)	1.60	1.36	0.00	3.00	(205)	1.61	1.32	0.00	3.00	(266)
지자체 특성화 지표	3.35	1.91	0.00	5.00	(752)	1.60	0.73	0.00	2.00	(205)	2.19	1.31	0.00	4.00	(266)
현원대비 유아 현원 30%이상 충족	1.61	1.50	0.00	3.00	(752)	2.18	1.34	0.00	3.00	(205)	-	-	-	-	-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2.21	1.32	0.00	3.00	(752)	-	-	-	-	-	-	-	-	-	-
최근3년간대표자변경	-	-	-	-	-	-0.25	0.83	-3.00	0.00	(205)	-0.16	0.67	-3.00	0.00	(266)
대표자-원장 동일인	2.53	1.09	0.00	3.00	(752)	2.59	1.03	0.00	3.00	(205)	4.64	1.29	0.00	5.00	(266)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1.39	2.31	0.00	10.00	(752)	1.65	1.53	0.00	5.00	(205)	1.51	1.63	0.00	5.00	(266)

자료: 보건복지부(2015d).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항목은 기본점수 35점과 가점 8점이 배점되어 있다. 먼저, 1급 보육교사 비율은 30점 만점에 2015년 평균 29.61점으로 최소 15점에서 최대 30점까지 분포하며, 2013년 26.98점, 2014년 28.92점으로 매년 점수가 상승하고 있다.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은 5점 만점에 2015년 평균 2.86점

이고,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분포한다. 2013년 평균 2.46보다는 상승하였으나 2014년 평균 2.93점보다는 낮아졌다. 가점 3점이 배점되어 있는 현 어린이집 3년이상 근속교사 30% 이상은 2015년 평균 2.03점이고 최소 0점에서 최대 2점까지 분포한다. 2013년 평균 0.34점, 2014년 평균 1.65점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2015년 신설된 가점 항목인 영유아 관련 전문학사 소지 보육교사 60%이상 항목은 가점 1점 만점에 평균 0.25점으로 0점에서 1점까지 분포한다. 원장의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 및 보육경력 3년 이상은 2015년 가점 2점 만점에서 평균 0.59점으로 최소 0점에서 최대 2점까지 분포하며, 2013년 평균 0.26점, 2014년 평균 0.27점과 비교하여 두배 이상 점수가 올랐다. 원장의 현 어린이집 10년 이상 근속은 가점 2점이 배점되어 있다. 2015년 평균 점수는 0.79점이고 점수분포는 0점에서 2점까지 이다. 2013년 평균 0.25점에서 2014년 3배가 넘는 평균 0.77점까지 상승하였고, 이후에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항목은 2015년까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취약보육서비스 개수로 평가하였다. 기본점수도 2013년은 5점 정도이었으나 2014년에는 8점으로 상향되었고, 2015년 다시 6점으로 낮아졌다. 2015년은 6점 만점에 평균 2.18점으로 최소 0점에서 최대 6점까지 분포한다. 2013년은 5점 만점에 평균 2.66점, 2014년은 8점 만점에 평균 2.27점이다. 또한 2014년에 가점 항목으로 신설된 맞벌이 자녀 재원율은 3점 만점에 2015년 평균 1.61점, 최소 0점에서 최대 3점까지 분포한다. 2014년도 평균 점수가 1.61점으로 점수 변동이 거의 없다.

지자체 특성화 지표는 매년 기본점수가 다르다. 2015년에는 만점 4점에서 평균이 2.19점이고,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까지 분포한다. 2013년은 5점 만점에 평균 3.35점, 2014년은 2점 만점에 평균 1.60점이다.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은 2013년 '최근 3년간 대표자와 원장 미변경'에서 평가 범위를 대표자로 축소한 항목으로 감점 3점이 배점되어 있다. 2015년 감점 평균이 0.16점으로 최대 감점 3점에서 최대 0점까지 분포한다. 2014년 평균 0.25점보다 낮아졌고, 2013년 평균 2.21점보다도 더 많이 낮아졌다.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은 2014년까지 가점 3점이 배점되어 있었으나 2014년 5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 평균 4.64점으로 최소 0점에서 최대 5점까지 분포한다. 가점 3점 만점인 2013년에는 평균 2.53점, 2014년은 평균 2.59점이다.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은 최대 5점 가점이 배점되어 있다. 2013년에는 최대 10점이었으나 2014년 5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2015년 평균 1.51점으로

점수분포는 최소 0점에서 최대 5점으로 2014년 평균 1.65점보다 다소 떨어졌다. 2013년은 최대 10점 만점에 평균이 1.39점이다(표 III-1-1 참조).

나. 시설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별 차이

1) 총점

2015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의 총점 분포를 보면, 95점 이상 100점 미만인 39.8%, 100점 이상 31.2%, 90~95% 21.8%, 85점 이상 90점 미만 7.1% 순이다(표 III-1-2 참조).

〈표 III-1-2〉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총점

단위: %(개소), 점

구분	85~90점 미만	90~95점 미만	95~100 점 미만	100점 이상	계(수)	평균	2014년	2013년
전체	7.1%	21.8	39.8	31.2	100.0(266)	97.63	92.42	96.13
시설유형								
가정	1.5	15.6	50.4	32.6	100.0(135)	98.69	89.67	93.20
민간	13.0	28.2	29.0	29.8	100.0(131)	96.54	93.11	97.94
$X^2(df)/t$		24.99(3)**				5.6***	-3.9***	-8.6***
지역규모								
대도시	7.4	28.4	35.8	28.4	100.0( 81)	97.01	91.15	96.10
중소도시	6.0	10.7	45.2	38.1	100.0( 84)	98.68	91.86	94.99
읍면지역	7.9	25.7	38.6	27.7	100.0(101)	97.26	93.81	97.29
$X^2(df)/F$		101.19(6)				3.4**	5.2**	5.3**
정원규모								
20인 이하	1.5	15.6	50.4	32.6	100.0(135)	98.69	89.67	93.20
21~49인	17.6	35.3	27.5	19.6	100.0( 51)	95.27	92.30	94.62
50~76인	13.6	31.8	36.4	18.2	100.0( 22)	95.20	93.70	97.11
77~97인	4.9	24.4	31.7	39.0	100.0( 41)	98.13	93.17	99.28
98인 이상	17.6	11.8	17.6	52.9	100.0( 17)	98.24	93.27	101.85
$X^2(df)/F$		-				2.6	4.2**	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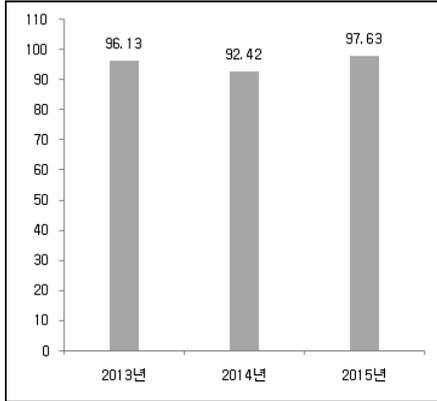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5d).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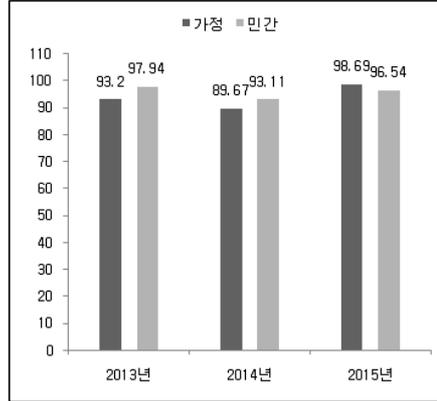
시설유형별로는 가정은 95~100점 미만이 50.4%로 절반을 차지하나 민간은 90~95점 미만과 95~100점 미만, 100점 이상이 각각 29% 내외로 고루 분포한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95~100점 미만이 다빈도이나 뚜렷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원규모별로는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규모가 클수록 100점 이상이 비

율이 늘어난다.

시설유형, 지역 및 정원규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2015년에는 시설유형과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2013년과 2014년은 시설유형, 지역 및 정원규모별로 차이가 유의하였다(표 III-1-2 참조).



[그림 III-1-1] 연도별 총점



[그림 III-1-2] 연도 및 시설유형별 총점

## 2) 세부 항목별 점수

### 가) 평가인증

평가인증 점수분포를 보면, 33.00~33.99점이 24.4%로 가장 많고, 32.00~32.99점 19.9%, 31.00~31.99점 18.4%, 34.00점 이상 15.8% 순이다. 30점 미만도 14.3% 정도로 많다. 이를 시설유형별로 보면, 민간은 32.00~32.99점이 27.5%로 다빈도이나 가정은 33.00~33.99점이 34.1%로 많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33.00~33.99점이 25~26%대로 높고, 농어촌은 31.00~31.99점이 23.8%로 도시지역보다 다빈도 점수가 낮다. 정원규모별로는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은 33.00~33.99점이 34.1%로 높은 반면, 21~49인과 50~76인 중규모는 32.00~32.99점이 각각 29.4%, 36.4%로 높고 77~97인과 98인 이상은 31.00~31.99점이 29%대로 많다(표 III-1-3 참조).

시설유형, 지역 및 정원규모에 따른 평가인증 점수 차이를 보면, 지역 및 정원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농어촌보다 유의하게 높고, 정원 20인 이하가 그 이상 규모보다 높다. 2013

년 평가인증 점수는 시설유형 및 지역규모, 2014년은 시설유형과 정원규모에 따라 차이가 유의하다. 2013~2015년까지 3년 간의 평가인증 점수를 정리하면, 가정이 민간보다 높고, 중소도시가 타 지역보다 높으며, 20인 이하가 그 이상 규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표 III-1-3 참조).

〈표 III-1-3〉 평가인증 점수(35점)

단위: %(개수), 점

구분	30미만	30.00~30.99	31.00~31.99	32.00~32.99	33.00~33.99	34.00 이상	계(수)	평균	2014년	2013년
전체	14.3	7.1	18.4	19.9	24.4	15.8	100.0(266)	32.06	30.52	31.08
시설유형										
가정	10.4	5.9	16.3	12.6	34.1	20.7	100.0(135)	32.53	31.90	31.60
민간	18.3	8.4	20.6	27.5	14.5	10.7	100.0(131)	32.53	30.18	30.76
$X^2(df)/t$			-					3.85	4.49***	4.85***
지역규모										
대도시	12.3	13.6	11.1	17.3	25.9	19.8	100.0( 81)	32.08	30.33	30.97
중소도시	7.1	1.2	19.0	26.2	26.2	20.2	100.0( 84)	32.64	30.79	31.42
읍면지역	21.8	6.9	23.8	16.8	21.8	8.9	100.0(101)	31.57	30.43	30.80
$X^2(df)/F$			-					6.23**	.55	5.34**
정원규모										
20인 이하	10.4	5.9	16.3	12.6	34.1	20.7	100.0(135)	32.53	31.90	31.60
21~49인	17.6	2.0	15.7	29.4	21.6	13.7	100.0( 51)	31.92	31.36	31.16
50~76인	27.3	4.5	9.1	36.4	4.5	18.2	100.0( 22)	31.30	30.07	30.69
77~97인	19.5	12.2	29.3	26.8	9.8	2.4	100.0( 41)	31.22	29.79	30.61
98인 이상	5.9	23.5	29.4	11.8	17.6	11.8	100.0( 17)	31.73	29.74	30.40
$X^2(df)/F$			-					4.51**	6.70***	7.99***

주: 2014년부터 환산점수(평가인증총점-90)+25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2015d).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  $p < .01$ , \*\*\*  $p < .001$

## 나) 건물 소유·이용 형태

### (1) 건물 소유형태

<표 III-1-4>는 건물 소유이용 형태 점수 분포를 나타낸다. 20점이 배점된 자가 전용 어린이집이 91.4%로 다수이었다. 10점이 배점된 자가 복합어린이집 또는 관리동어린이집은 7.5%이고 임대전용어린이집 또는 임대복합어린이집은 소수이다. 시설유형별로는 가정과 민간 중 20점, 즉 자가 전용어린이집은 각각 97.8%, 84.7%로 가정이 15%p 가까이 많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중 97.5%가 20점을 받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88~89% 정도로 지역 간에 10%p 정도 차이

가 난다. 정원규모별로는 대다수 정원규모의 어린이집이 20점을 받았지만, 21~49인 어린이집 중 29.4%는 10점을 받았다.

〈표 III-1-4〉 건물 소유·이용 형태(20점)

단위: %(개소), 점

구분	0점	5점	10점	15점	20점	계(수)	평균	2014년(20점)	2013년(20점)
전체	0.4	0.8	7.5	-	91.4	100.0(266)	19.06	17.54	15.43
시설유형									
가정	-	0.7	1.5	-	97.8	100.0(135)	19.74	12.93	14.83
민간	0.8	0.8	13.7	-	84.7	100.0(131)	18.36	18.69	15.81
$X^2(df)/t$							3.63	-7.40***	-3.07**
지역규모									
대도시	-	-	2.5	-	97.5	100.0( 81)	19.75	17.46	16.07
중소도시	-	-	11.9	-	88.1	100.0( 84)	18.81	16.91	14.87
읍면지역	1.0	2.0	7.9	-	89.1	100.0(101)	18.71	18.13	15.61
$X^2(df)/F$							2.90	1.29	3.67*
정원규모									
20인 이하	-	0.7	1.5	-	97.8	100.0(135)	19.74	12.93	14.81
21~49인	-	-	29.4	-	70.6	100.0( 51)	17.06	17.84	11.84
50~76인	-	-	9.1	-	90.9	100.0( 22)	19.09	18.39	16.48
77~97인	-	2.4	-	-	97.6	100.0( 41)	19.63	19.08	18.11
98인 이상	5.9	-	5.9	-	88.2	100.0( 17)	18.24	19.14	18.74
$X^2(df)/F$							8.20***	17.78***	58.48***

주: 자가 전용어린이집(20점), 자가복합어린이집 또는 관리동어린이집(10점), 임대전용어린이집(5점), 임대복합어린이집(0점)

자료: 보건복지부(2015d).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건물 소유이용 형태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 정원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인 이하가 평균 19.74점으로 가장 높고, 21~49인이 평균 17.06점으로 낮다. 2013년도에는 민간이 가정보다, 대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점수가 높고, 2014년에는 민간이 가정보다, 정원이 98인 이상이 20인 이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표 III-1-4 참조).

## (2)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감점 8점)에서 감점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은 41.7%로 절반 가까이 되고,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2점)이 43.2%,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5점) 15%로 높다. 시설유형별로는 가정이 민간보다 감점을 받지

않은 비율이 10%p 정도 높고, 농어촌 지역에 소재할수록, 정원규모가 20인 이하가 그 이상 어린이집보다 감점을 받지 않은 비율이 높다. 특히 98인 이상 대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2점 감점이 58.8%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평균 점수를 시설유형과 지역 및 정원규모별로 보면, 2015년에는 지역규모, 2014년에는 시설유형 및 정원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2013년에는 가점 항목임에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III-1-5 참조).

〈표 III-1-5〉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감점 8점)

구분				계(수)	평균	단위: %(개소), 점	
	-5점	-2점	0점			2014년(8점)	2013년(10점)
전체	15.0	43.2	41.7	100.0(266)	-1.62	-1.83	2.04
시설유형							
가정	9.6	43.7	46.7	100.0(135)	-1.36	-0.93	1.89
민간	20.6	42.7	36.6	100.0(131)	-1.89	-2.06	2.13
$X^2(df)/t$		6.95(2)*			2.57	3.19**	1.83
지역규모							
대도시	21.0	49.4	29.6	100.0( 81)	-2.04	-2.19	2.16
중소도시	15.5	41.7	42.9	100.0( 84)	-1.61	-1.74	2.08
읍면지역	9.9	39.6	50.5	100.0(101)	-1.29	-1.66	1.93
$X^2(df)/F$		9.48(4)			4.50†	1.20	.87
정원규모							
20인 이하	9.6	43.7	46.7	100.0(135)	-1.36	-0.93	1.89
21~49인	21.6	39.2	39.2	100.0( 51)	-1.86	-1.57	2.03
50~76인	18.2	40.9	40.9	100.0( 22)	-1.73	-2.06	2.10
77~97인	22.0	41.5	36.6	100.0( 41)	-1.93	-2.66	2.05
98인 이상	17.6	58.8	23.5	100.0( 17)	-2.06	-1.98	2.37
$X^2(df)/F$		9.29(8)			1.74	3.97**	1.44

주: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 5% 미만(-2점), 5%이상 10%미만(-5점), 10%이상15%미만(-8점)

2013년은 가점 항목임.

자료: 보건복지부(2015d).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  $p < .05$ , \*\*  $p < .01$

나)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1) 1급 보육교사 비율

1급 보육교사 비율의 점수 분포를 보면, 30점이 배점된 70%이상(농어촌 50% 이상)이상이 92.9%로 다수이고, 25점이 배점된 60%이상 70%미만(농어촌 30% 이상 40%미만)이 6.8%, 15점이 배점된 50%이상 60%미만(농어촌 25%이상 30%미

만)은 0.4% 순이다. 가정과 민간 모두 70%이상(농어촌 50%이상)이 92~93% 정도로 높고, 읍면지역일수록 30점 만점을 받은 비율이 높다. 정원규모별로는 50~76인 규모만 30점 만점이 86.4%로 낮고 나머지는 92~95%로 높다. 1급 보육교사 비율에 대한 평균 점수는 읍면지역일수록 유의하게 높다. 2014년 2015년과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일수록 점수가 높고, 2013년은 읍면지역이거나 정원 규모가 작을수록 높다(표 III-1-6 참조).

〈표 III-1-6〉 1급 보육교사 비율(30점)

단위: %(개소), 점

구분	15점	20점	25점	30점	계(수)	평균	2014년(30점)	2013년(30점)
전체	0.4	-	6.8	92.9	100.0(266)	29.61	28.92	26.98
시설유형								
가정	-	-	7.4	92.6	100.0(135)	29.63	29.27	27.35
민간	0.8	-	6.1	93.1	100.0(131)	29.58	28.83	26.75
$X^2(df)/t$		-				0.26	1.21	1.69
지역규모								
대도시	-	-	16.0	84.0	100.0( 81)	29.20	28.53	25.07
중소도시	1.2	-	3.6	95.2	100.0( 84)	29.64	28.50	26.46
읍면지역	-	-	2.0	98.0	100.0(101)	29.90	29.55	28.66
$X^2(df)/F$		-				4.82**	5.11**	31.21***
정원규모								
20인 이하	-	-	7.4	92.6	100.0(135)	29.63	29.27	27.41
21~49인	-	-	5.9	94.1	100.0( 51)	29.71	28.86	27.88
50~76인	4.5	-	9.1	86.4	100.0( 22)	28.86	29.23	26.54
77~97인	-	-	4.9	95.1	100.0( 41)	29.76	28.74	26.53
98인 이상	-	-	5.9	94.1	100.0( 17)	29.71	28.66	25.46
$X^2(df)/F$		-				1.45	.62	4.82**

주: 1급보육교사 비율 70%이상(30점), 60%이상 70%미만(25점), 50%이상60%미만(15점),45%이상50%미만(7점),45%미만(3점)

자료: 보건복지부(2015d).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  $p < .01$ , \*\*\*  $p < .001$

## (2) 원장 재직경력

원장 재직경력에 대한 점수는 7년 이상 15년 미만(3점)이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7년 미만(1점)이 24.4%, 15년 이상(5점)은 17.7%이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가정과 민간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거나 7년 미만과 15년 이상(5점)은 민간이 가정보다 다소 많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7년이상 15년 미만(3점)이 많고, 15년 이상(5점)은 중소도시가 23.8%로 타 지역보다 많다. 정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77~97인과 98인 이상의 15년 이상(5점)

이 각각 31.7%, 29.4%로 높다. 원장 재직경력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 정원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77~97인이 평균 3.34점으로 가장 높고, 50~76인이 평균 2.45점으로 낮다. 2013년에는 민간이 가정보다, 도시지역일수록, 98인 이상 대규모 어린이집이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표 III-1-7 참조).

〈표 III-1-7〉 원장 재직경력(5점)

구분	1점	3점	5점	계(수)	평균	단위: %(개수), 점	
						2014년(5점)	2013년(5점)
전체	24.4	57.9	17.7	100.0(266)	2.86	2.93	2.46
시설유형							
가정	23.0	60.7	16.3	100.0(135)	2.87	2.95	2.07
민간	26.0	55.0	19.1	100.0(131)	2.86	2.93	2.70
$X^2(df)/t$		.92(2)			0.03	0.1	-6.59***
지역규모							
대도시	27.2	60.5	12.3	100.0( 81)	2.70	3.28	2.57
중소도시	19.0	57.1	23.8	100.0( 84)	3.10	2.88	2.54
읍면지역	26.7	56.4	16.8	100.0(101)	2.80	2.73	2.30
$X^2(df)/F$		4.73(4)			2.10	2.46	3.30*
정원규모							
20인 이하	23.0	60.7	16.3	100.0(135)	2.87	2.95	2.06
21~49인	31.4	56.9	11.8	100.0( 51)	2.61	2.41	2.66
50~76인	31.8	63.6	4.5	100.0( 22)	2.45	3.00	2.52
77~97인	14.6	53.7	31.7	100.0( 41)	3.34	2.89	2.66
98인 이상	29.4	41.2	29.4	100.0( 17)	3.00	3.24	2.93
$X^2(df)/F$		13.87(8)			2.56*	1.88	12.91***

주: 15년이상(5점), 7년이상 15년미만(3점), 7년미만(1점)

자료: 보건복지부(2015d).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  $p < .05$ , \*\*\*  $p < .001$

(3)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교사 30% 이상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교사 30% 이상 점수는 3점이 67.7%로 다빈도이고, 0점도 32%로 많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가정어린이집의 3점 비율이 71.1%로 민간 64.1%보다 높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이 3점을 받은 비율이 10%p 정도 높고, 정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은 없으나 20인 이하와 50~76인, 98인 이상이 각각 70%를 상회한다. 시설유형, 지역 및 정원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2013년과 2014년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표 III-1-8 참조).

〈표 III-1-8〉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 교사 30% 이상(3점)

단위: %(개소), 점

구분	0점	1점	2점	3점	계(수)	평균	2014년(3점)	2013년(3점)
전체	32.0	0.4	-	67.7	100.0(266)	2.03	1.65	1.39
시설유형								
가정	28.1	0.7	-	71.1	100.0(135)	2.14	1.98	1.44
민간	35.9	-	-	64.1	100.0(131)	1.92	1.57	1.35
$X^2(df)/t$		-				1.26	1.59	.75
지역규모								
대도시	38.3	1.2	-	60.5	100.0( 81)	1.83	1.37	1.33
중소도시	28.6	-	-	71.4	100.0( 84)	2.14	1.90	1.55
읍면지역	29.7	-	-	70.3	100.0(101)	2.11	1.65	1.25
$X^2(df)/F$		-				1.28	1.96	3.01
정원규모								
20인 이하	28.1	0.7	-	71.1	100.0(135)	2.14	1.98	1.44
21~49인	41.2	-	-	58.8	100.0( 51)	1.76	1.38	1.41
50~76인	27.3	-	-	72.7	100.0( 22)	2.18	1.65	1.02
77~97인	36.6	-	-	63.4	100.0( 41)	1.90	1.89	1.44
98인 이상	29.4	-	-	70.6	100.0( 17)	2.12	1.45	1.46
$X^2(df)/F$		-				.83	1.32	1.56

주: 산정공식은 (3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전체 보육교사) x 100임.  
 자료: 보건복지부(2015d).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 (4)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소지 보육교사 60% 이상(가점)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소지 보육교사 60% 이상은 2015년에 신설된 항목이다. 가점 1점을 받은 비율은 25.2% 정도이고 74.8%는 가점을 받지 못했다.

〈표 III-1-9〉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소지 보육교사 60% 이상(1점)

단위: %(개소), 점

구분	0점	1점	계(수)	평균	구분	0점	1점	계(수)	평균
전체	74.8	25.2	100.0(266)	0.25					
시설유형					정원규모				
가정	73.3	26.7	100.0(135)	0.27	20인 이하	73.3	26.7	100.0(135)	0.27
민간	76.3	23.7	100.0(131)	0.24	21~49인	86.3	13.7	100.0( 51)	0.14
$X^2(df)/t$		0.32(1)		0.56	50~76인	72.7	27.3	100.0( 22)	0.27
지역규모					77~97인	73.2	26.8	100.0( 41)	0.27
대도시	75.3	24.7	100.0( 81)	0.25	98인 이상	58.8	41.2	100.0( 17)	0.41
중소도시	70.2	29.8	100.0( 84)	0.30	$X^2(df)/F$		6.13(4)		1.54
읍면지역	78.2	21.8	100.0(101)	0.22					
$X^2(df)/F$		1.57(2)		.78					

주: 2015년 신설된 항목임.  
 자료: 보건복지부(2015d).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시설유형별로도 1점 비율은 25% 내외로 차이가 거의 없고,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이 가점을 받은 비율이 다소 높다. 정원규모별로는 98인 이상이 1점 가점 비율이 41.2%로 97인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시설유형, 지역 및 정원규모에 따른 점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III-1-9 참조).

(5) 원장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 및 경력 3년 이상

원장의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 및 경력 3년 이상 항목에 대한 점수 분포는 가점 2점은 29.7%로 1/3정도이고 70.3%가 0점을 받았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과 가정이 2점을 받은 비율이 각각 33.6%, 25.9%로 민간이 다소 높고,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일수록 2점을 받은 비율이 높다. 정원규모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50~76인과 98인 이상이 40%를 상회한다. 시설유형, 지역 및 정원규모에 따른 점수 차이는 보이지 않고, 2013년과 2014년도 마찬가지이다(표 III-1-10 참조).

〈표 III-1-10〉 원장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 및 경력 3년 이상(2점)

구분	0점	2점	계(수)	평균	단위: %(개소), 점	
					2014년(1점)	2013년(1점)
전체	70.3	29.7	100.0(266)	0.59	0.27	0.26
시설유형						
가정	74.1	25.9	100.0(135)	0.52	0.22	0.23
민간	66.4	33.6	100.0(131)	0.67	0.29	0.27
$X^2(df)/t$	1.87(1)			-1.37	-.86	-1.38
지역규모						
대도시	69.1	30.9	100.0( 81)	0.62	0.19	0.21
중소도시	70.2	29.8	100.0( 84)	0.60	0.34	0.25
읍면지역	71.3	28.7	100.0(101)	0.57	0.28	0.29
$X^2(df)/F$	0.10(2)			0.05	1.65	1.71
정원규모						
20인 이하	74.1	25.9	100.0(135)	0.52	0.22	0.23
21~49인	64.7	35.3	100.0( 51)	0.71	0.24	0.28
50~76인	54.5	45.5	100.0( 22)	0.91	0.23	0.31
77~97인	78.0	22.0	100.0( 41)	0.44	0.24	0.22
98인 이상	58.8	41.2	100.0( 17)	0.82	0.38	0.28
$X^2(df)/F$	655(4)			1.65	1.16	0.92

자료: 보건복지부(2015d).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6) 현 어린이집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가점)

원장의 현 어린이집 10년 이상 근속에 대한 점수분포는 2점이 39.5%, 0점

60.5%로 가점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시설유형별로는 가정이 2점을 받은 비율이 42.2%, 민간 36.6%로 차이가 나고, 중소도시가 타 지역보다 높다. 정원규모별로는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20인 이하와 77~97인이 40%대로 상대적으로 높다. 현 어린이집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점수는 시설유형, 지역 및 정원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014년도 2015년과 유사하지만, 2013년은 시설유형과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유의하였다.

〈표 III-1-11〉 현 어린이집 10년 이상 근속: 원장(2점)

구분	단위: %(개소), 점					
	0점	2점	계(수)	평균	2014년(2점)	2013년(1점)
전체	60.5	39.5	100.0(266)	0.79	0.77	0.25
시설유형						
가정	57.8	42.2	100.0(135)	0.84	0.98	0.19
민간	63.4	36.6	100.0(131)	0.73	0.72	0.28
$X^2(df)/t$	.87(1)			0.93	1.51	-2.67**
지역규모						
대도시	64.2	35.8	100.0( 81)	0.72	0.77	0.24
중소도시	56.0	44.0	100.0( 84)	0.88	0.94	0.30
읍면지역	61.4	38.6	100.0(101)	0.77	0.63	0.20
$X^2(df)/F$	1.22(2)			.61	1.95	4.24*
정원규모						
20인 이하	57.8	42.2	100.0(135)	0.84	0.98	0.19
21~49인	62.7	37.3	100.0( 51)	0.75	0.54	0.27
50~76인	81.8	18.2	100.0( 22)	0.36	0.97	0.22
77~97인	53.7	46.3	100.0( 41)	0.93	0.74	0.29
98인 이상	64.7	35.3	100.0( 17)	0.71	0.69	0.32
$X^2(df)/F$	5.64(4)			1.41	1.41	2.44*

자료: 보건복지부(2015d).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  $p < .05$ , \*\*  $p < .01$

#### 마)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 (1)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에 대한 점수를 보면, 1개 실시(2점)이 43.2%로 다수이고, 2개 실시(4점) 25.6%, 3개 이상(6점) 4.9% 순이다. 미실시(0점)도 25.9%로 높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가정은 1개 실시(2점)이 50.4%로 절반을 차지하나, 민간은 1개(2점)와 2개(4점) 실시가 각각 35%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규모별로는 1개(2점)은 읍면지역일수록 점수를 받은 비율이 높고, 미실시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정원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

이지 않으나, 77~97인, 98인 이상 어린이집이 1개(2점)과 2개(4점)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시설유형, 지역 및 정원규모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다 민간이 높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으며, 규모가 클수록 점수가 높다. 2013년은 시설유형과 지역규모 그리고 정원규모, 2014년은 시설유형에 따라서만 차이가 유의하였다(표 III-1-12 참조).

〈표 III-1-12〉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6점)

단위: %(개소), 점

구분	0점	1점	2점	4점	6점	계(수)	평균	2014년(8점)	2013년(5점)
전체	25.9	0.4	43.2	25.6	4.9	100.0(266)	2.18	2.27	2.66
시설유형									
가정	34.1	-	50.4	14.1	1.5	100.0(135)	1.66	1.80	2.14
민간	17.6	0.8	35.9	37.4	8.4	100.0(131)	2.73	2.39	2.99
$X^2(df)/t$							-5.45***	-2.21*	-8.41***
지역규모									
대도시	32.1	-	35.8	27.2	4.9	100.0( 81)	2.10	2.11	2.67
중소도시	32.1	1.2	45.2	17.9	3.6	100.0( 84)	1.85	2.24	2.44
읍면지역	15.8	-	47.5	30.7	5.9	100.0(101)	2.53	2.43	2.89
$X^2(df)/F$							4.11*	.75	7.31**
정원규모									
20인 이하	34.1	-	50.4	14.1	1.5	100.0(135)	1.66	1.80	2.13
21~49인	21.6	2.0	35.3	35.3	5.9	100.0( 51)	2.49	2.16	2.75
50~76인	22.7	-	18.2	50.0	9.1	100.0( 22)	2.91	2.65	2.89
77~97인	14.6	-	41.5	34.1	9.8	100.0( 41)	2.78	2.37	3.21
98인 이상	5.9	-	47.1	35.3	11.8	100.0( 17)	3.06	2.41	3.23
$X^2(df)/F$							7.94***	1.64	21.12***

주: 취약보육서비스 실시 개수로 점수 부여

2015년 기준 3개 이상(6점), 2개(4점), 1개(2점), 미실시(0점)

자료: 보건복지부(2015d).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2) 맞벌이자녀 채용율(가점)

2014년에 신설된 맞벌이자녀 채용율에 대해 3점을 배점한 50% 이상(농어촌 40%이상)이 41%로 많다. 맞벌이자녀 채용율이 40%미만으로 0점을 받은 어린이집이 34.2%나 된다. 시설유형별로는 가정은 50%이상(3점)이 51.9%이나 민간은 40%미만(0점)이 42%로 높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일수록 50% 이상(농어촌 40%이상)으로 3점을 받은 비율이 높다. 정원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50% 이상(농어촌 40%이상) 3점을 받은 비율이 높다.

맞벌이자녀 재원을 평균 점수는 시설유형과 정원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어린이집 유형이 가정이거나 규모가 작을수록 이 항목에 대한 점수를 높게 받았다. 2014년에는 시설유형과 지역, 정원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III-1-13 참조).

〈표 III-1-13〉 맞벌이자녀 재원율(3점)

구분					단위: %(개소), 점		
	0점	1점	2점	3점	계(수)	평균	2014년(3점)
전체	34.2	11.3	13.5	41.0	100.0(266)	1.61	1.60
시설유형							
가정	26.7	8.9	12.6	51.9	100.0(135)	1.90	2.49
민간	42.0	13.7	14.5	29.8	100.0(131)	1.32	1.38
$X^2(df)/t$			14.04(3)*			3.63***	5.79***
지역규모							
대도시	32.1	18.5	17.3	32.1	100.0( 81)	1.49	1.16
중소도시	32.1	13.1	11.9	42.9	100.0( 84)	1.65	1.57
읍면지역	37.6	4.0	11.9	46.5	100.0(101)	1.67	1.94
$X^2(df)/F$			12.96(6)*			.47	5.75**
정원규모							
20인 이하	26.7	8.9	12.6	51.9	100.0(135)	1.90	2.49
21~49인	33.3	13.7	13.7	39.2	100.0( 51)	1.59	1.76
50~76인	40.9	4.5	22.7	31.8	100.0( 22)	1.45	1.16
77~97인	48.8	19.5	7.3	24.4	100.0( 41)	1.07	1.32
98인 이상	52.9	11.8	23.5	11.8	100.0( 17)	0.94	1.29
$X^2(df)/F$			-			4.69**	7.24***

주: 2014년부터 신설된 항목임.

자료: 보건복지부(2015d).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 바) 지자체 특성화 지표

지자체 특성화지표의 점수분포는 2점이 44.0%로 다수이고, 다음으로 4점 26.3%, 1점 11.3% 순이다. 점수를 받지 못한 비율도 13.5%나 된다. 시설유형별로는 2점이 다빈도를 나타내나 4점은 가정보다 민간이 10%p 정도 높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일수록 4점을 받은 비율이 높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 0점을 받은 비율이 각각 16~17%로 높다. 정원규모별로는 97인 이하 규모는 2점이 40~50%대로 다빈도이고, 98인 이상은 4점이 47.1%로 다빈도이고, 나머지 점수는 10%대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지자체특성화 지표는 시설유형 및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민간이 가정보다, 중소도시가 타 지역보다 점수가 높다. 2013년과 2014년에는 도시지역일수록 점수가 높았다(표 III-1-14 참조).

〈표 III-1-14〉 지자체 특성화 지표(4점)

구분	0점	1점	2점	3점	4점	계(수)	평균	단위: %(개소), 점	
								2014년(2점)	2013년(5점)
전체	13.5	11.3	44.0	4.9	26.3	100.0(266)	2.19	1.60	3.35
시설유형									
가정	15.6	13.3	45.9	3.7	21.5	100.0(135)	2.02	1.68	3.19
민간	11.5	9.2	42.0	6.1	31.3	100.0(131)	2.37	1.59	3.44
$X^2(df)/t$			5.31(4)				-2.15*	.80	-1.75
지역규모									
대도시	16.0	29.6	16.0	4.9	33.3	100.0( 81)	2.10	1.79	3.95
중소도시	6.0	1.2	57.1	7.1	28.6	100.0( 84)	2.51	1.71	3.20
읍면지역	17.8	5.0	55.4	3.0	18.8	100.0(101)	2.00	1.39	3.13
$X^2(df)/F$			-				3.86*	6.49**	11.72***
정원규모									
20인 이하	15.6	13.3	45.9	3.7	21.5	100.0(135)	2.02	1.68	3.17
21~49인	13.7	9.8	43.1	9.8	23.5	100.0( 51)	2.20	1.63	3.39
50~76인	9.1	13.6	59.1	-	18.2	100.0( 22)	2.05	1.61	3.21
77~97인	9.8	4.9	41.5	2.4	41.5	100.0( 41)	2.61	1.69	3.70
98인 이상	11.8	11.8	17.6	11.8	47.1	100.0( 17)	2.71	1.48	3.52
$X^2(df)/F$			-				2.37	.69	1.82

자료: 보건복지부(2015d).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사) 기타

(1)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감점)

2013년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시 3점 가점을 준 항목은 2014년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시 3점 감점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점수분포를 보면, 감점 3점을 받은 어린이집은 5.3%로 소수이고, 대부분 감점을 받지 않았다. 시설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별로도 감점을 받지 않은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나, 3점 감점을 받은 어린이집은 민간이 8.4%, 가정 2.2%로 민간이 더 많고, 대도시가 7.4%, 77~97인 규모가 12.2%로 높다.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점수를 시설유형, 지역 및 정원규모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였다. 가점을 준 2013년에는 지역규모별로만 차이가 유의하고, 2015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2014년에는 시설유형에 따라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1-15〉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감점 3점)

단위: %(개소), 점

구분	-3점	0점	계(수)	평균	2014년(3점)	2013년(3점)
전체	5.3	94.7	100.0(266)	-0.16	-0.25	2.21
시설유형						
가정	2.2	97.8	100.0(135)	-0.07	0.00	2.31
민간	8.4	91.6	100.0(131)	-0.25	-0.31	2.14
$X^2(df)/t$		5.08(1)*		2.27*	4.34***	1.77
지역규모						
대도시	7.4	92.6	100.0( 81)	-0.22	-0.32	2.16
중소도시	3.6	96.4	100.0( 84)	-0.11	-0.22	2.38
읍면지역	5.0	95.0	100.0(101)	-0.15	-0.23	2.06
$X^2(df)/F$		1.25(2)		.62	.26	4.49*
정원규모						
20인 이하	2.2	97.8	100.0(135)	-0.07	0.00	2.32
21~49인	5.9	94.1	100.0( 51)	-0.18	-0.41	2.28
50~76인	9.1	90.9	100.0( 22)	-0.27	-0.29	1.95
77~97인	12.2	87.8	100.0( 41)	-0.37	-0.08	2.07
98인 이상	5.9	94.1	100.0( 17)	-0.18	-0.41	2.13
$X^2(df)/F$		7.15(4)		1.80	2.30	1.90

주: 2013년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가점’ 항목임  
 자료: 보건복지부(2015d).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  $p < .05$ , \*\*\*  $p < .001$

## (2)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가점)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항목은 2014년까지 가점 3점이 배점되었고, 2015년부터 5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항목에 대해 5점 가점을 받은 비율은 92.9점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점수를 받지 못한 어린이집은 7.1% 정도이다. 시설유형별로는 가정이 민간보다 5점을 받은 비율이 10%p 많고, 대도시일수록 가점을 받은 비율이 높다. 정원규모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50~76인 어린이집은 5점 가점을 받은 비율이 72.7%로 상대적으로 적다.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평균 점수는 시설유형, 지역 및 정원규모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정이거나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 정원규모가 20인 이하이거나 98인 이상 대규모일 경우 점수가 높다. 가점 3점을 준 2013년과 2014년은 시설유형과 지역규모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I-1-16〉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5점)

단위: %(개소), 점

구분	0점	5점	계(수)	평균	2014년(3점)	2013년(3점)
전체	7.1	92.9	100.0(266)	4.64	2.59	2.53
시설유형						
가정	2.2	97.8	100.0(135)	4.89	2.93	2.69
민간	12.2	87.8	100.0(131)	4.39	2.51	2.43
$X^2(df)/t$		10.00(1)**		3.21**	3.70**	3.30**
지역규모						
대도시	2.5	97.5	100.0( 81)	4.88	2.74	2.66
중소도시	3.6	96.4	100.0( 84)	4.82	2.87	2.38
읍면지역	13.9	86.1	100.0(101)	4.31	2.25	2.61
$X^2(df)/F$		11.16(2)**		5.76**	7.87**	4.64*
정원규모						
20인 이하	2.2	97.8	100.0(135)	4.89	2.93	2.70
21~49인	5.9	94.1	100.0( 51)	4.71	2.76	2.54
50~76인	27.3	72.7	100.0( 22)	3.64	2.42	2.37
77~97인	17.1	82.9	100.0( 41)	4.15	2.37	2.36
98인 이상	-	100.0	100.0( 17)	5.00	2.48	2.37
$X^2(df)/F$		-		7.04***	2.19	0.11

자료: 보건복지부(2015d).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  $p < .05$ , \*\*  $p < .01$ , \*\*\*  $p < .001$

(3) 담임교사 급여 지급수준

담임교사 급여 지급기준 준수 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주는 항목은 1점 미만 이 48.5%로 절반 가까이 되고, 3점 이상이 21.4%, 1~1.99점 19.5%, 2~2.99점 10.5% 순이다.

〈표 III-1-17〉 담임교사 급여 지급기준(5점)

단위: %(개소), 점

구분	1점미만	1~1.99점	2~2.99점	3점이상	계(수)	평균	2014년(5점)	2013년(10점)
전체	48.5	19.5	10.5	21.4	100.0(266)	1.51	1.65	1.39
시설유형								
가정	63.7	14.8	4.4	17.0	100.0(135)	1.10	1.33	0.64
민간	32.8	24.4	16.8	26.0	100.0(131)	1.94	1.73	1.86
$X^2(df)/t$		28.31(3)***				-4.32***	-1.50	-8.34***
지역규모								
대도시	45.7	24.7	7.4	22.2	100.0( 81)	1.55	1.68	1.48
중소도시	53.6	15.5	7.1	23.8	100.0( 84)	1.46	1.40	1.22
읍면지역	46.5	18.8	15.8	18.8	100.0(101)	1.52	1.84	1.52
$X^2(df)/F$		7.44(6)				.06	1.51	1.33

(표 III-1-17 계속)

구분	1점미만	1~1.99점	2~2.99점	3점이상	계(수)	평균	2014년(5점)	2013년(10점)
정원규모								
20인 이하	63.7	14.8	4.4	17.0	100.0(135)	1.10	1.33	0.62
21~49인	43.1	21.6	13.7	21.6	100.0( 51)	1.68	1.31	1.74
50~76인	36.4	31.8	9.1	22.7	100.0( 22)	1.72	1.98	1.47
77~97인	22.0	24.4	19.5	34.1	100.0( 41)	2.32	1.88	1.73
98인 이상	23.5	23.5	29.4	23.5	100.0( 17)	2.04	1.76	2.46
$X^2(df)/F$			-			5.74***	1.57	17.18***

자료: 보건복지부(2015d).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  $p < .001$

가정은 민간보다 1점 미만 비율이 2배 가까이 높고, 3점 이상은 민간이 가정보다 높다. 지역규모별로는 1점 미만이 40~50%대로 다빈도이다. 정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평균 점수는 가정보다 민간일수록, 규모가 클수록 유의하게 높다. 2013년은 시설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2014년은 어떠한 차이도 없었다.

## 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현황

2절은 공공형어린이집 연도별 선정 규모 및 총 규모를 살펴보고, 공공형어린이집이 선정 및 운영기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원충족률, 1급 보육교사 비율, 평가인증점수, 누리과정 보조교사 수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 가. 공공형어린이집 규모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은 선정규모는 <표 III-2-1>에 정리하였다. 2011년 700여 개소에서 2012년 136개소 정도로 대폭 줄었으나 2013년 764개소까지 늘었고, 2014년 이후에는 매년 200~300개소가 선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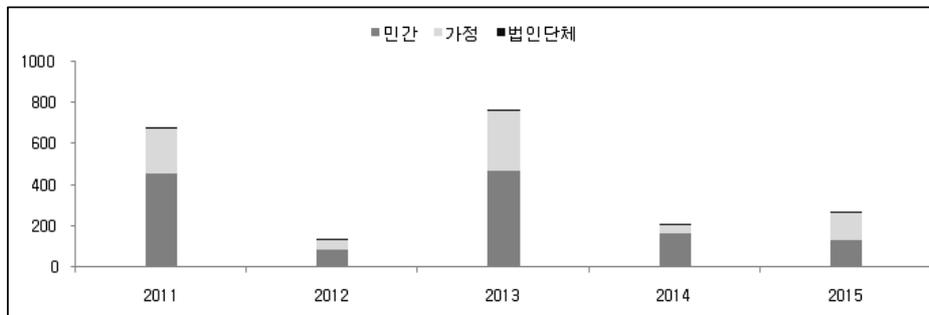
이를 시도별로 보면, 2015년 기준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89개소로 가장 많고, 부산 21개소, 나머지는 10~20개소 사이이다. 세종이 2개소로 가장 적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2014년까지는 민간 위주로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하였으나 2015년은 민간과 가정이 같은 비율이다.

〈표 III-2-1〉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규모

단위: 개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민간	가정	법인단체	계	민간	가정	법인단체	계	민간	가정	법인단체	계	민간	가정	법인단체	계	민간	가정	법인단체
전체	679	452	224	3	136	88	46	2	764	467	292	5	210	164	45	1	272	134	137	1
부산	20	8	11	1	31	12	19	-	40	14	25	1	16	10	6	-	21	13	8	-
대구	45	40	5	-	12	9	3	-	36	28	8	-	13	11	2	-	12	6	6	-
인천	32	23	9	-	1	1	-	-	38	27	11	-	11	9	2	-	15	6	9	-
광주	21	19	2	-	5	2	3	-	18	12	6	-	6	6	-	-	13	2	11	-
대전	43	30	13	-	7	3	3	1	41	23	18	-	15	13	2	-	16	10	6	-
울산	40	27	13	-	-	-	-	-	23	15	8	-	4	4	-	-	8	2	6	-
세종	-	-	-	-	-	-	-	-	6	4	2	-	2	2	-	-	2	-	2	-
경기	184	80	102	2	24	19	4	1	226	95	129	2	57	34	22	1	89	44	44	1
강원	32	22	10	-	12	6	6	-	51	29	22	-	6	6	-	-	12	6	6	-
충북	31	27	4	-	-	-	-	-	37	31	6	-	7	7	-	-	8	4	4	-
충남	23	20	3	-	7	5	2	-	73	44	29	-	5	5	-	-	10	5	5	-
전북	40	22	18	-	-	-	-	-	31	20	11	-	16	13	3	-	13	6	7	-
전남	27	22	5	-	4	3	1	-	20	17	3	-	6	5	1	-	10	7	3	-
경북	41	39	2	-	8	8	-	-	34	34	-	-	25	24	1	-	17	9	8	-
경남	72	48	24	-	19	17	2	-	40	34	6	-	6	5	1	-	16	8	8	-
제주	28	25	3	-	6	3	3	-	50	40	8	2	15	10	5	-	10	6	4	-

자료: 보건복지부(2015d).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그림 III-2-1] 연도·어린이집 유형별 선정 규모

<표 III-2-2>는 2016년 3월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총 1,796개소로, 민간이 1,167개소, 가정 617개소, 법인단체 12개소로 민간이 다수를 차지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95개소로 가장 많다. 특히 경기도는 가정 250개소, 민간 239개소로 대부분 민간이 가정보다 많지만 경기도는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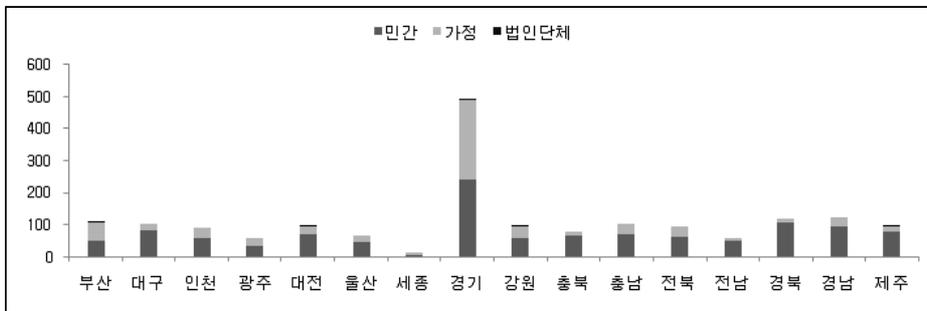
대의 경우이다.

〈표 III-2-2〉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2016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796	110	104	91	56	99	65	11	495	98	78	101	93	56	117	123	99
민간	1,167	51	82	59	34	70	46	6	239	59	66	70	60	48	108	92	77
가정	617	57	22	32	22	28	19	5	250	38	12	31	33	8	9	31	20
법인단체	12	2	-	-	-	1	-	-	6	1	-	-	-	-	-	-	2

자료: 보건복지부(2016d). 어린이집 일람현황 내부자료(2016년 3월말 기준).



[그림 III-2-2]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규모: 2016년

## 나. 선정 및 운영기준 유지 현황

### 1) 정원충족률

2013년부터 2015년 3년 간 공공형과 국공립 및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I-2-3>에 제시하였다.

먼저, 공공형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3월에는 85% 내외 정도의 선에 머무르다가 12월로 가면서 90% 초반 대까지 상승한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정원충족률이 높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2013년에는 중소도시보다 정원충족률이 높으나, 이후 역전 현상을 보인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공공형어린이집은 2015년 6월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보다 정원충족률이 높다. 이를 다시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면, 매년 3, 6월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공공형보다 높으나 9월 이후로 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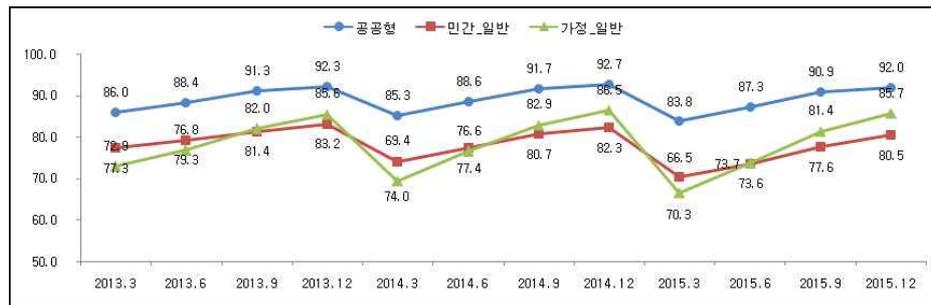
반대로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표 III-2-3〉 정원충족률

단위: %(개소)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공공형 전체	86.0	88.4	91.3	92.3	85.3	88.6	91.7	92.7	83.8	87.3	90.9	92.0
대도시	88.4	90.2	93.2	93.7	86.7	89.9	92.6	93.6	85.5	88.3	92.1	93.3
중소도시	86.6	90.2	93.0	94.2	87.0	90.7	94.0	95.1	85.8	90.3	93.9	94.6
읍면지역	83.1	85.1	87.9	89.1	82.1	85.2	88.3	89.4	80.4	83.2	86.8	88.3
(수)	(774)	(1,091)	(1,392)	(1,484)	1,461	(1,541)	(1,589)	(1,624)	(1,598)	(1,573)	(1,801)	(1,789)
전체	75.8	78.5	82.3	84.5	72.7	77.9	82.5	84.8	69.9	75.0	80.5	83.3
국공립	90.9	88.4	91.0	85.6	88.4	89.4	89.0	87.8	87.0	87.8	88.4	87.4
민간_일반	77.3	79.3	81.4	83.2	74.0	77.4	80.7	82.3	70.3	73.6	77.6	80.5
가정_일반	72.9	76.8	82.0	85.6	69.4	76.6	82.9	86.5	66.5	73.7	81.4	85.7

자료: 보건복지부(2013c, 2014d, 2015e). 월별 어린이집 일람현황 내부자료.



[그림 III-2-3] 공공형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 2013~2015

## 2) 평가인증 점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당시 평가인증 점수를 분석하면, 2014년은 전체 평균이 95.52점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가정이 96.90점, 민간 95.18점으로 가정이 유의하게 높고, 정원규모별로도 규모가 적을수록 평가인증 점수가 높다.

2015년은 전체 평균이 97.06점으로 전년도보다 1.5점 정도 상승하였다. 시설유형 및 정원규모별 차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나, 평가인증 점수가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이 97.53점, 민간이 96.58점으로 가정이 유의하게 높고, 정원규모가 적을수록 평가인증 점수가 높다. 20인 이하 97.53점에서

98인 이상 96.73점까지 분포한다(표 III-2-4 참조).

〈표 III-2-4〉 공공형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 2014~2015 선정점수

단위: 점(개소)

구분	2014년					2015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전체	95.52	2.63	90.00	99.69	(205)	97.06	2.09	90.28	99.74	(266)
시설유형										
가정	96.90	2.07	91.49	99.61	( 41)	97.53	1.80	92.21	99.67	(135)
민간	95.18	2.65	90.00	99.69	(164)	96.58	2.25	90.28	99.74	(131)
<i>t</i>	4.5**					3.8**				
정원규모										
20인 이하	96.90	2.07	91.49	99.61	( 41)	97.53	1.80	92.21	99.67	(135)
21~50인 미만	96.36	2.31	91.55	99.69	( 37)	96.92	2.31	90.28	99.74	( 51)
50~77인 미만	95.07	2.74	90.22	98.62	( 31)	96.30	2.64	91.31	99.34	( 22)
77~98인 미만	94.79	2.61	90.40	99.02	( 38)	96.22	2.00	90.44	99.64	( 41)
98인 이상	94.74	2.67	90.00	99.69	( 58)	96.73	2.15	90.33	99.43	( 17)
<i>F</i>	6.7**					4.5**				

자료: 보건복지부(2015d).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  $p < .01$ , \*\*\*  $p < .001$

### 3) 1급 보육교사

〈표 III-2-5〉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기별 1급 보육교사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와 같이 1급 보육교사 비율이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함을 알 수 있다.

〈표 III-2-5〉 1급 보육교사 비율: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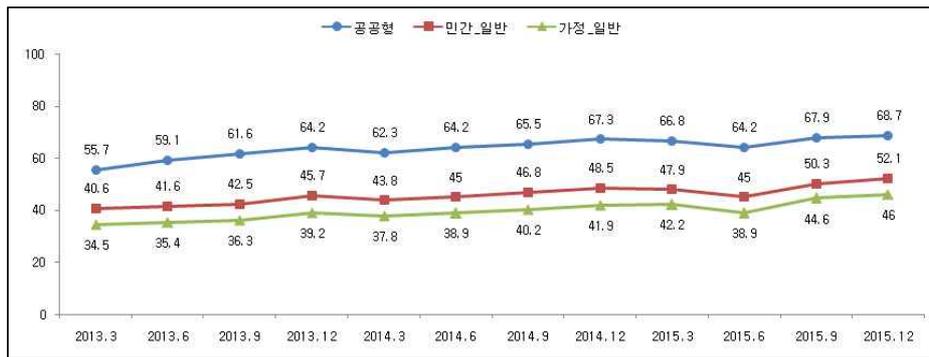
단위: %(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공공형 전체	55.7	59.1	61.6	64.2	62.3	64.2	65.5	67.3	66.8	64.2	67.9	68.7
대도시	54.8	58.0	61.9	65.2	64.5	65.5	67.4	69.0	68.2	65.5	69.5	70.7
중소도시	56.7	61.8	64.6	67.2	64.8	67.1	68.1	70.0	70.2	67.1	71.0	71.4
읍면지역	55.3	57.0	57.9	60.0	57.7	59.8	61.2	62.8	62.1	59.8	63.4	64.2
(수)	(773)	(1,091)	(1,392)	(1,484)	(1,460)	(1,538)	(1,589)	(1,621)	(1,598)	(1,538)	(1,801)	(1,789)
전체	39.7	40.8	41.9	44.9	43.1	44.4	45.9	47.5	47.2	44.4	49.7	51.2
국공립	60.9	62.3	63.3	64.4	61.1	62.5	63.6	64.9	61.9	62.5	64.2	65.5
민간_일반	40.6	41.6	42.5	45.7	43.8	45.0	46.8	48.5	47.9	45.0	50.3	52.1
가정_일반	34.5	35.4	36.3	39.2	37.8	38.9	40.2	41.9	42.2	38.9	44.6	46.0

주: 전체 1급보육교사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2013c, 2014d, 2015e). 월별 어린이집 일람현황 내부자료.

이는 정원충족률이 개선됨에 따라 보육교사 채용이 늘어나게 되고, 채용 과정에서 1급 보육교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3년 3월에는 55.7% 정도이었으나 같은 해 12월 64.2%까지 상승하였고, 2014년과 2015년도 67~68%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규모 및 시설유형 간의 차이는 앞서 살펴본 정원충족률과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낸다.



[그림 III-2-4] 공공형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1급 보육교사 비율: 2013~2015

#### 4) 대표자와 원장 동일 여부

공공형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 동일 비율은 2013년 3월 79.8%에서 이후 87%까지 상승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의 대표자와 원장 동일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도시, 읍면지역 순이다.

<표 III-2-6> 대표자와 원장 동일 비율

단위: %(개소)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공공형 전체	79.8	83.2	84.3	84.8	84.5	84.8	84.6	84.6	84.9	85.1	87.0	86.9
대도시	79.7	82.8	82.9	84.2	84.6	84.6	84.4	84.8	84.7	84.6	87.6	87.4
중소도시	80.4	83.3	85.8	85.2	84.7	85.6	85.4	85.7	86.7	86.7	88.6	88.4
읍면지역	79.2	83.5	83.6	84.7	84.1	83.9	83.8	83.2	83.1	83.8	84.7	85.0
(수)	(773)	(1,091)	(1,392)	(1,484)	(1,461)	(1,541)	(1,589)	(1,624)	(1,598)	(1,573)	(1,801)	(1,789)
전체	68.0	68.5	68.9	69.3	69.6	69.9	69.9	69.9	69.9	69.9	70.0	69.9
국공립	46.7	46.7	46.9	46.9	47.2	46.9	46.8	46.7	47.0	47.1	47.4	47.5
민간_일반	61.6	62.0	62.5	62.8	62.1	62.5	62.6	62.6	62.9	63.2	63.4	65.2
가정_일반	78.9	79.5	80.1	80.7	81.1	81.5	81.6	81.7	81.9	82.0	82.0	82.3

자료: 보건복지부(2013c, 2014d, 2015e). 월별 어린이집 일람현황 내부자료.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과 비교하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대표자와 원장 동일 비율이 60% 선으로 공공형어린이집보다 월등히 낮다. 가정어린이집은 민간보다 높은 80% 내외 정도이나 공공형어린이집보다는 낮다(표 III-2-6 참조).

### 5) 취약보육서비스

다음으로 취약보육 서비스의 운영률을 살펴보면, 공공형어린이집은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보다 우위에 있으나, 국공립보다는 저조하다. 취약보육서비스 중 시간연장형보육을 보면, 국공립은 60%를 상회하나, 공공형 가정은 40%대, 공공형 민간은 35% 내외로 차이를 보인다(표 III-2-7 참조).

〈표 III-2-7〉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현황

구분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장애아 통합	방과후 전담	방과후 통합	시간 연장형	휴일 보육	단위: %(개소)	
								24시간	계(수)
2013년									
국공립	2.2	1.5	23.9	1.0	1.3	63.2	4.6	2.6	100.0( 2,732)
민간	1.9	0.2	0.9	0.1	0.5	16.1	0.4	0.6	100.0(13,279)
가정	0.2	-	0.1	-	-	16.0	0.2	0.4	100.0(20,644)
공공형_민간	-	-	-	-	2.0	35.2	1.2	0.3	100.0( 1,152)
공공형_가정	-	-	-	-	-	41.1	0.7	0.5	100.0( 603)
2014년									
국공립	2.3	1.5	24.3	1.0	1.9	64.6	4.8	2.8	100.0( 2,489)
민간	2.0	0.2	0.9	0.2	0.6	16.4	0.4	0.7	100.0(13,737)
가정	0.2	-	0.1	-	-	15.5	0.1	0.4	100.0(22,790)
공공형_민간	-	-	3.4	-	2.3	34.1	0.9	0.3	100.0( 1,085)
공공형_가정	-	-	-	-	-	40.2	0.6	0.4	100.0( 528)
2015년									
국공립	2.2	1.5	24.4	1.0	1.5	64.4	4.8	2.7	100.0( 2,629)
민간	2.0	0.2	0.9	0.1	0.5	16.1	0.4	0.6	100.0(13,463)
가정	0.2	-	0.1	-	-	15.8	0.2	0.4	100.0(21,460)
공공형_민간	-	-	3.4	-	2.1	35.9	1.2	0.3	100.0( 1,163)
공공형_가정	-	-	-	-	-	40.4	0.7	0.5	100.0( 614)

주: 각 년도 12월 말 자료를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2013c, 2014d, 2015e). 월별 어린이집 일람현황 내부자료.

누리과정 보조교사 수를 보면, 공공형 민간어린이집은 1개소당 평균 0.5~0.6명 정도로 국공립어린이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1개소당 평균 0.2~0.3명 정도인 일반 민간어린이집보다 높다(표 III-2-8 참조).

〈표 III-2-8〉 누리과정 보조교사 수

단위: 명(개소)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공공형_민간	공공형_가정	전체
2013년						
평균	0.55	0.26	0.00	0.51	0.00	0.15
(수)	(2,313)	(13,744)	(23,059)	(955)	(518)	(43,637)
2014년						
평균	0.63	0.32	0.00	0.66	0.00	0.19
(수)	(2,464)	(13,690)	(22,729)	(1,085)	(527)	(43,603)
2015년						
평균	0.66	0.32	0.00	0.64	0.00	0.20
(수)	(2,604)	(13,425)	(21,404)	(1,163)	(614)	(42,392)

주: 각 년도 12월 말 자료를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2013c, 2014d, 2015e). 월별 어린이집 일람현황 내부자료.

### 3. 소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및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당시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항목에서 -2점 감점을 받은 비율은 43.2%로 절반 가까이 된다. 이는 보육료 대비 5% 미만이다. 10% 미만도 15%로 많았다.

둘째,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교사 30% 이상에서 0점을 받은 어린이집 32%나 된다. 특히 대도시 소재, 21~49인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0점을 받은 비율이 높았다.

셋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취약보육서비스 운영률을 높이고,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선정점수에서 1개 운영시 부여받는 2점이 43.2%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어린이집 운영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부분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담임교사 급여를 공공형어린이집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는지 관리가 필요하다. 선정점수에서 1점 미만이 48.5%, 1~199점 19.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섯째, 정원충족률 및 1급 보육교사 비율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들 지표는 월 및 년도별로 차이를 보이므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 IV.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 개발

제4장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개발 방향과 구성, 즉, 영역 및 영역별 세부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 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개요

#### 가. 개발 방향

첫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은 공공형어린이집이 공보육 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이다. 따라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 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즉,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을 선별하여 운영·관리기준에 포함시켰다.

둘째, 어린이집은 공공형 선정 이후에도 선정 당시의 보육서비스 질 수준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정 당시보다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질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공형어린이집이 선정 및 운영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가점, 그 이하일 경우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배점체계를 마련하였다.

셋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 외에 정부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평가인증, 부모모니터링, 지도점검 등의 지표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표를 추출하여 운영관리 기준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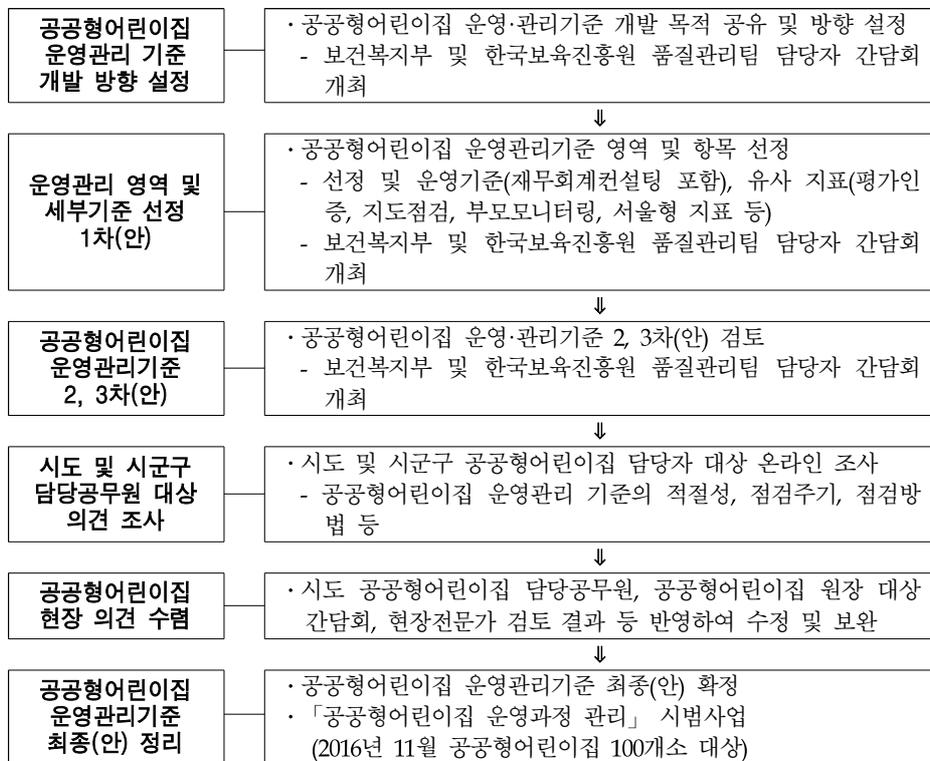
넷째, 건강·영양, 안전 영역의 질 개선을 위해 관련 지표를 포함시켰다. 최근 어린이집 내에서의 건강·영양, 안전 등과 관련한 사건사고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지표는 공공형 선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표에 포함시켰다.

다섯째, 2016년 7월부터 맞춤형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이 공보육기관으로서 제도 안착에 앞장서야 한다. 따라서 맞춤형보육 관련 기준(운영시간이나 관련 민원 발생 등)을 운영·관리기준에 포함시켰다.

여섯째, 2015년 1월 아동학대 사건 이후로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 부모만족도 등 운영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를 포함시켰다.

### 나. 개발 절차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단계별 개발 절차 및 방법은 [그림 IV-1-1]과 같다.



[그림 IV-1-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개발 절차

첫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개발을 위하여 연구진,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한국보육진흥원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팀 등으로 구성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개발 목적 및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성요소(영역 및 세부기준), 운영체계 등의 개발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 재무회계컨설팅, 유사 지표(평가인증,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 서울형 지표 등) 등을 검토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영역 및 항목, 세부기준 등(7개 영역, 30개 항목)을 선정하여 1차(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육진흥원 품질관리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관리기준 1차(안)을 수정 보완하였다.

넷째, 시도 및 시군구 공공형어린이집 담당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보건복지부 및 시도 공공형어린이집 담당공무원, 한국보육진흥원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팀 담당자,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등과의 간담회, 현장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기준을 수정·보완하였다.

여섯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 다. 구성

### 1) 개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안)은 기본 항목과 재정관리, 보육교직원 관리, 맞춤형보육, 안전관리, 건강·위생관리, 열린 운영 등 7개 영역, 3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4개 항목 중 가점 기준은 27개, 감점 기준은 20개로 가점을 부여한 세부기준이 더 많다.

영역별 항목 및 가·감점 기준은 <표 IV-1-1>과 같다. 기본 항목은 2개 항목, 2개 세부기준(가점 2개)이고, 재정관리는 7개 항목, 10개 세부기준(가점 5개, 감점 5개), 보육교직원 관리는 8개 항목, 11개 세부기준(가점 6개, 감점 5개), 맞춤형보육은 5개 항목, 7개 세부기준(가점 3개, 감점 4개), 건강·위생관리는 3개 항목, 세부기준 6개(가점 4개, 감점 2개), 안전관리는 6개 항목, 8개 세부기준(가점 5개, 감점 3개), 열린 운영은 3개 항목, 3개 세부기준(가점 2개, 감점 1개)으로 구성하였다.

〈표 IV-1-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개요

영역	항목	가점	감점
1. 기본 항목(2)	정원충족률 평가인증 점수	2	-
2. 재정관리(7)	월 임대료·용자금 상환액 비율 기타 운영비 비율 보육료 추가 수납 급식비 아동 1인당 적정수준 담임보육교사 급여 지급기준 준수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비 수납 여부 재무회계 컨설팅 또는 소그룹 참여 여부	5	5
3. 보육교직원 관리(8)	1급 보육교사 비율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교사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최근 3년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자 대표자 변경 원장 변경 여부 공공형 사후품질 관리 교육 참여 공모전 참여 및 수상	6	5
4. 맞춤보육(5)	취약서비스 운영 맞벌이자녀 재원율 맞춤형보육 운영시간 준수 여부 부모만족도 조사 맞춤형보육 관련 민원 발생	3	4
5. 건강·위생관리(3)	석면조사 실내공기질 측정 및 유지기준 준수 여부 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4	2
6. 안전관리(6)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비상재해대비시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여부 아동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통학차량 정기점검 차량기사 안전교육	5	3
7. 열린 운영(3)	부모모니터링 참여 열린어린이집 선정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2	1
계	33	27	20

## 2) 기본 항목

기본 항목은 정원충족률과 평가인증 점수 2개 항목을 배치하였다. 정원충족률과 평가인증 점수는 공공형어린이집 참여기본 요건 중 하나로 보육서비스의 질과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참여 기본요건으로 정원충족률은 평균 80% 이상 유지, 평가인증 점수는 90점 이상을 요구한다(표 II-1-1 참조). 그러나 정원충족률과 평가인증 점수는 공공형어린이집 공인기간 중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지속적인 관리

가 필요하다.

앞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표 III-2-3 참조), 역 및 월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나 평균 85~90%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원충족률이 참여 기본요건보다 5%p 높은 평균 85% 이상(농어촌 5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도록 구성하였다.

참여 기본요건 중 하나인 평가인증은 90.00점 이상이어야 하고, 공공형 운영 중에는 평가인증 점수가 90점(3차 지표 85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평가인증 점수를 분석한 결과, 2014년에는 전체 평균이 95.52 점이고, 가정이 평균 96.90점, 민간이 평균 95.18점이었다. 2015년 선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점수가 전체 평균 97.06점이고, 가정 평균 97.53점, 민간 평균 96.58점이었다(표 III-2-4 참조). 즉, 공공형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전체 평균 95점 정도이므로 이를 상회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구성하였다. 가점은 95~97 점 미만, 97~99점 미만, 99점 이상 등으로 구간별로 점수를 차등 배점하였다.

〈표 IV-1-2〉 기본항목

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검 주기 (연/반기/분기/월)	점검 방법 (시스템/현장점검)
		가점	감점		
1)정원충족률	연평균 정원충족률 85% 이상(농어촌 55% 이상)	○			
2)평가인증 점수	평가인증 95점 이상 차등 배점 - 95~98점 미만 - 98점 이상	○			

### 3) 재정 관리

어린이집의 재정 건정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가 어린이집의 월 임대료 및 용자금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에서 보육료 대비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비율을 감점 항목에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이 벤치마킹한 서울형어린이집도 어린이집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타운영비 비율,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비 미수납 등을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보육료 추가 수납과 담임보육교사 급여기준 미준수 항목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1개월 추가 수납에 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치한 경우에는 공공형이 유

지된다.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서 공공형이 유지되어도 보육료 추가 수납 사례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감점 항목에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한국보육진흥원은 공공형어린이집의 건전하고 체계적인 재무회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회계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재무회계 컨설팅은, 공공형 운영 1-3년차 어린이집은 의무 참여이나 공공형 운영 4년차 이상 어린이집은 희망하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이 재무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적인 재무회계 컨설팅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점 항목에 배치하였다.

〈표 IV-1-3〉 재정관리

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검주기 (연/반기/ 분기/월)	점검방법 (시스템/ 현장점검)
		가점	감점		
1)월 임대료·융자금 상환액 비율	월 임대료·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			
	월 임대료·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		
2)기타 운영비 비율	보육료 수입의 10% 미만	○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		
3)보육료 추가 수납	보육료 추가 수납 1개월에 따른 시정 명령 1회		○		
4)급식비 아동 1인당 적정수준	아동 1인당 2,000원 이상	○			
	아동 1인당 1,750원 미만		○		
3)담임보육교사 급여 지급기준 준수	담임보육교사 국공립 1호봉 이상 미지급에 따른 시정명령 1회		○		
5)특별활동비 및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비 미수납	○			
6)재무회계 컨설팅 또는 소그룹	재무회계 컨설팅 또는 소그룹 1회 이상 참여	○			

#### 4) 보육교직원 관리

최근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보육교직원 교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보육교사는 보육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므로 보육교사의 자격이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재교육과 근속기간은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보육교직원 관련 지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항목을 구성하였다.

특히 1급 보육교사 비율은 <표 III-2-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평균이 55~70% 선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 평균 70% 이상인 경우 가점을 주고, 선정기준이 60% 미만인 경우에는 감점을 부여하도록 구성하였다.

원장 변경사항은 2013년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제외된 지표이다. 원장 변경 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원장 재직경력, 원장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 3년 이상,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원장,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등 4개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원장 변경 지표로 최소화하였다.

이 외에 공공형 사후품질 관리교육 참여, 공모전 참여 및 수상 등의 지표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표에 포함시켰다. 공공형 사후품질 관리교육의 경우, 원장 교육은 의무이나 교사교육은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다.

<표 IV-1-4> 보육교직원 관리

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검 주기 (연/반기/ 분기/월)	점검 방법 (시스템/ 현장점검)
		가점	감점		
1)1급 보육교사 비율	70%이상 유지(농어촌 60%이상)	○			
	60% 미만(농어촌 50% 미만)		○		
2)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무교사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무한 교사 30% 이상	○			
3)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준수	○			
4)최근 3년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자	최근 3년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 이상		○		
5)대표자 변경	대표자 변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변경으로 공공형 유지된 경우)		○		
6)원장 변경 여부	원장 변경		○		
7)공공형 사후품질 관리 교육 참여	원장 의무교육 1회 이상 미참여		○		
	전체 교사의 10% 이상 교사교육 참여	○			
8)공모전 참여 및 수상	공모전 참여	○			
	공모전 수상(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 공공기관 주최 공모전)	○			

## 5) 맞춤보육

공공성 연구(양미선·정주영·임지희, 2013)에 의하면, 어린이집이 보편성 확보

를 위해 취약보육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표 III-2-7>과 같이, 공공형어린이집의 취약보육서비스 운영률은 시간연장보육의 경우 공공형 민간이 35.2%, 공공형 가정이 41.1%로 국공립어린이집 63.2%에 크게 못 미친다. 장애아전담이나 장애아통합은 국공립이 23.9%인데 반해 공공형 민간은 3.3%로 소수이고, 공공형 가정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전무하다. 공공형어린이집이 최근 정부의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정기준을 동일하게 운영관리기준에도 포함시켰다.

2016년부터 맞춤형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이 공보육 기관으로서 제도 안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맞춤형보육 운영시간 준수와 민원 발생 관련 항목을 감점 항목에 포함시켰다.

<표 IV-1-5> 맞춤형보육

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검 주기 (연/반기/분기/월)	점검 방법 (시스템/현장점검)
		가점	감점		
1)취약서비스 운영	장애아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서비스유형별 배점	○			
2)맞벌이자녀 재원율	맞벌이 자녀 60%이상(농어촌50%이상) 맞벌이 자녀 50%미만(농어촌40%미만)	○			
3)맞춤형보육 운영시간 준수 여부	맞춤반(9:00~15:00, 10:00~16:00) 미준수 중일반(7:30~19:30) 미준수		○		
4)맞춤형보육 관련 민원 발생	맞춤형보육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		○		
5)부모만족도 조사	어린이집 주관 부모만족도 조사 정기 실시	○			

### 6) 건강·위생관리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6a)에서는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개선과 어린이집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b).

석면조사는 선도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실내공기질 측정은 지도점검 항목과

선도형어린이집 선정기준, 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은 부모모니터링 지표를 참고하여 운영관리 기준에 포함시켰다.

〈표 IV-1-6〉 건강·위생관리

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검주기 (연/반기/ 분기/월)	점검방법 (시스템/ 현장점검)
		가점	감점		
1)석면조사	면제시설 실시 및 기준 준수	○			
	의무대상시설 미실시, 기준 미준수		○		
2)실내공기질 측정 및 유지기준 준수 여부	미대상 시설 실시 및 유지기준 준수	○			
	의무대상 시설 미실시 또는 유지기준 미준수		○		
3)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아동 1명이상 건강검진(연1회) 미실시		○		
	보육교직원 1명 이상 건강검진(연 1회) 미실시		○		

## 7) 안전관리

공공형어린이집 기본 신청자격으로 놀이터 구비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운영 기준에도 제외되어 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놀이터 및 놀이시설과 비상재해대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운영·관리기준에 포함시켰다. 서울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의 경우, 비상재해 대비시설에 대해 현행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였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유지 기준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유아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매년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도 전환 시 보험 가입기간을 경과하여 미가입 상태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 외에 아동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과 통학차량 정기점검은 부모모니터링 지표를 참고하였다.

〈표 IV-1-7〉 안전관리 구성

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검 주기 (연/반기/분기/월)	점검 방법 (시스템/현장점검)
		가점	감점		
1)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놀이터·놀이시설 안전점검 정기 실시	○			
	놀이터·놀이시설 안전점검 부적격 판정 후 조치	○			
2) 비상재해대비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준수	○			
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여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미가입		○		
4) 아동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정기 실시	○			
	소방대피훈련 월 1회 정기 실시	○			
5) 통학차량 정기점검	통학차량 정기점검 미실시		○		
6) 차량기사 안전교육	차량기사 안전교육 미실시		○		

8) 열린 운영

2015년 1월 발생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2013년부터 운영하는 부모모니터링, 2015년 열린어린이집 사업을 들 수 있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2015년 아동학대 사건 이후 연 2회에서 연 4회 의무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을 연구한 양미선 외(2013)는 어린이집 운영의 참여성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기적인 운영, 부모 및 지역사회 전문 인력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부모모니터링 관련 연구(양미선 외, 2015)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의 부모모니터링 참여율은 2013년 37%에서 2014년 62.1% 상승하였다.

〈표 IV-1-8〉 열린 운영

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검 주기 (연/반기/분기/월)	점검 방법 (시스템/현장점검)
		가점	감점		
1) 부모모니터링	부모모니터링 참여	○			
2) 열린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선정	○			
3)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기준(연4회 이상) 미준수		○		

공공형어린이집이 부모, 가족, 지역사회 등과 어린이집 운영의 동반자, 협력자로 관계를 맺고,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이나 열린어린이집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 항목을 가점으로 설정하였다. 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연 4회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감점 항목에 배치하였다.

## 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2절은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담당하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관리기준(안)의 항목 및 세부기준의 적절성 및 점검주기, 점검방법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가. 기본 항목

#### 1) 운영관리 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및 방법

##### 가) 개요

정원충족률과 평가인증 점수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으로 적절한지 조사한 결과는 <표 IV-2-1>과 같다. 정원충족률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85.1% 평가인증은 91.5%이다.

정원충족률과 평가인증을 운영관리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점검주기로 정원충족률은 연 46.8%, 반기 38.3% 순이고, 평가인증은 연 단위가 67.4%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점검방법은 정원충족률과 평가인증 모두 시스템이 80%를 상회하였다.

<표 IV-2-1> 기본 항목 개요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정원충족률	66.0	19.1	3.0	46.8	38.3	14.9	-	86.5	13.5	(141)
평가인증	58.2	33.3	3.2	67.4	23.4	9.2	-	80.1	19.9	(1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단위: %(명), 점

나) 정원충족률

정원충족률의 적절성에 대해 대도시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점검 주기는 도시지역의 경우 연 단위가 50%대를 차지하는 반면, 읍면지역은 반기가 50% 정도로 높아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점검방법에 대해서는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시스템을 선택하였다(표 IV-2-2 참조).

〈표 IV-2-2〉 정원충족률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6.0	19.1	3.0	46.8	38.3	14.9	-	86.5	13.5	(141)
대도시	77.1	22.9	3.2	54.3	31.4	14.3	-	94.3	5.7	( 35)
중소도시	58.2	20.0	2.9	56.4	32.7	10.9	-	83.6	16.4	( 55)
읍면지역	66.7	15.7	3.0	31.4	49.0	19.6	-	84.3	15.7	( 51)
X <sup>2</sup> (df)/F			- 2.6	7.9(4)				2.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다) 평가인증

평가인증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다수를 차지하며, 점검방법은 도시지역일수록 시스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표 IV-2-3 참조).

〈표 IV-2-3〉 평가인증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58.2	33.3	3.2	67.4	23.4	9.2	-	80.1	19.9	(141)
대도시	60.0	34.3	3.3	68.6	14.3	17.1	-	91.4	8.6	( 35)
중소도시	56.4	32.7	3.2	74.5	20.0	5.5	-	81.8	18.2	( 55)
읍면지역	58.8	33.3	3.2	58.8	33.3	7.8	-	70.6	29.4	( 51)
X <sup>2</sup> (df)/F			- 0.3	-				5.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2) 배점기준의 적절성

정원충족률이 85% 이상을 유지할 경우 가점을 주는 안에 대해 85.1%가 적절하다고 하였고, 적절성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3.0점이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공형어린이집 유지기간 동안 평가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 평가인증 점수가 95점 이상 시 차등 배점하여 가점을 주는 배점기준에 대해 87.2%가 적절하다고 보았고, 적절성 점수는 4점 평균 3.0점이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담당자들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적절성 점수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표 IV-2-4〉 정원충족률 및 평가인증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가점)정원충족률 85%이상 (농어촌 55% 이상)					(가점)평가인증 95점 이상 차등배점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0.7	14.2	70.9	14.2	3.0	0.7	12.1	72.3	14.9	3.0	100.0(141)
대도시	-	11.4	77.1	11.4	3.0	-	11.4	74.3	14.3	3.0	100.0( 35)
중소도시	-	20.0	63.6	16.4	3.0	-	18.2	65.5	16.4	3.0	100.0( 55)
읍면지역	2.0	9.8	74.5	13.7	3.0	2.0	5.9	78.4	13.7	3.0	100.0( 51)
$X^2(df)/F$			-		0.1			-		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나. 재정관리

### 1) 운영관리 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및 방법

#### 가) 개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재정관리 기준의 적절성과 점검주기,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2-5>와 같다.

보육료 대비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비율 등 7개 항목 중 담임 보육교사의 급여 기준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94.3%로 높고, 기타 운영비가 91.5%, 월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비율 87.3%, 아동 1인당 급간식비 86.6%, 나머지는 85% 이하 이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다빈도이나 기타운영비와 보육료 추가 수납은 연과 반기가 각각 40% 내외로 차이가 크지 않다. 점검방법도 시스템이 현장점검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지만 아동 1인당 급간식비와 담임보육교사 급여기준, 특별활동비특성화비 수납 등은 시스템과 현장점검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IV-2-5〉 재정관리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 점검	
월임대료 용자금 상환액 비율	73.8	13.5	3.0	48.9	34.8	13.5	2.8	70.9	29.1	(141)
기타운영비	80.9	10.6	3.0	44.0	40.4	12.1	3.5	70.9	29.1	(141)
보육료 추가 수납	64.5	19.9	3.0	41.1	39.0	12.8	7.1	66.0	34.0	(141)
아동 1인당 급간식비	66.0	20.6	3.1	38.3	33.3	21.3	7.1	59.6	40.4	(141)
담임보육교사 급여 기준	62.4	31.9	3.3	43.3	28.4	19.9	8.5	59.6	40.4	(141)
특별활동비특성화비 수납	64.5	19.1	3.0	41.8	31.2	20.6	6.4	61.0	39.0	(141)
재무회계컨설팅소그룹 참여	68.8	15.6	3.0	51.1	31.9	14.9	2.1	65.2	34.8	(1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나)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비율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이 운영관리기준으로 적절하다 응답은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았다. 적절성 점수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다빈도를 차지하나, 대도시는 연과 반기가 각각 42.9%, 40.0%로 비슷하다. 점검방법도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시스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표 IV-2-6 참조).

〈표 IV-2-6〉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비율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 점검	
전체	73.8	13.5	3.0	48.9	34.8	13.5	2.8	70.9	29.1	(141)
대도시	77.1	8.6	2.9	42.9	40.0	14.3	2.9	68.6	31.4	( 35)
중소도시	67.3	16.4	3.0	56.4	30.9	9.1	3.6	65.5	34.5	( 55)
읍면지역	78.4	13.7	3.0	45.1	35.3	17.6	2.0	78.4	21.6	( 51)
$X^2(df)/F$	-	-	0.5	-	-	-	-	2.3(2)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다) 기타운영비 비율

기타운영비 비율이 적절하다는 비율도 읍면지역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적절성 점수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점검주기는 연과 반기가 적절하다는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대도시는 연과 반기가 각각 40%로 동일하고, 읍면지역은 반기가 연 단위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점검방법으로 시스템이 다

빈도이나 대도시의 경우 시스템과 현장점검이 각각 60%, 40%로 현장점검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V-2-7 참조).

〈표 IV-2-7〉 기타운영비 비율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80.9	10.6	3.0	44.0	40.4	12.1	3.5	70.9	29.1	(141)
대도시	80.0	8.6	3.0	40.0	40.0	17.1	2.9	60.0	40.0	( 35)
중소도시	80.0	9.1	3.0	54.5	34.5	7.3	3.6	72.7	27.3	( 55)
읍면지역	82.4	13.7	3.1	35.3	47.1	13.7	3.9	76.5	23.5	( 51)
X <sup>2</sup> (df)/F	0.8			-				2.9(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라) 보육료 추가 수납

보육료 추가 수납 여부가 적절하다는 비율은 읍면지역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적절성 점수는 유의하지 않다. 점검주기는 도시지역은 연 단위, 읍면지역은 반기가 높았다. 점검방법의 경우, 대도시는 현장점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V-2-8 참조).

〈표 IV-2-8〉 보육료 추가 수납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4.5	19.9	3.0	41.1	39.0	12.8	7.1	66.0	34.0	(141)
대도시	65.7	14.3	2.9	40.0	34.3	17.1	8.6	51.4	48.6	( 35)
중소도시	61.8	20.0	3.0	47.3	38.2	9.1	5.5	69.1	30.9	( 55)
읍면지역	66.7	23.5	3.1	35.3	43.1	13.7	7.8	72.5	27.5	( 51)
X <sup>2</sup> (df)/F	-			1.4				4.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마)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수준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적절성 점수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점검주기는 연과 반기가 30~40%대로 차이가 크지 않으나 다른 항목과 달리 분기가 20%대로 높았다. 점검방법은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시스템이 다빈도이나, 대도시에는 시스템과 현장점검이 각각 51.4%, 48.6%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표 IV-2-9 참조).

〈표 IV-2-9〉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수준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6.0	20.6	3.1	38.3	33.3	21.3	7.1	59.6	40.4	(141)
대도시	65.7	17.1	3.0	34.3	34.3	25.7	5.7	51.4	48.6	( 35)
중소도시	63.6	18.2	3.0	47.3	32.7	12.7	7.3	60.0	40.0	( 55)
읍면지역	68.6	25.5	3.2	31.4	33.3	27.5	7.8	64.7	35.3	( 51)
X <sup>2</sup> (df)/F	-		2.0	-				1.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바) 담임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기준 미준수는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시정 조치한 경우에는 공공형이 유지된다.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읍면지역일수록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단, 적절성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점검 주기는 연 단위가 다빈도이나 대도시는 반기와 분기가 각각 30% 정도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점검방법은 시스템이 현장점검보다 다소 높고, 특히 대도시는 타 지역과 달리 현장점검이 시스템보다 높았다(표 IV-2-10 참조).

〈표 IV-2-10〉 담임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준수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2.4	31.9	3.3	43.3	28.4	19.9	8.5	59.6	40.4	(141)
대도시	71.4	20.0	3.1	40.0	28.6	28.6	2.9	45.7	54.3	( 35)
중소도시	60.0	34.5	3.3	47.3	29.1	14.5	9.1	61.8	38.2	( 55)
읍면지역	58.8	37.3	3.3	41.2	27.5	19.6	11.8	66.7	33.3	( 51)
X <sup>2</sup> (df)/F	-		1.4					4.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사)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비 수납 여부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비 수납여부 관리가 적절하다는 비율은 읍면지역이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나 적절성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점검 주기는 연 단위가 반기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인다. 특히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반기와 분기가 각각 20~30% 사이로 높은 편이다. 점검방법은 대도시는 현장점검이 시스템보다 다소 높았다(표 IV-2-11 참조).

〈표 IV-2-11〉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비 수납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4.5	19.1	3.0	41.8	31.2	20.6	6.4	61.0	39.0	(141)
대도시	60.0	20.0	3.0	40.0	28.6	25.7	5.7	48.6	51.4	( 35)
중소도시	60.0	18.2	2.9	49.1	34.5	9.1	7.3	63.6	36.4	( 55)
읍면지역	72.5	19.6	3.1	35.3	29.4	29.4	5.9	66.7	33.3	( 51)
X <sup>2</sup> (df)/F	-		1.1					3.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아) 재무회계 컨설팅 또는 소그룹

재무회계 컨설팅 또는 소그룹 참여 여부가 관리기준으로서 적절하다는 비율은 읍면지역이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나 큰 차이는 아니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다빈도를 나타내지만 반기도 30%대로 높았다. 점검방법은 시스템이 현장점검보다 우세하지만, 대도시는 현장점검 방법도 40%대의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표 IV-2-12 참조).

〈표 IV-2-12〉 재무회계 컨설팅 또는 소그룹 참여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8.8	15.6	3.0	51.1	31.9	14.9	2.1	65.2	34.8	(141)
대도시	71.4	14.3	3.0	45.7	31.4	20.0	2.9	57.1	42.9	( 35)
중소도시	63.6	16.4	2.9	56.4	32.7	9.1	1.8	67.3	32.7	( 55)
읍면지역	72.5	15.7	3.0	49.0	31.4	17.6	2.0	68.6	31.4	( 51)
X <sup>2</sup> (df)/F	-		0.4					1.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2) 배점기준의 적절성

### 가)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을 관리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그 비율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일 경우에는 가점을 주고, 10% 이상인 경우에는 감점을 주는 기준에 대해 전자는 적절하다는 비율이 87.2%, 후자는 88%이다.

보육료 수입의 5% 미만에 가점을 주는 기준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은 읍면지역이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일 경우 감점을

주는 기준은 읍면지역일수록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또한 전자와 후자 모두 적절성 점수에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표 IV-2-13 참조).

〈표 IV-2-13〉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비율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가점)보육료 수입의 5% 미만					(감점)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	12.8	78.0	9.2	3.0	0.7	11.3	73.8	14.2	3.0	100.0(141)
대도시	-	11.4	80.0	8.6	3.0	-	20.0	65.7	14.3	2.9	100.0( 35)
중소도시	-	18.2	72.7	9.1	2.9	-	10.9	72.7	16.4	3.1	100.0( 55)
읍면지역	-	7.8	82.4	9.8	3.0	2.0	5.9	80.4	11.8	3.0	100.0( 51)
X <sup>2</sup> (df)/F					0.7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나) 기타운영비 비율

기타운영비 비율이 보육료 수입의 10% 미만인 경우 가점을 주고, 15% 이상인 경우 감점을 주는 기준에 대해 각각 88%, 88.6%가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전자와 후자 모두 읍면지역일수록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적절성 점수는 감점을 주는 항목에 대해서만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유의하게 높았다(표 IV-2-14 참조).

〈표 IV-2-14〉 기타 운영비 비율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가점)보육료 수입의 10% 미만					(감점)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0.7	11.3	80.9	7.1	2.9	1.4	9.9	77.3	11.3	3.0	100.0(141)
대도시	-	17.1	77.1	5.7	2.9	-	17.1	71.4	11.4	2.9	100.0( 35)
중소도시	1.8	12.7	78.2	7.3	2.9	3.6	10.9	80.0	5.5	2.9	100.0( 55)
읍면지역	-	5.9	86.3	7.8	3.0	-	3.9	78.4	17.6	3.1	100.0( 51)
X <sup>2</sup> (df)/F					1.1					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p < .05$

다) 보육료 추가 수납 및 담임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보육료 1개월 추가 수납으로 시정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감점을 주는 기준에 대해 92.9%가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이는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담임 보육교사 국공립 1호봉 이상 미지급으로 시정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감점을 주는 기준에 대해 95.1%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 기준도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90%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전자와 후자 모두 적절성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IV-2-15 참조).

〈표 IV-2-15〉 보육료 추가 수납 및 담임보육교사 급여 지급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감점)보육료 1개월 추가 수납에 따른 시정명령 1회 이상					(감점)담임 보육교사 국공립 1호봉 이상 미지급에 따른 시정명령 1회 이상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0.7	6.4	71.6	21.3	3.1	-	5.0	66.0	29.1	3.2	100.0(141)
대도시	-	8.6	74.3	17.1	3.1	-	8.6	74.3	17.1	3.1	100.0( 35)
중소도시	1.8	5.5	67.3	25.5	3.2	-	5.5	61.8	32.7	3.3	100.0( 55)
읍면지역	-	5.9	74.5	19.6	3.1	-	2.0	64.7	33.3	3.3	100.0( 51)
X <sup>2</sup> (df)/F					0.2					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라) 아동 1인당 급식비 기준

아동 1인당 급식비 2,000원 이상 지출 시 가점을 주고, 1,740원 미만인 경우 감점을 주는 기준에 대해 80.8%, 79.4%가 각각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전자와 후자 모두 읍면지역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적절성 점수는 지역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표 IV-2-16 참조).

〈표 IV-2-16〉 아동 1인당 급식비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가점)아동 1인당 2,000원 이상					(감점)아동 1인당 1,740원 미만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2.1	17.0	63.8	17.0	3.0	1.4	19.1	64.5	14.9	2.9	100.0(141)
대도시	-	22.9	62.9	14.3	2.9	-	22.9	62.9	14.3	2.9	100.0( 35)
중소도시	3.6	16.4	65.5	14.5	2.9	3.6	21.8	63.6	10.9	2.8	100.0( 55)
읍면지역	2.0	13.7	62.7	21.6	3.0	-	13.7	66.7	19.6	3.1	100.0( 51)
X <sup>2</sup> (df)/F					0.6					2.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마)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비, 재무회계 컨설팅 또는 소그룹 참여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비 미수납 시 가점을 주는 기준에 대해 80.2% 정도만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읍면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재무회계 컨설팅 소그룹 1회 이상 참여 시 가점을 주는 기준은 83%가 적절하다고 보았고, 적절성 점수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기준 또한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표 IV-2-17 참조).

〈표 IV-2-17〉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비, 재무회계 컨설팅 또는 소그룹 참여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가점)특별활동비·특성화비 미수납					(가점)재무회계 컨설팅·소그룹 1회 이상 참여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	19.9	66.0	14.2	2.9	2.1	14.9	70.2	12.8	2.9	100.0(141)
대도시	-	20.0	71.4	8.6	2.9	2.9	14.3	65.7	17.1	3.0	100.0( 35)
중소도시	-	27.3	58.2	14.5	2.9	1.8	16.4	69.1	12.7	2.9	100.0( 55)
읍면지역	-	11.8	70.6	17.6	3.1	2.0	13.7	74.5	9.8	2.9	100.0( 51)
X <sup>2</sup> (df)/F	5.2(4)					-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다. 보육교직원 관리

### 1) 운영관리 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및 방법

#### 가) 개요

보육교직원 관리 기준으로 1급 보육교사 비율 등 8개 기준의 적절성과 점검주기, 점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의 적절하다는 비율이 97.9%로 높고, 최근 3년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 97.1%, 공공형 사후품질관리 교육 참여 96.5%, 3년 이상 근속교사 95.7% 순이다. 나머지는 90% 이하이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50~70% 대로 응답비율이 높고, 점검방법도 시스템이 70~90%대로 높다(표 IV-2-18 참조).

#### 나) 1급 보육교사 비율

1급 보육교사 비율이 운영관리기준으로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은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90%대 인데 반해 중소도시는 80%정도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적절성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다빈도이고, 점검방법은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90%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IV-2-19 참조).

〈표 IV-2-18〉 보육교직원 관리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1급 보육교사 비율	65.2	22.0	3.1	56.7	31.2	11.3	0.7	95.0	5.0	(141)
3년 이상 근속교사	64.5	31.2	3.3	58.2	30.5	10.6	0.7	95.0	5.0	(141)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75.9	22.0	3.2	51.8	36.9	9.9	1.4	87.9	12.1	(141)
최근 3년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65.2	31.9	3.3	56.0	33.3	9.9	0.7	81.6	18.4	(141)
대표자 변경	68.8	17.7	3.0	59.6	29.1	9.2	2.1	91.5	8.5	(141)
원장 변경	70.9	17.0	3.0	60.3	28.4	9.2	2.1	92.9	7.1	(141)
공공형 사후품질관리 교육 참여	67.4	29.1	3.2	61.0	29.1	7.1	2.8	77.3	22.7	(141)
공모전 참여 및 수상	62.4	14.2	2.9	70.2	22.7	5.7	1.4	71.6	28.4	(1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표 IV-2-19〉 1급 보육교사 비율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5.2	22.0	3.1	56.7	31.2	11.3	0.7	95.0	5.0	(141)
대도시	74.3	17.1	3.1	51.4	34.3	14.3	-	94.3	5.7	( 35)
중소도시	60.0	21.8	3.0	69.1	27.3	1.8	1.8	96.4	3.6	( 55)
읍면지역	64.7	25.5	3.2	47.1	33.3	19.6	-	94.1	5.9	( 51)
X <sup>2</sup> (df)/F	-	-	0.7	-	-	-	-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다)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 교사 비율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교사 비율은 지역에 상관없이 95% 내외이었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50% 내외, 반기가 30%대에 분포하고, 점검주기는 시스템이 95% 내외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표 IV-2-20 참조).

〈표 IV-2-20〉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 교사 비율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4.5	31.2	3.3	58.2	30.5	10.6	0.7	95.0	5.0	(141)
대도시	68.6	28.6	3.3	54.3	31.4	14.3	-	94.3	5.7	( 35)
중소도시	65.5	29.1	3.2	69.1	27.3	1.8	1.8	96.4	3.6	( 55)
읍면지역	60.8	35.3	3.3	49.0	33.3	17.6	-	94.1	5.9	( 51)
X <sup>2</sup> (df)/F	-	-	0.3	-	-	-	-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라)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준수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준수 여부가 운영관리기준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97.9%가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지역규모별로도 97% 내외로 높다. 따라서 적절성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높지만 반기도 40% 내외, 점검방법은 시스템이 90% 내외로 높다(표 IV-2-21 참조).

〈표 IV-2-21〉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준수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75.9	22.0	3.2	51.8	36.9	9.9	1.4	87.9	12.1	(141)
대도시	74.3	25.7	3.3	42.9	40.0	14.3	2.9	91.4	8.6	( 35)
중소도시	78.2	18.2	3.1	63.6	32.7	1.8	1.8	89.1	10.9	( 55)
읍면지역	74.5	23.5	3.2	45.1	39.2	15.7	-	84.3	15.7	( 51)
X <sup>2</sup> (df)/F	-		0.7	-				1.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마) 최근 3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발생

최근 3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발생의 운영관리기준 적절성에 대해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높지만 적절성 점수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반기보다 높지만 반기도 30%대로 높고, 점검방법은 시스템이 현장점검에 비해 높았다(표 IV-2-22 참조).

〈표 IV-2-22〉 최근 3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발생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5.2	31.9	3.3	56.0	33.3	9.9	0.7	81.6	18.4	(141)
대도시	62.9	37.1	3.4	48.6	37.1	14.3	-	77.1	22.9	( 35)
중소도시	65.5	27.3	3.2	69.1	27.3	1.8	1.8	80.0	20.0	( 55)
읍면지역	66.7	33.3	3.3	47.1	37.3	15.7	-	86.3	13.7	( 51)
X <sup>2</sup> (df)/F	-		1.5	-				1.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바) 대표자 변경

대표자 변경의 적절성에 대해 도시지역일수록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지만 적

적절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다빈도이나 반기도 30~40% 대로 높고, 점검방법은 시스템이 90% 내외로 높았다(표 IV-2-23 참조).

〈표 IV-2-23〉 대표자 변경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8.8	17.7	3.0	59.6	29.1	9.2	2.1	91.5	8.5	(141)
대도시	68.6	20.0	3.1	48.6	40.0	8.6	2.9	97.1	2.9	( 35)
중소도시	67.3	20.0	3.1	67.3	27.3	1.8	3.6	92.7	7.3	( 55)
읍면지역	70.6	13.7	3.0	58.8	23.5	17.6	-	86.3	13.7	( 51)
X <sup>2</sup> (df)/F	-		0.4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사) 원장 변경

원장 변경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읍면지역이 타 지역보다 높지만 적절성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다수를 차지하고, 시스템을 점검방법으로 지정한 비율은 90% 이상으로 높았다(표 IV-2-24 참조).

〈표 IV-2-24〉 원장 변경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70.9	17.0	3.0	60.3	28.4	9.2	2.1	92.9	7.1	(141)
대도시	68.6	20.0	3.1	45.7	37.1	14.3	2.9	97.1	2.9	( 35)
중소도시	69.1	16.4	3.0	69.1	25.5	1.8	3.6	94.5	5.5	( 55)
읍면지역	74.5	15.7	3.1	60.8	25.5	13.7	-	88.2	11.8	( 51)
X <sup>2</sup> (df)/F	0.9(4)		0.2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아) 공공형 사후품질관리 교육 참여

공공형 사후품질관리 교육 참여 여부의 운영관리기준으로서 적절하다는 비율은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95%를 상회한다. 적절성 점수 또한 지역 간에 차이가 없었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다빈도이나 반기도 30% 내외의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다. 점검방법은 시스템과 현장점검이 4:3 정도의 응답 비중을 차지한다(표 IV-2-25 참조).

〈표 IV-2-25〉 공공형 사후품질관리 교육 참여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7.4	29.1	3.2	61.0	29.1	7.1	2.8	77.3	22.7	(141)
대도시	68.6	28.6	3.3	51.4	34.3	11.4	2.9	71.4	28.6	( 35)
중소도시	69.1	25.5	3.2	69.1	25.5	1.8	3.6	80.0	20.0	( 55)
읍면지역	64.7	33.3	3.3	58.8	29.4	9.8	2.0	78.4	21.6	( 51)
X <sup>2</sup> (df)/F	-	-	0.8	-	-	-	-	1.0(2)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자) 공모전 참여 및 수상 여부

공모전 참여 및 수상 기준의 적절성은 읍면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았으나 적절성 점수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점검주기는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연 단위가 우세하고, 점검방법은 시스템이 60~70%대로 다빈도이었다(표 IV-2-26 참조).

〈표 IV-2-26〉 공모전 참여 및 수상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2.4	14.2	2.9	70.2	22.7	5.7	1.4	71.6	28.4	(141)
대도시	68.6	8.6	2.8	60.0	31.4	8.6	-	68.6	31.4	( 35)
중소도시	60.0	12.7	2.8	74.5	20.0	1.8	3.6	78.2	21.8	( 55)
읍면지역	60.8	19.6	3.0	72.5	19.6	7.8	-	66.7	33.3	( 51)
X <sup>2</sup> (df)/F	-	-	1.2	-	-	-	-	1.9(2)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2) 배점기준의 적절성

가) 1급 보육교사 비율

1급 보육교사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70% 이상(농어촌 60%이상)은 감점을 주고, 60%미만(농어촌 50% 미만)은 감점을 주는 것에 대해 각각 87.9%, 77.3%가 동의하였다. 전자와 후자 모두 읍면지역일수록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표 IV-2-27 참조).

〈표 IV-2-27〉 1급 보육교사 비율 배정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가점)1급 보육교사 70% 이상 (농어촌 60% 이상)					(감점)1급 보육교사 60% 미만 (농어촌 50% 미만)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0.7	11.3	71.6	16.3	3.0	1.4	21.3	61.0	16.3	2.9	100.0(141)
대도시	2.9	14.3	74.3	8.6	2.9	2.9	25.7	65.7	5.7	2.7	100.0( 35)
중소도시	-	12.7	67.3	20.0	3.1	1.8	25.5	54.5	18.2	2.9	100.0( 55)
읍면지역	-	7.8	74.5	17.6	3.1	-	13.7	64.7	21.6	3.1	100.0( 51)
X <sup>2</sup> (df)/F					1.8					1.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나) 3년 이상 근속 교사 비율 및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3년 이상 근속교사 30% 이상 유지 시 가점을 주는 기준에 대해 96.5%가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95% 내외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적절성 점수도 지역 간에 차이가 없었다.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준수 시 가점 부여도 95.1%가 적절하다고 보았고, 지역규모별로도 90% 이상의 응답비율을 나타내어서 차이가 없었다(표 IV-2-28 참조).

〈표 IV-2-28〉 3년 이상 근속 교사 비율 및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배정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가점)3년 이상 근속교사 30% 이상					(가점)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준수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	3.5	75.2	21.3	3.2	-	5.0	80.9	14.2	3.1	100.0(141)
대도시	-	2.9	77.1	20.0	3.2	-	2.9	85.7	11.4	3.1	100.0( 35)
중소도시	-	5.5	74.5	20.0	3.1	-	7.3	80.0	12.7	3.1	100.0( 55)
읍면지역	-	2.0	74.5	23.5	3.2	-	3.9	78.4	17.6	3.1	100.0( 51)
X <sup>2</sup> (df)/F					2.9					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다) 대표자 및 원장 변경

대표자 변경 시 감점을 주는 기준에 대해 89.4%가 적절하다고 하였고, 대도시가 타 지역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적절성 점수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원장 변경 시 감점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85.1%가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대

표자 변경 기준보다 적절하다는 비율이 낮았다. 대도시 지역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IV-2-29 참조).

〈표 IV-2-29〉 대표자 및 원장 변경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감점)대표자 변경					(감점)원장 변경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	10.6	75.2	14.2	3.0	1.4	13.5	66.0	19.1	3.0	100.0(141)
대도시	-	5.7	82.9	11.4	3.1	-	11.4	71.4	17.1	3.1	100.0( 35)
중소도시	-	12.7	70.9	16.4	3.0	3.6	14.5	61.8	20.0	3.0	100.0( 55)
읍면지역	-	11.8	74.5	13.7	3.0	-	13.7	66.7	19.6	3.1	100.0( 51)
X <sup>2</sup> (df)/F					0.1					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라) 공공형 사후품질 관리 교육 참여

공공형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 교육에 전체 교사의 10% 이상이 참여할 경우 가점을 주는 기준에 대해 94.3%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도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적절성 점수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표 IV-2-30 참조).

원장 의무교육 1회 이상 미참여 시 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은 97.9%가 적절하다고 보았고, 이는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95%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표 IV-2-30〉 공공형 사후품질 관리 교육 참여 관련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가점)전체 교사의 10%이상 교육 참여					(감점)원장 의무교육 1회 이상 미참여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	5.7	75.9	18.4	3.1	-	2.1	75.2	22.7	3.2	100.0(141)
대도시	-	-	85.7	14.3	3.1	-	-	82.9	17.1	3.2	100.0( 35)
중소도시	-	10.9	69.1	20.0	3.1	-	3.6	76.4	20.0	3.2	100.0( 55)
읍면지역	-	3.9	76.5	19.6	3.2	-	2.0	68.6	29.4	3.3	100.0( 51)
X <sup>2</sup> (df)/F					0.9					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마) 공모전 참여 및 수상

공공형어린이집이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수상할 경우 가점을 주는 기준이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은 각각 80.9%, 83%이었다. 전자는 읍면지역, 후자는 대도시

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 모두 적절성 점수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표 IV-2-31 참조).

〈표 IV-2-31〉 공모전 참여 및 수상 관련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가점)공모전 참여					(가점)공모전 수상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2.1	17.0	68.1	12.8	2.9	2.1	14.9	68.8	14.2	3.0	100.0(141)
대도시	2.9	17.1	74.3	5.7	2.8	2.9	8.6	82.9	5.7	2.9	100.0( 35)
중소도시	3.6	16.4	69.1	10.9	2.9	3.6	18.2	65.5	12.7	2.9	100.0( 55)
읍면지역	-	17.6	62.7	19.6	3.0	-	15.7	62.7	21.6	3.1	100.0( 51)
X <sup>2</sup> (df)/F											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라. 맞춤 보육

### 1) 운영관리 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및 방법

#### 가) 개요

맞춤보육 운영관리 기준으로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등 5개 기준이 적절한지 살펴본 결과,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96.4%, 맞춤형보육 운영시간 95.1%, 맞춤형보육 민원발생 시정조치 91.5%, 부모만족도 조사 90.1% 순이다. 점검주기는 대부분 연 단위가 50% 내외, 반기가 30%대로 연 단위가 높다. 점검방법은 대부분 시스템을 적절하다는 의견이나 맞춤형보육 운영시간은 현장점검이 더 많았다.

〈표 IV-2-32〉 맞춤 보육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 점검	
취약서비스 운영	78.0	18.4	3.1	55.3	31.9	10.6	2.1	75.9	24.1	(141)
맞벌이자녀 비율	56.7	13.5	2.8	55.3	34.0	9.9	0.7	77.3	22.7	(141)
맞춤형보육 운영시간	75.2	19.9	3.1	47.5	31.9	17.7	2.8	47.5	52.5	(141)
부모만족도 조사 실시	76.6	13.5	3.0	51.1	34.8	12.8	1.4	50.4	49.6	(141)
맞춤형보육 민원발생 시정조치	77.3	14.2	3.0	56.7	29.8	12.1	1.4	65.2	34.8	(1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나)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의 운영관리기준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해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90%를 상회하였다. 점검주기도 대체로 연 단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었고, 점검방법은 60~70%가 시스템을 선택하였다(표 IV-2-33 참조).

〈표 IV-2-33〉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78.0	18.4	3.1	55.3	31.9	10.6	2.1	75.9	24.1	(141)	
대도시	80.0	11.4	3.0	51.4	31.4	17.1	-	68.6	31.4	( 35)	
중소도시	76.4	21.8	3.2	61.8	32.7	1.8	3.6	78.2	21.8	( 55)	
읍면지역	78.4	19.6	3.2	51.0	31.4	15.7	2.0	78.4	21.6	( 51)	
X <sup>2</sup> (df)/F			- 1.5					-	1.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다) 맞벌이 자녀 비율

맞벌이 자녀 비율은 읍면지역이 75% 정도로 높고 나머지는 65~70% 정도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적절성 점수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다빈도이나 대도시의 경우 분기가 20%로 높았다. 점검방법은 시스템이 70~80%대로 높았다(표 IV-2-34 참조).

〈표 IV-2-34〉 맞벌이 자녀 비율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56.7	13.5	2.8	55.3	34.0	9.9	0.7	77.3	22.7	(141)	
대도시	57.1	14.3	2.8	42.9	34.3	20.0	2.9	71.4	28.6	( 35)	
중소도시	50.9	14.5	2.7	65.5	32.7	1.8	-	72.7	27.3	( 55)	
읍면지역	62.7	11.8	2.9	52.9	35.3	11.8	-	86.3	13.7	( 51)	
X <sup>2</sup> (df)/F			- 0.5					-	3.7(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라) 맞춤형보육 운영시간

맞춤형보육 운영시간 준수 기준의 적절성은 읍면지역일수록 높았다. 점검주

기는 연 단위가 다수이나 반기도 30%대의 높고, 점검방법은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 현장점검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표 IV-2-35 참조).

〈표 IV-2-35〉 맞춤형보육 운영시간 준수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75.2	19.9	3.1	47.5	31.9	17.7	2.8	47.5	52.5	(141)
대도시	65.7	22.9	3.1	42.9	31.4	22.9	2.9	34.3	65.7	( 35)
중소도시	80.0	14.5	3.1	52.7	36.4	9.1	1.8	56.4	43.6	( 55)
읍면지역	76.5	23.5	3.2	45.1	27.5	23.5	3.9	47.1	52.9	( 51)
X <sup>2</sup> (df)/F	-		1.3	-				4.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마) 부모만족도 조사

부모만족도 조사의 적절성은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다빈도이지만 반기도 30% 대로 높은 편이다. 점검방법은 시스템과 현장 점검에 대한 의견이 비등하였다. 대도시 또는 읍면지역은 점검방법으로 현장점검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표 IV-2-36 참조).

〈표 IV-2-36〉 부모만족도 조사 정기실시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76.6	13.5	3.0	51.1	34.8	12.8	1.4	50.4	49.6	(141)
대도시	77.1	8.6	2.9	48.6	31.4	17.1	2.9	48.6	51.4	( 35)
중소도시	67.3	18.2	3.0	56.4	34.5	9.1	-	52.7	47.3	( 55)
읍면지역	86.3	11.8	3.1	47.1	37.3	13.7	2.0	49.0	51.0	( 51)
X <sup>2</sup> (df)/F	-		1.1	-				0.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바) 맞춤형보육 관련 민원발생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

맞춤형보육 관련 민원발생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읍면 지역일수록 높지만, 적절성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50~60%대로 다빈도이고, 점검방법은 시스템이 대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IV-2-37 참조).

〈표 IV-2-37〉 맞춤형보육 관련 민원발생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접접주기				접접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접접	
전체	77.3	14.2	3.0	56.7	29.8	12.1	1.4	65.2	34.8	(141)
대도시	74.3	11.4	3.0	51.4	28.6	20.0	-	71.4	28.6	( 35)
중소도시	76.4	14.5	3.0	63.6	30.9	3.6	1.8	67.3	32.7	( 55)
읍면지역	80.4	15.7	3.1	52.9	29.4	15.7	2.0	58.8	41.2	( 51)
X <sup>2</sup> (df)/F	0.9			-				1.6(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2) 배점기준의 적절성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2016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과 같이 서비스유형별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97.2%가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90% 이상이 찬성하였다.

어린이집이 부모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경우 가점을 주는 기준에 대해 90.8%가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읍면지역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V-2-38 참조).

〈표 IV-2-38〉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및 부모만족도 조사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가점)서비스 유형별 배점					(가점)부모만족도 조사 정기실시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	2.8	84.4	12.8	3.1	1.4	7.8	77.3	13.5	3.0	100.0(141)
대도시	-	5.7	85.7	8.6	3.0	-	8.6	88.6	2.9	2.9	100.0( 35)
중소도시	-	1.8	81.8	16.4	3.1	1.8	14.5	67.3	16.4	3.0	100.0( 55)
읍면지역	-	2.0	86.3	11.8	3.1	2.0	-	80.4	17.6	3.1	100.0( 51)
X <sup>2</sup> (df)/F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맞벌이가구 자녀 채용율이 60%이상(농어촌 50%이상) 시 가점, 50% 미만 시 감점을 주는 기준에 대해 각각 73.7%, 63.9%가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전자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표 IV-2-39 참조).

맞춤형보육 운영시간 관련하여 맞춤형/종일반 미준수 시 감점을 주는 기준에 대해 89.4%, 90.1%가 각각 찬성하였다. 맞춤형/종일반 미준수 모두 읍면지역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적절성 점수는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다(표 IV

-2-40 참조).

〈표 IV-2-39〉 맞벌이가구 자녀 재원을 관련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가점)맞벌이 자녀 60%이상 (농어촌 50%이상)					(감점)맞벌이 자녀 50%미만 (농어촌 40%미만)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3.5	22.7	64.5	9.2	2.8	3.5	32.6	58.2	5.7	2.7	100.0(141)
대도시	2.9	20.0	71.4	5.7	2.8	2.9	28.6	68.6	-	2.7	100.0( 35)
중소도시	7.3	25.5	58.2	9.1	2.7	7.3	40.0	43.6	9.1	2.5	100.0( 55)
읍면지역	-	21.6	66.7	11.8	2.9	-	27.5	66.7	5.9	2.8	100.0( 51)
X <sup>2</sup> (df)/F	-				1.4	-				1.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맞춤형보육 관련 민원발생 시 시정명령 조치 시에 감점을 주는 기준에 대해 90.8%가 적절하다고 하였고, 읍면지역일수록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적절성 점수 차이는 유의 수준은 아니다.

〈표 IV-2-40〉 맞춤형보육 운영시간 준수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맞춤형 보육 운영시간										(감점)맞춤형보육 관련 민원발생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					계(수)
	(감점)맞춤반 미준수					(감점)종일반 미준수										
	매우 부적 절	부적 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 절	부적 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 절	부적 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	10.6	76.6	12.8	3.0	-	9.9	75.9	14.2	3.0	0.7	8.5	78.7	12.1	3.0	100.0(141)
대도시	-	11.4	82.9	5.7	2.9	-	8.6	85.7	5.7	3.0	-	14.3	80.0	5.7	2.9	100.0( 35)
중소도시	-	18.2	67.3	14.5	3.0	-	14.5	70.9	14.5	3.0	-	9.1	78.2	12.7	3.0	100.0( 55)
읍면지역	-	2.0	82.4	15.7	3.1	-	5.9	74.5	19.6	3.1	2.0	3.9	78.4	15.7	3.1	100.0( 51)
X <sup>2</sup> (df)/F					2.3					-	1.5					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마. 안전관리

### 1) 운영관리 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및 방법

#### 가) 개요

안전관리 운영관리기준으로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6개 기준의 적

절성을 조사하였다.

6개 기준 모두 적절하다는 비율이 95%를 상회한다. 이중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이 98.6%로 가장 높고, 차량기사 안전교육이 95.7%로 가장 낮았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대체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은 연 단위가 71.6%로 높고, 점검방법은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과 비상재해대비 시설 현행기준 준수 2개 항목은 현장점검이 높았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시스템, 아동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과 통학차량 정기점검, 차량기사 안전교육은 시스템과 현장점검의 응답비율이 유사하였다(표 IV-2-41 참조).

〈표 IV-2-41〉 안전교육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 점검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74.5	24.1	3.2	56.0	30.5	12.1	1.4	44.0	56.0	(141)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69.5	28.4	3.2	59.6	26.2	12.8	1.4	37.6	62.4	(141)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	63.1	34.0	3.3	71.6	17.7	9.2	1.4	76.6	23.4	(141)
아동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65.2	31.2	3.3	56.7	26.2	14.9	2.1	53.9	46.1	(141)
통학차량 정기점검	63.1	33.3	3.3	53.2	27.7	14.9	4.3	55.3	44.7	(141)
차량기사 안전교육	65.2	30.5	3.2	56.0	26.2	13.5	4.3	53.9	46.1	(1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나)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기준의 적절성은 지역규모별 차이가 없었다. 점검주기는 대체로 연 단위, 점검방법은 현장점검이 많았다(표 IV-2-42 참조).

〈표 IV-2-42〉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 점검	
전체	74.5	24.1	3.2	56.0	30.5	12.1	1.4	44.0	56.0	(141)
대도시	68.6	28.6	3.2	48.6	28.6	20.0	2.9	28.6	71.4	( 35)
중소도시	83.6	14.5	3.1	67.3	30.9	1.8	-	52.7	47.3	( 55)
읍면지역	68.6	31.4	3.3	49.0	31.4	17.6	2.0	45.1	54.9	( 51)
$X^2(df)/F$	-	-	2.2	-	-	-	-	5.1(2)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다)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준수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준수 여부를 적용하는 기준은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90%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읍면지역일수록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지만 적절성 점수는 지역 간에 차이가 없었다. 점검주기는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연 단위. 점검방법은 현장점검의 응답비율이 많았다(표 IV-2-43 참조).

〈표 IV-2-43〉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준수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9.5	28.4	3.2	59.6	26.2	12.8	1.4	37.6	62.4	(141)
대도시	62.9	31.4	3.2	51.4	28.6	17.1	2.9	25.7	74.3	( 35)
중소도시	72.7	25.5	3.2	74.5	21.8	3.6	-	43.6	56.4	( 55)
읍면지역	70.6	29.4	3.3	49.0	29.4	19.6	2.0	39.2	60.8	( 51)
X <sup>2</sup> (df)/F	-		0.3	-				3.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97%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읍면지역일수록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지만 적절성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 점검방법은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많았다(표 IV-2-44 참조).

〈표 IV-2-4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3.1	34.0	3.3	71.6	17.7	9.2	1.4	76.6	23.4	(141)
대도시	60.0	34.3	3.3	62.9	20.0	14.3	2.9	62.9	37.1	( 35)
중소도시	65.5	30.9	3.2	78.2	16.4	3.6	1.8	80.0	20.0	( 55)
읍면지역	62.7	37.3	3.4	70.6	17.6	11.8	-	82.4	17.6	( 51)
X <sup>2</sup> (df)/F	-		0.8	-				5.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마) 아동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여부도 적절하다는 비율이 96%를 상회하

였다. 지역규모별로 적절하다는 비율이 95% 내외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50~60% 사이, 점검방법은 지역에 따라 의견이 상이하여서 대도시는 현장점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표 IV-2-45 참조).

〈표 IV-2-45〉 아동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5.2	31.2	3.3	56.7	26.2	14.9	2.1	53.9	46.1	(141)
대도시	60.0	34.3	3.3	54.3	20.0	22.9	2.9	42.9	57.1	( 35)
중소도시	70.9	23.6	3.2	69.1	23.6	5.5	1.8	60.0	40.0	( 55)
읍면지역	62.7	37.3	3.4	45.1	33.3	19.6	2.0	54.9	45.1	( 51)
X <sup>2</sup> (df)/F	-		1.8		-			2.6(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바) 통학차량 정기점검

통학차량 정기점검 기준에 대해서도 95%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95% 내외의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대체로 높지만, 읍면지역은 연 단위와 반기가 각각 39.2%, 33.35로 높았다. 점검방법의 경우, 대도시는 현장점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표 IV-2-46 참조).

〈표 IV-2-46〉 통학차량 정기점검 실시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3.1	33.3	3.3	53.2	27.7	14.9	4.3	55.3	44.7	(141)
대도시	60.0	34.3	3.3	48.6	28.6	20.0	2.9	42.9	57.1	( 35)
중소도시	65.5	29.1	3.2	69.1	21.8	5.5	3.6	63.6	36.4	( 55)
읍면지역	62.7	37.3	3.4	39.2	33.3	21.6	5.9	54.9	45.1	( 51)
X <sup>2</sup> (df)/F	-		1.0		-			3.7(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사) 차량기사 안전교육

차량기사 안전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일수록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50% 내외로 다빈도이고, 점검방법은 대도시의 경우 현장점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표 IV-2-47 참조).

〈표 IV-2-47〉 차량기사 안전교육 실시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5.2	30.5	3.2	56.0	26.2	13.5	4.3	53.9	46.1	(141)
대도시	60.0	31.4	3.2	48.6	31.4	17.1	2.9	45.7	54.3	( 35)
중소도시	69.1	25.5	3.2	69.1	20.0	7.3	3.6	58.2	41.8	( 55)
읍면지역	64.7	35.3	3.4	47.1	29.4	17.6	5.9	54.9	45.1	( 51)
X <sup>2</sup> (df)/F	-	-	1.3	-	-	-	-	1.4(2)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2) 배점기준의 적절성

### 가)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정기 실시할 경우에는 가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에 대해 93.6%, 90.0%가 각각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전자는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없으나 후자는 대도시가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적절성 점수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표 IV-2-48 참조).

〈표 IV-2-48〉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정기실시

단위: %(명), 점

구분	(가점)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정기실시					(감점)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부적격 판정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	6.4	73.0	20.6	3.1	-	9.9	72.3	17.7	3.1	100.0(141)
대도시	-	5.7	65.7	28.6	3.2	-	5.7	68.6	25.7	3.2	100.0( 35)
중소도시	-	9.1	76.4	14.5	3.1	-	12.7	74.5	12.7	3.0	100.0( 55)
읍면지역	-	3.9	74.5	21.6	3.2	-	9.8	72.5	17.6	3.1	100.0( 51)
X <sup>2</sup> (df)/F	-	-	-	-	1.5	-	-	-	-	3.2(4)	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나)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안전공제회

비상재해대비시설이 현행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 가점을 주는 기준에 대해 92.9%가 적절하다고 하였고,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90%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미가입 시 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은 96.5%의 높은 응답

를 나타내었고, 이 기준도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표 IV-2-49 참조).

〈표 IV-2-49〉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안전공제회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가점)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감점)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미가입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	7.1	70.9	22.0	3.1	0.7	2.8	68.8	27.7	3.2	100.0(141)
대도시	-	5.7	62.9	31.4	3.3	-	2.9	62.9	34.3	3.3	100.0( 35)
중소도시	-	7.3	74.5	18.2	3.1	1.8	5.5	72.7	20.0	3.1	100.0( 55)
읍면지역	-	7.8	72.5	19.6	3.1	-	-	68.6	31.4	3.3	100.0( 51)
X <sup>2</sup> (df)/F					1.0					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다) 안전교육 및 소방대비훈련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가점을 주는 기준은 92.2%가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지역규모별로도 90% 이상이 찬성하였다.

소방대피훈련 월 1회 정기 실시 시 가점 부여는 92.9%가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높았다(표 IV-2-50 참조).

〈표 IV-2-50〉 안전교육 및 소방대비훈련 관련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가점)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정기 실시					(가점)소방대피훈련 월1회 정기실시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	7.8	71.6	20.6	3.1		7.1	73.0	19.9	3.1	100.0(141)
대도시	-	5.7	65.7	28.6	3.2		5.7	65.7	28.6	3.2	100.0( 35)
중소도시	-	9.1	74.5	16.4	3.1		10.9	76.4	12.7	3.0	100.0( 55)
읍면지역	-	7.8	72.5	19.6	3.1		3.9	74.5	21.6	3.2	100.0( 51)
X <sup>2</sup> (df)/F					1.0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다) 통학차량 정기점검 및 차량기사 안전교육

통학차량 정기점검 미실시 시 감점 부여는 96.5%가 적절하다고 하였고,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차량기사 안전교육 미실시 시 감점 부여도 96.5%가 적절하다고 보았고, 지역

규모별로도 90% 이상의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표 IV-2-51 참조).

〈표 IV-2-51〉 통학차량 정기점검 및 차량기사 안전교육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감점)통학차량 정기점검 미 실시					(감점)차량기사 안전교육 미 실시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	3.5	68.8	27.7	3.2	-	3.5	68.8	27.7	3.2	100.0(141)
대도시	-	2.9	62.9	34.3	3.3	-	2.9	62.9	34.3	3.3	100.0( 35)
중소도시	-	7.3	69.1	23.6	3.2	-	7.3	70.9	21.8	3.1	100.0( 55)
읍면지역	-	-	72.5	27.5	3.3	-	-	70.6	29.4	3.3	100.0( 51)
X <sup>2</sup> (df)/F	-	-	-	-	1.1	-	-	-	-	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바. 건강위생관리

### 가) 개요

건강·위생관리 기준으로 석면조사, 실내공기질 유지, 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등 3개 기준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와 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이 각각 92.1%, 92.9%로 높고, 석면조사는 90.8% 이었다. 점검 주기는 연 단위가 70% 내외로 높고, 점검방법은 석면조사와 실내공기질 유지의 경우 시스템과 현장점검이 비등하고, 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은 시스템이 높았다(표 IV-2-52 참조).

〈표 IV-2-52〉 건강·위생관리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 점검	
석면조사	69.5	21.3	3.1	77.3	14.9	7.8	-	56.0	44.0	(141)
실내공기질 유지	73.0	19.1	3.1	67.4	22.0	9.9	0.7	58.2	41.8	(141)
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64.5	28.4	3.2	70.9	18.4	9.2	1.4	63.1	36.9	(1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나) 석면조사

석면조사는 읍면지역일수록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점검주기는 70~80%가 연 단위를 선택하였고, 점검방법은 시스템과 현장점검이 비등하였다. 대도시는

현장점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표 IV-2-53 참조).

〈표 IV-2-53〉 석면조사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9.5	21.3	3.1	77.3	14.9	7.8	-	56.0	44.0	(141)
대도시	62.9	25.7	3.1	71.4	14.3	14.3	-	42.9	57.1	( 35)
중소도시	76.4	12.7	3.0	80.0	18.2	1.8	-	65.5	34.5	( 55)
읍면지역	66.7	27.5	3.2	78.4	11.8	9.8	-	54.9	45.1	( 51)
X <sup>2</sup> (df)/F	-		4.2*	-				4.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p < .05

다) 실내공기질 유지

실내공기질 유지는 대도시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적절성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높고, 점검방법은 의견이 비등하나, 특히 대도시는 현장점검을 뽑은 비율이 높았다(표 IV-2-54 참조).

〈표 IV-2-54〉 실내공기질 유지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73.0	19.1	3.1	67.4	22.0	9.9	0.7	58.2	41.8	(141)
대도시	77.1	20.0	3.2	71.4	14.3	14.3	-	45.7	54.3	( 35)
중소도시	72.7	14.5	3.0	69.1	23.6	5.5	1.8	65.5	34.5	( 55)
읍면지역	70.6	23.5	3.2	62.7	25.5	11.8	-	58.8	41.2	( 51)
X <sup>2</sup> (df)/F	-		2.0	-				3.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라) 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의 적절성은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높았다. 그러나 적절성 점수는 지역 간에 차이가 없었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높으나, 점검방법은 대도시의 경우 현장점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표 IV-2-55 참조).

〈표 IV-2-55〉 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접검주기				접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접검	
전체	64.5	28.4	3.2	70.9	18.4	9.2	1.4	63.1	36.9	(141)
대도시	62.9	31.4	3.3	71.4	11.4	17.1	-	48.6	51.4	( 35)
중소도시	63.6	25.5	3.1	70.9	21.8	3.6	3.6	67.3	32.7	( 55)
읍면지역	66.7	29.4	3.3	70.6	19.6	9.8	-	68.6	31.4	( 51)
X <sup>2</sup> (df)/F	-		1.8		-			4.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2) 배점기준의 적절성

가) 석면조사

석면조사 면제시설이 실시하거나 기준을 준수할 경우 가점을 주는 기준에 대해 88.6%가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읍면지역에서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적절성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의무대상 시설이 석면조사를 미실시하거나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은 적절하다는 비율이 90%를 차지하였다. 이는 읍면지역일수록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IV-2-56 참조).

〈표 IV-2-56〉 석면조사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가점)면제시설 실시 및 기준 준수					(감점)의무대상 시설 미실시 또는 기준 미달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0.7	10.6	70.9	17.7	3.1	0.7	9.2	72.3	17.7	3.1	100.0(141)
대도시	-	14.3	62.9	22.9	3.1	-	11.4	62.9	25.7	3.1	100.0( 35)
중소도시	1.8	12.7	70.9	14.5	3.0	1.8	10.9	72.7	14.5	3.0	100.0( 55)
읍면지역	-	5.9	76.5	17.6	3.1	-	5.9	78.4	15.7	3.1	100.0( 51)
X <sup>2</sup> (df)/F					0.7					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나)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 미대상 시설이 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지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가점을 주는 기준은 92.2%가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없었다.

실내공기질 의무대상 시설이 검사를 미실시하거나 유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점을 주는 기준에 대해 92.9%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IV-2-57 참조).

〈표 IV-2-57〉 실내공기질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가점)미대상 시설 실시 및 유지기준 준수					(감점)의무대상 시설 미실시 또는 유지기준 미달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0.7	7.1	73.8	18.4	3.1	0.7	6.4	74.5	18.4	3.1	100.0(141)
대도시	-	5.7	71.4	22.9	3.2	-	5.7	71.4	22.9	3.2	100.0( 35)
중소도시	1.8	9.1	72.7	16.4	3.0	1.8	9.1	72.7	16.4	3.0	100.0( 55)
읍면지역	-	5.9	76.5	17.6	3.1	-	3.9	78.4	17.6	3.1	100.0( 51)
X <sup>2</sup> (df)/F					0.7					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다) 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아동 1명 이상 건강검진 미실시 시 감점을 주는 기준과 보육교직원 1명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감점을 주는 기준 모두 95% 정도가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두 기준 모두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90% 이상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적절성 점수도 차이가 없다(표 IV-2-58 참조).

〈표 IV-2-58〉 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감점) 아동 1명 이상 건강검진 미실시					(감점) 보육교직원 1명 이상 건강검진 미실시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	5.0	72.3	22.7	3.2	-	5.0	70.9	24.1	3.2	100.0(141)
대도시	-	5.7	62.9	31.4	3.3	-	2.9	62.9	34.3	3.3	100.0( 35)
중소도시	-	7.3	72.7	20.0	3.1	-	7.3	72.7	20.0	3.1	100.0( 55)
읍면지역	-	2.0	78.4	19.6	3.2	-	3.9	74.5	21.6	3.2	100.0( 51)
X <sup>2</sup> (df)/F					0.7					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사. 열린 운영

### 1) 운영관리 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및 방법

#### 가) 개요

열린운영 기준의 적절성을 알아본 결과, 운영위원회 운영기준 94.3%, 부모모니터링 참여 85.15, 열린어린이집 선정 80.9%이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60~70%로 높고, 점검방법은 부모모니터링 참여와 열린어린이집은 시스템, 운영위원회 운영기준은 현장점검이 높았다(표 IV-2-59 참조).

〈표 IV-2-59〉 열린 운영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부모모니터링 참여	67.4	17.7	3.0	63.8	25.5	10.6	-	68.1	31.9	(141)
열린어린이집 선정	66.0	14.9	2.9	70.9	20.6	8.5	-	71.6	28.4	(141)
운영위원회 운영기준	69.5	24.8	3.2	58.2	23.4	18.4	-	47.5	52.5	(1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나) 부모모니터링 참여

부모모니터링 참여 여부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적절성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60%대, 점검방법은 시스템이 60~70%대로 높았다(표 IV-2-60 참조).

〈표 IV-2-60〉 부모모니터링 참여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7.4	17.7	3.0	63.8	25.5	10.6	-	68.1	31.9	(141)
대도시	57.1	17.1	2.9	62.9	22.9	14.3	-	60.0	40.0	( 35)
중소도시	70.9	18.2	3.1	65.5	25.5	9.1	-	72.7	27.3	( 55)
읍면지역	70.6	17.6	3.1	62.7	27.5	9.8	-	68.6	31.4	( 51)
$X^2(df)/F$	4.4(4)		0.9	0.8(4)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다) 열린어린이집 선정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의 적절성은 읍면지역일수록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적절성 점수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70%내외로 높고, 점검방법도 시스템이 현장점검에 비해 높았다(표 IV-2-61 참조).

〈표 IV-2-61〉 열린어린이집 선정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6.0	14.9	2.9	70.9	20.6	8.5	-	71.6	28.4	(141)
대도시	62.9	14.3	2.9	68.6	17.1	14.3	-	68.6	31.4	( 35)
중소도시	67.3	10.9	2.9	69.1	27.3	3.6	-	76.4	23.6	( 55)
읍면지역	66.7	19.6	3.1	74.5	15.7	9.8	-	68.6	31.4	( 51)
X <sup>2</sup> (df)/F	-	-	1.5	-	-	-	-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기준 준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기준의 적절성은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95% 내외이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50% 정도로 높고, 점검방법은 현장점검이 50%대이다(표 IV-2-62 참조).

〈표 IV-2-6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기준 준수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전체	69.5	24.8	3.2	58.2	23.4	18.4	-	47.5	52.5	(141)
대도시	65.7	28.6	3.2	51.4	20.0	28.6	-	48.6	51.4	( 35)
중소도시	69.1	23.6	3.2	65.5	27.3	7.3	-	49.1	50.9	( 55)
읍면지역	72.5	23.5	3.2	54.9	21.6	23.5	-	45.1	54.9	( 51)
X <sup>2</sup> (df)/F	-	-	0.2	-	7.9(4)	-	-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2) 배점기준의 적절성

부모모니터링 참여 시 가점 부여는 83%가 적절하다고 하였고, 읍면지역일수록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열린어린이집 선정 시 가점 부여는 적절하다는 비율이 83%정도이고, 읍면지

역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미준수 시 감점 하는 기준은 92.9%가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지역규모별로 차이 없이 90% 내외의 찬성 비율을 보였다(표 IV-2-63 참조).

〈표 IV-2-63〉 부모모니터링, 열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가점) 부모모니터링 참여					(가점) 열린어린이집 선정					(감점) 운영위원회 운영기준 미준수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4점 적절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4점 적절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4점 적절	평균	
전체	-	17.0	68.1	14.9	3.0	0.7	16.3	67.4	15.6	3.0	-	7.1	70.2	22.7	3.2	100.0(141)
대도시	-	22.9	54.3	22.9	3.0	-	20.0	57.1	22.9	3.0	-	5.7	60.0	34.3	3.3	100.0( 35)
중소도시	-	16.4	69.1	14.5	3.0	1.8	20.0	65.5	12.7	2.9	-	12.7	67.3	20.0	3.1	100.0( 55)
읍면지역	-	13.7	76.5	9.8	3.0	-	9.8	76.5	13.7	3.0	-	2.0	80.4	17.6	3.2	100.0( 51)
X <sup>2</sup> (df)/F	4.9(4)				0.1	-				1.0	-				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 3. 소결

본 절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개발 방향과 구성, 즉, 영역 및 영역별 세부기준 등을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조사에서 점검방법으로 맞춤보육 영역의 부모만족도 조사, 안전교육 영역의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준수, 열린 운영 영역의 운영위원회 운영기준 준수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시스템 점검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시스템 점검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 차원에서의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맞춤보육 영역에서 부모만족도 조사 실시가 적절하다는 비율이 91.1%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정부는 매년 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 표집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100명

미만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이용자 대상의 부모만족도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져서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단가를 상향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은 선정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어린이집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V.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수한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질이 낮은 공공형어린이집은 합리적인 퇴출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운영관리 기준(안)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책제언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최종(안)과 운영체계, 현장 적용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안) 및 운영체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안)은 2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안)에 대한 연구진 및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가·감점 부여 방식은 어린이집을 서열화하여 과도한 경쟁체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항목별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 가. 운영·관리기준(안)

##### 1) 구성

##### 가) 1안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1안)의 구성은 <표 V-1-1>과 같다. 기본 항목, 재정관리, 보육교직원 관리, 맞춤형보육, 안전교육, 건강위생관리, 열린운영 7개 영역,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로는 기본 항목 2개, 재정관리 3개, 보육교직원 관리 3개, 맞춤형보육 3개, 건강·위생관리 2개, 안전관리 4개, 열린 운영 3개 항목을 포함하였다(표 V-1-1 참조).

영역별 항목 및 세부기준, 배점, 점검주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 항목 영역은 정원충족률, 평가인증 점수를 배치하였다. 정원충족률은 평균 정원충족률이 85% 이상(농어촌 55%이상)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였다. 단, 구간별로

차등 배점하여 85~89.99%는 1점, 90% 이상은 2점이다. 평가인증 점수는 공공형 유효기간 내 재평가를 받는 경우, 평가인증 점수가 90~94.99점 1점, 95점 이상 2점을 부여하였다. 즉, 공공형어린이집이 기본항목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4점을 획득할 수 있다. 점검주기는 정원충족률과 평가인증점수 둘다 연 단위로고, 시스템을 통해 점검한다(표 V-1-2 참조).

〈표 V-1-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안) 구성

영역	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검주기		점검방법	
			가점	감점	연	반기	시스템	현장점검
1. 기본 항목	2	2	4	-	2	-	2	-
2. 재정관리	3	5	2	4	2	1	1	2
3. 보육교직원 관리	3	4	2	1.5	1	2	3	-
4. 맞춤보육	3	5	3	1	1	2	1	2
5. 건강위생관리	2	4	0.5	1.5	1	1	2	1
6. 안전관리	4	5	1.5	1.5	4	-	2	2
7. 열린운영	3	3	2	0.5	3	-	1	2
계	20	28	15	10	14	6	12	9

〈표 V-1-2〉 기본항목

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검주기	점검방법
		가점(점)	감점(점)		
1)정원충족률	연평균 정원충족률 85% 이상(농어촌 55% 이상) - 85~89.99% 1점 - 90% 이상 2점	최대 2점	-	연	시스템
2)평가인증 점수	평가인증 95점 이상 차등 배점 - 95~97점 미만 3점 - 97~99점 미만 4점 - 99점 이상 5점	최대 2점	-	연	시스템

주: 평가인증 3차 시범사업 참여 시 평가인증 점수범위는 별도 제시함.

재정관리 영역은 보육료 대비 월 임대료용자금 상환액비율, 담임보육교사 급여 지급기준 준수 여부, 아동 1인당 급식비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표 V-1-3 참조).

세부기준별 배점은 월 임대료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0%인 경우 가점 1점,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감점 1점을 부여하였다. 담임보육교사 급여 지급기준 준수 여부는 담임보육교사 국공립 1호봉 이상 미지급에 따른 시정

명령 1회 마다 감점 2점, 아동 1인당 급식비는 2,000원 이상이면 가점 1점, 1,745원 미만은 감점 1점을 배점하였다. 재정관리 영역의 총점 범위는 최소 -4점에서 최대 2점까지이다. 점검주기는 아동1인당 급식비만 분기이고 나머지는 모두 연 단위이다. 점검방법은 모두 현장점검이다.

〈표 V-1-3〉 재정관리

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검주기	점검방법
		가점(점)	감점(점)		
1)월 임대료·유차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0% 미만 상환액 비율 <sup>1)</sup>	월 임대료·유차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0% 미만	1		연	현장점검
	월 임대료·유차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1		
2)담임보육교사 급여 지급기준 준수여부	담임보육교사 국공립 1호봉 이상 미지급에 따른 시정명령 1회		2	연	현장점검
3)아동 1인당 급식비	아동 1인당 2,000원 이상	1		반기	현장점검
	아동 1인당 1,750원 미만		1		

주: 1) 월 임대료유차금 상환액 산출기준은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기준 적용함.

보육교직원 관리 영역은 1급 보육교사 비율,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교사 비율,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3개 항목을 배치하였다(표 V-14 참조).

〈표 V-1-4〉 보육교직원 관리

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검주기 (연/반기/분기/월)	점검방법 (시스템/현장점검)
		가점(점)	감점(점)		
1)1급 보육교사비율 <sup>1)</sup>	70%이상 유지(농어촌 60%이상)	3		반기	시스템
	60% 미만(농어촌 50% 미만)		2		
2)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교사 비율	현 어린이집 3년이상 근속교사 30%이상	2		연	시스템
	현 어린이집 3년이상 근속교사 30%미만		1		
3)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준수	1		반기	시스템

주: 1) 1급 보육교사 비율, 보육교사 근속기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등의 산출기준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매뉴얼」 기준 적용함.

세부기준별 배점과 점검주기 및 방법을 살펴보면, 1급 보육교사 비율은 70% 이상 유지(농어촌 60% 이상) 가점 1점, 60% 미만인 경우 감점 1점을 배점하였다.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교사 30% 이상은 가점 1점,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기준 준수는 가점 0.5점을 부여하였다. 즉, 최소 -1.5점, 최대 2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1급 보육교사 비율과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은 반기,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교사 비율은 연 단위로 점검하며, 3개 항목 모두 시스템을 사용한다(표 V-14 참조).

맞춤보육 영역은 취약보육서비스 운영과 맞춤형보육 운영시간 준수 여부, 맞춤형보육 운영지침 준수 여부 총 3개 항목을 배치하였다. 총점은 최소 -1점에서 최대 3점이다.

취약보육서비스는 서비스유형별로 점수 배점을 차등화하였다. 장애아보육은 1점, 시간연장보육과 휴일보육 각각 0.5점을 부여하였다. 맞춤형보육 운영시간은 맞춤반 또는 종일반 미준수 시 각각 감점 0.5점을 배점하였다. 마지막으로 맞춤형보육(맞춤반, 종일반) 운영지침 준수 시 각각 가점 0.5점을 부여하였다. 즉, 최소 -1점에서 최대 3점까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점검주기는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은 연 단위, 맞춤형보육 운영시간 준수 여부와 운영지침 준수 여부 모두 반기별로 현장 점검한다(표 V-15 참조).

〈표 V-1-5〉 맞춤형보육

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검 주기 (연/반기/분기/월)	점검 방법 (시스템/현장점검)
		가점 (점)	감점 (점)		
1)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장애아보육(1), 시간연장보육(0.5), 휴일보육(0.5) 등 서비스유형별 배점(점수)	최대 2점		연	시스템
2)맞춤형보육 운영시간 준수 여부	맞춤반(9:00~15:00, 10:00~16:00) 미준수		0.5	반기	현장 점검
	종일반(7:30~19:30) 미준수		0.5		
3)맞춤형보육 운영지침 준수 여부	맞춤반 운영지침(편성, 교사배치, 운영) 준수	0.5		반기	현장 점검
	종일반 운영지침(편성, 교사배치, 운영) 준수	0.5			

건강위생관리 영역은 실내공기질 측정 및 유지기준 준수 여부, 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유지기준 준수의 경우, 미대상 시설이 실내공기질 측정하고, 유지기준 준수할 경우 가점 0.5점, 의무대상 시설이 실내공기질 측정 미실시 또는 유지 기준 미준수 시 감점 0.5점이다. 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은 아동 1명 이상, 보육교직원 1명 이상 미실시자 발생 시 각각 0.5점을 감점한다. 이 영역에서 최소 -1.5점, 최대

0.5점을 받을 수 있다. 두 항목 모두 시스템을 통해 연 또는 반기마다 시스템 또는 현장점검을 활용하여 점검한다(표 V-1-6 참조).

〈표 V-1-6〉 건강·위생관리

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검주기 (연/반기/ 분기/월)	점검방법 (시스템/ 현장점검)
		가점 (점)	감점 (점)		
1)실내공기질 측정 및 유지기준 준수 여부	미대상 시설 실시 및 유지기준 준수	0.5		연	시스템
	의무대상 시설 미실시 또는 유지기준 미준수		0.5		
2)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아동 1명이상 건강검진(연1회) 미실시		0.5	반기	시스템 현장점검
	보육교직원 1명 이상 건강검진(연 1회) 미실시		0.5		

안전관리 영역은 <표 V-1-7>과 같이 구성하였다.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은 안전점검을 정기 실시, 안전점검 부적격 판정 또는 미실시 시 각각 감점 0.5점을 배점하였다. 비상재해대비시설은 현행기준 준수 시 가점 1점, 아동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감점 0.5점, 통학차량 정기점검 미실시 시 감점 1점이다. 안전관리 영역은 최소 -2점에서 최대 1.5점이 배점되어 있다. 4개 항목 모두 연 단위로 점검하며, 점검방법은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과 비상재해대비시설은 현장점검, 나머지는 시스템이다.

〈표 V-1-7〉 안전관리 구성

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검주기 (연/반기/ 분기/월)	점검방법 (시스템/ 현장점검)
		가점 (점)	감점 (점)		
1)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놀이터·놀이시설 안전점검 정기 실시	0.5		연	현장 점검
	놀이터·놀이시설 안전점검 부적격 판정 또는 미실시		0.5		
2)비상재해대비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준수	1		연	현장 점검
3)아동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안전교육 미실시		0.5	연	시스템
4)통학차량 정기점검	통학차량 정기점검 미실시		1	연	시스템

주: 안전교육에는 「아동복지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하는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약물오용·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해당됨.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에 차량기사 안전교육 포함시켜 점검함.

열린운영 영역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과 열린어린이집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기준 미준수 감점 0.5점, 열린어린이집 선정 가점 최대 1점, 부모만족도 조사 가점 1점을 배점하여 최소 -0.5점에서 최대 2점을 획득할 수 있다. 점검주기는 둘다 연 단위이고, 전자는 현장점검, 후자는 시스템을 활용한다.

〈표 V-1-8〉 열린 운영

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검 주기 (연/반기/분기/월)	점검 방법 (시스템/현장점검)
		가점 (점)	감점 (점)		
1)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기준(연4회 이상) 미준수		0.5	연	현장 점검
2)열린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선정 -중앙정부 사업 1점 -지방정부 사업 0.5점	최대 1점		연	시스템
3)부모만족도 조사	재원아동 부모 참여율 80% 이상	1		연	현장 점검

주: 열린어린이집 선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 중복하여 점수 부여하지 않음.

나) 2안

2(안)은 기본항목, 재정관리, 보육교직원, 맞춤형보육, 건강위생관리, 안전관리, 열린운영 7개 영역 2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V-1-9〉 준수여부 점검(2안)

구분	세부기준	점검	점검방법	비고
1. 기본항목				
1) 정원충족률	연평균 정원충족률 80% 이상(농어촌 50% 이상)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취소사유
2) 평가인증 점수	평가인증 90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취소사유
2. 재정관리				
1) 월 임대료·용자금 상환액	월임대료·용자금 상환액 10% 미만	<input type="checkbox"/>	현장점검	취소사유
2) 담임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준수	담임보육교사 급여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input type="checkbox"/>	현장점검	취소사유
3) 아동 1인당 급식비	급식비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현장점검	
3. 보육교직원 관리				
1) 1급 보육교사 비율	1급 보육교사 비율 50% 이상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2)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교사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교사 30%이상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3) 원장 변경	원장 미변경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표 V-1-9 계속)

구분	세부기준	점검	점검방법	비고
4. 맞춤형보육				
1)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선정 당시 접수받은 취약보육 유형 운영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2) 맞춤형보육	맞춤형 보육 수요조사 실시 맞춤형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부모 안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현장점검	
3) 맞춤형보육 운영지침 준수	맞춤반 운영지침 준수(편성, 교사배치, 운영) 종일반 운영지침 준수(편성, 교사배치, 운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현장점검	
5. 건강위생관리				
1) 실내공기질 측정 및 기준 준수	의무대상 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2) 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 점검	전체 재원 아동 건강검진 실시 전체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현장점검	
6. 안전관리				
1)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 점검	놀이터·놀이시설 안전점검 정기 실시	<input type="checkbox"/>	현장점검	
2) 비상재해대비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준수	<input type="checkbox"/>	현장점검	
3) 아동 및 보육교직원 안전 교육	안전교육 실시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4) 통학차량 점검	통학차량 정기점검 실시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7. 열린운영				
1)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연 4회	<input type="checkbox"/>	현장점검	
2) 부모만족도 조사	재원 아동 부모 80% 이상 참여	<input type="checkbox"/>	현장점검	
계				

세부기준은 기본항목과 재정관리, 보육교직원 관리, 맞춤형보육 각각 3개, 건강위생관리와 열린운영 2개, 안전관리 4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각 기준을 충족 여부를 체크하며, 점검방법은 항목별로 시스템과 현장점검 등을 사용한다.

## 2) 운영관리기준 점수 산정

### 가) 1안

운영관리기준 점수는 기본 점수(85점)에 영역별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가 총점이 된다. 가점은 영역별로 0.5~4점, 감점은 -0.5~4점 사이에 분포한다. 기본

점수에 가·감점을 합산하면, 최소 70점(85점+(-10점))에서 최대 100점(85점+15점)까지 분포한다. 단, 반기별 점검기준은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표 V-1-10〉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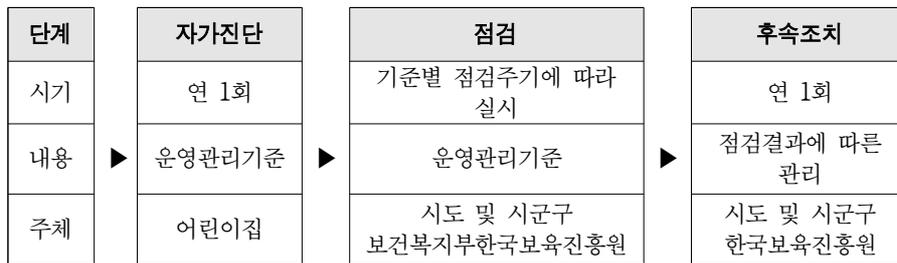
영역	항목	세부기준	가점	감점
1. 기본 항목	2	2	4	-
2. 재정관리	3	5	2	4
3. 보육교직원 관리	3	4	2	1.5
4. 맞춤보육	3	5	3	1
5. 건강위생관리	2	4	0.5	1.5
6. 안전교육	4	5	1.5	1.5
7. 열린운영	3	3	2	0.5
계	20	28	15	10

나) 2안

2안은 각 영역 및 항목별 세부기준을 준수한 사항을 합산한 결과를 활용한다.

### 나. 운영체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는 [그림 V-1-1]에 따라 운영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을 토대로 어린이집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시도 및 시군구와 한국보육진흥원이 현장점검 또는 시스템을 통해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후속조치는 점검과정에서 취소사유 또는 운영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그림 V-1-1] 운영체계

## 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현장적용 및 활용 방안

첫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조사에서 점검방법으로 시스템 점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린이집 관련 정보는 어린이집 통합정보시스템, DW, 어린이집 정보공시 등에 탑재되어 있으나, 데이터들이 통합 관리되고 있지 않다. 즉,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을 현장적용할 경우 시스템을 이용한 점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일부 자료는 어린이집이 직접 입력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을 현장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대상의 운영관리기준 관련 교육을 정기 실시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20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현장점검을 통해 점검이 이루어진다. 운영·관리기준 관련 교육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에 따른 점검결과의 편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점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하는 재무회계 컨설팅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시도 및 시군구의 점검 일정과 재무회계 컨설팅 일정을 조정하여 담당공무원과 컨설턴트가 동반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점검 결과는 재공인 점수에 반영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점검결과는 재공인 평가 시 일부 반영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예: 95점 이상)를 획득한 공공형어린이집은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공한다. 인센티브로, 공공형어린이집 공인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도점검 또는 부모모니터링 면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추가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한다.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3년 뒤에 재공인을 받는다. 재공인 지표는 10개 항목으로 대부분의 공공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도입 시 공공형으로 선정된 후 1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 기준은 선정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운영·관리기준 도입이 시급하며,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크레스피 효과(Crespi Effect)를 기대해 본다.

다섯째, 중앙 차원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매년 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 표집조사로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100명 미만의 소수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이용자 요구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공형어린이집 부모만족도 조사는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구방문 면접조사)와 병행하여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전화, 온라인, 앱 등을 이용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에게 추가 보육료가 지원되므로, 부모만족도 조사에 관한 의무 이행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받고, 매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부모 만족도 조사는 공공형어린이집 제공인 평가 시 일부 반영한다.

### 3. 맺는말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확정 후 지속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선정취소로 인한 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에게 선정취소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합리적인 퇴출 구조 마련을 위한 운영관리 기준(안)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및 배점, 운영기준, 사후관리(재무회계컨설팅 등), 지원기준 등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아울러 서울형어린이집 선정기준표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이 선정 시 획득한 점수를 시설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별로 분석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의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공공형, 국공립 및 일반 민간·가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과 유사 지표들을 검토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안)을 마련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절성을 파악하고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운영체계 및 현장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안)은 2개 안으로 제시하였다. 운영관리기준(안)은 기본항목, 재정관리, 보육교직원 관리, 맞춤형보육, 안전교육, 건강위생관리, 열린운영 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단, 1안은 가감점 점수 부여형으로 28개 세부기준, 2안은 22개 세부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안)을 통한 질 관리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완제로서 역할을 다하고, 선정취소 없이 공인 상태를 유지하여 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

## 참고문헌

- 김선옥(2015). 공공형 어린이집과 비공공형 어린이집의 부모 만족도.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행(2013).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2015).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만족도 연구 : 인천광역시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다중이용시설등실내공기질관리법 [타법개정. 법률 제12216호] 제 3조
- 문성호·이현진(2015). 국공립과 공공형어린이집의 부모의 보육서비스 만족도 비교. 열린부모교육연구, 7(1), 35-52.
- 박현주(2013). 공공형과 비공공형 어린이집 부모의 보육서비스 만족도 비교 연구: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3a).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3b). 부모모니터링 운영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3c). 월별 어린이집 일람현황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4a).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4b). 부모모니터링 운영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4c).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어린이집용).
- 보건복지부(2014d). 월별 어린이집 일람현황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5a).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5b). 부모모니터링 운영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5c).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3차 지표 시범사업용.
- 보건복지부(2015d).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5e). 월별 어린이집 일람현황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6a).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6b).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6c). 부모모니터링 운영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6d).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내부자료(2016년 3월말 기준).
-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사회보장정보원(2015). 어린이집 일람현황(2015년 4월 기준).
- 사회보장정보원(2016). 연도별 어린이집 운영자료 내부자료.
- 서문희·김미숙·양미선·박신아(2015).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계 개발. 한국보육진흥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양미선·도미향·송신영(2011).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원선·이혜민(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울시(2014).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지표.
- 서울시(2015).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지표.
- 서울시(2016).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지표.
- 서초구, 인천시, 과천시, 성남시, 수원시, 전라남도(각 년도). 지자체 민간어린이집 지원사업 내부자료.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16.1.27. 법률 제13877호] 제21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6.3.22. 법률 제14085호] 제 31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9.22. 대통령령 제27507호] 제 28조
- 양미선·이윤진(2015).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과 평가.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정주영·임지희(2013).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김아름·박기원(2015).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 유아정책연구소.
- 이미정(2012). 공보육 확충정책과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 고찰. 한국보육학회지, 12(4), 1~24.
- 이새봄(2013). 공공형어린이집 공인인증제에 대한 보육교직원이 인식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혜영·김현주(2014). 공공형어린이집 공인 인증제도에 대한 부모의 인식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5), 63-82.
- 정혜경(2011).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공인제도 실시에 관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식 비교.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부 록

---

부록 1. 부록 표

부록 2. 조사표



부록 1. 부록 표

〈부표 II-2-1〉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 현장실사 지표 구성

구분	분야	영역	평가문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항목	배점	항목	배점	항목	배점	항목	배점	항목	배점	항목	배점
				44	60	43	60	43	60	36	66	35	66	41	75
신규	맞춤보육	맞춤보육	맞춤보육실시여부 등	4	5	4	5	4	5	3	4	2	4	2	4
	안심보육	시설안전	비상재해대피시설 설치 등 재해 대책 마련	4	9	4	9	4	9	2	5	2	5	3	7
			영유아 안전관리 등	7	8	7	8	7	8	5	8	5	8	5	9
		급식·시설위생	급간식 위생 여부 등	6	6	5	6	5	6	6	7	6	7	2	7
	보육시설 청결 위생 등		5	5	5	5	5	5	1	4	1	3	6	3	
	클린운영	회계투명성	1시설1계좌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5	10	5	10	5	10	4	16	4	17	6	20
			보육료 등 경비수납의 클린성 등	5	6	5	6	5	6	4	5	4	5	4	5
		시설운영의 투명성	외부에 시설정보 공개 등	4	5	4	5	4	5	6	9	6	9	7	10
	인력전문성	전문인력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 자질 향상 노력 등	4	6	4	6	4	6	5	8	5	8	6	10
	재평가	맞춤보육	맞춤보육	맞춤보육실시여부 등	-	-	-	-	3	7	3	6	3	6	3
안심보육		시설안전	비상통로와 비상구의 활용 가능여부 등 재해 대책 마련	-	-	-	-	9	16	8	16	7	14	7	13
			어린이집 환경 및 교구 위생 등	-	-	-	-	3	3	2	4	2	4	2	3
		급식위생	급간식 제공 및 위생 여부 등	-	-	-	-	5	6	5	6	5	6	5	6
		건강	건강진단 및 석면안전관리 등	-	-	-	-	3	4	2	3	2	3	2	3
클린운영		회계투명성	재무회계규칙 준수 및 예·결산 투명 운영 등	-	-	-	-	10	22	10	24	10	25	12	27
		시설운영의 투명성	특별활동 투명 운영 및 시설정보 공개 등	-	-	-	-	6	8	6	7	7	9	7	11
인력전문성		전문인력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 자질 향상 노력 등	-	-	-	-	5	9	5	9	5	8	5	8

자료: 서울특별시(2011-2016). 서울형어린이집 신규재공인 설명회자료.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 공공형어린이집에 관한 담당공무원 조사

시도	구시군 ·읍면동	-	조사표 번호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뢰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 마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양적 확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정 당시의 보육서비스의 질이 유지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품질관리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운영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 마련에 앞서, 운영관리 기준(안)의 적절성과 현장 적용성을 타진하고자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사관련 문의 : 최윤경 연구원(02-398-7761, yjj465@kicce.re.kr )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응답자 담당지역	_____시·도 _____시·군구
----------	--------------------

# 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 적절성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안) 항목 및 기준, 배점, 점검 주기 등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 1-1. 기본 항목

1.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중 기본조건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귀하는 운영관리 기준에 다음의 기준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점검기준과 점검주기, 점검방법이 적정한지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항목	운영관리 기준의 적절성				점검 주기				점검방법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대체로 적절	④ 매우 적절	① 연	② 반기	③ 분기	④ 월	시스템	현장 점검
1) 정원충족률 (가점) 연평균 정원충족률 85% 이상 (농어촌 55% 이상)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평가인증 점수 (가점) 평가인증 95점 이상 차등 배점 - 95-98점 미만 - 98점 이상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위의 항목 외에 질 관리를 위해 추가해야 할 기준이 있다면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 1-2. 재정관리

1.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재정관리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각각의 기준에 할당된 배점과, 점검주기, 점검방법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운영관리 기준의 적절성				점검 주기				점검방법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대체로 적절	④ 매우 적절	① 연	② 반기	③ 분기	④ 월	시스템	현장 점검
1) 월 임대료·용자금 상환액 비율 (가점) 월 임대료·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감점) 월 임대료·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기타 운영비 비율 (가점) 보육료 수입의 10% 미만 (감점)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보육료 추가 수납 (감점) 보육료 추가 수납 1개월 에 따른 시정명령 1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급식비 아동 1인당 적정수준 (가점) 아동 1인당 2,000원 이상 (감점) 아동 1인당 1,750원 미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준수 (감점) 담임보육교사 국공립 1호봉 이상 미지급에 따른 시정명령 1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비 (가점)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비 미수납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가점) 재무회계 컨설팅 또는 소그룹 1회 이상 참여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위의 항목 외에 질 관리를 위해 추가해야 할 기준이 있다면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 1-3. 보육교직원 관리

1.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관리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각각의 기준에 할당된 배점과, 점검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운영관리 기준의 적절성				점검 주기				점검방법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대체로 적절	④ 매우 적절	① 연	② 반기	③ 분기	④ 월	시스템	현장 점검
1) 1급 보육교사 비율 (가점) 70% 이상 유지(농어촌 60% 이상) (감점) 60% 미만(농어촌 50% 미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가점)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가점)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준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감점) 최근 3년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 이상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감점) 대표자 변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변경으로 공공형 유지된 경우)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감점) 원장 변경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공공형 사후품질관리 교육 참여 (감점) 원장 의무교육 1회 이상 미참여 (가점) 전체 교사의 10% 이상 교사교육 참여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공모전 참여 및 수상 (가점) 공모전 참여 (가점) 공모전 수상(한국보육진흥원, 유아종합지원센터, 기타 공공기관 주최 공모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위의 항목 외에 질 관리를 위해 추가해야 할 기준이 있다면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 1-4. 맞춤 보육

1.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의 맞춤보육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각각의 기준에 할당된 배점과, 점검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운영관리 기준의 적절성				점검 주기				점검방법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대체로 적절	④ 매우 적절	① 연	② 반기	③ 분기	④ 월	시스템	현장 점검
1) 취약서비스 운영 (가점) 장애아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 보육 등 서비스유형별 배점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맞벌이 자녀 재원을 (가점) 맞벌이 자녀 60% 이상(농어촌 50% 이상) (감점) 맞벌이 자녀 50% 미만(농어촌 40% 미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감점) 맞춤형보육 운영시간 미준수 맞춤반(9:00~15:00, 10:00~16:00) 미준수 중일반(7:30~19:30) 미준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가점) 어린이집 주관 부모만족도 조사 정기 실시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감점) 맞춤형보육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위의 항목 외에 질 관리를 위해 추가해야 할 기준이 있다면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 1-5. 안전관리

1.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각각의 기준에 할당된 배점과, 점검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운영관리 기준의 적절성				점검 주기				점검방법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대체로 적절	④ 매우 적절	① 연	② 반기	③ 분기	④ 월	시스템	현장 점검
1)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가점)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정기 실시	①	②	③	④						
(가점)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부적격 판정 후 조치	①	②	③	④						
2) (가점)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준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감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미가입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아동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가점)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정기 실시	①	②	③	④						
(가점) 소방대피훈련 월 1회 정기 실시	①	②	③	④						
5) (감점) 통학차량 정기점검 미실시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감점) 차량기사 안전교육 미실시	①	②	③	④						
※ 위의 항목 외에 질 관리를 위해 추가해야 할 기준이 있다면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 1-6. 건강위생관리

1.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각각의 기준에 할당된 배점과, 점검주기, 점검방법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운영관리 기준의 적절성				점검 주기				점검방법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대체로 적절	④ 매우 적절	① 연	② 반기	③ 분기	④ 월	시스템	현장 점검
1) 석면조사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가점) 면제시설 실시 및 기준 준수	①	②	③	④						
(감점) 의무대상 시설 미실시 또는 기준 미준수	①	②	③	④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가점) 미대상 시설 실시 및 유지기준 준수	①	②	③	④						
(감점) 의무대상 시설 미실시 또는 유지기준 미준수	①	②	③	④						
3) 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감점) 아동 1명 이상 건강검진(연 1회) 미실시	①	②	③	④						
(감점) 보육교직원 1명 이상 건강검진(연 1회) 미실시	①	②	③	④						
※ 위의 항목 외에 질 관리를 위해 추가해야 할 기준이 있다면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연구보고 2016-05

---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 마련 연구

---

**발행일** 2016년 9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동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 2269-9917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74-5 93330